

석사학위논문

조선시대 제주지역 포작의
사회적 지위와 직역변동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김 나 영

2008년 2월

조선시대 제주지역 포작의 사회적 지위와 직역변동

지도교수 김 동 전

김 나 영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2월

김나영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08년 2월

The Social Status and the Changes of ‘Jikyeok’
of Jeju ‘Pojaks’ in Joseon Dynasty

Kim Na-Young

(Supervised by Professor KIM DONG-JU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08. 2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Social Status and the Changes of 'Jikyeok' of Jeju 'Pojaks' in Joseon Dynasty

This paper focused on the existence of 'abalone collecting men' or 'Pojak' who have used the ocean for their living, the status, and the changes of 'Jikyeok(occupation)', through all which the social situations then on Jeju island could be sought.

Jeju people have had various histories with the sea because of the uniqu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as the island, with which Jeju residents have collected seafood at the earlier time and sometimes would faced heavy seas and drifted while trading with surrounding countries with their merchant vessels. Among such their lives are abalone collectors whose names had been disappeared with troubled sea waters. The summary of what discussed in this paper is as follows.

In the second chapter, the researcher focused on the nature of the collectors by considering their name, existence, and meaning. First, the author searched the names of 'Pojakin' or the abalone collectors in the old literatures including the True Record of the Joseon Dynasty and reviewed them comparing with the previous studies on their names which had been called variously such as 'Pojakin', 'Pojakgan', 'Pojakhan', 'Bokjakgan', or 'Pojakbae'. Jeju 'Pojakin' could be defined as male fishers who gathered fish and seafood in the sea and exchanged and sold them in the villages around the coastal areas in Jeolla and Gyeongsang Province. They also were the men who had chosen to present to the king marine products.

In the third chapter, the researcher focused their leaving of the island and their existence. First, the author considered the reason of their leaving for the mainland left behind Jeju which was their hometown. Here are the social and economical reasons that they were forced to go to the mainland: troubles in their livelihood caused by the poor geographical nature, the increasing amount of tribute for the Joseon Dynasty, and the excessive demand from corrupt officials and local nobilities.

Second, the author studied the developments after their leaving for the mainland. The abalone collecting men were staying on the coastal areas mainly in Jeolla and Gyeongsang Province gathering seafood. And they obtained oceanic information in person including ship building know-how, navigation, and art of ocean war, which were urgently needed for Joseon government who had been suffering from the invasion from Japanese pirates. To this end, the government located them in the naval forces aiming to use their military abilities. On the other hand, other collectors who didn't follow or did avoid the government's structure, would wander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nd cause various social problems in collusion with the pirates including Japanese pirates.

Third, the researcher focused on several measures taken by the Joseon government in order to prevent the increase in their collective escapes. The Joseon Dynasty attempted to take a few countermeasures to prevent it and bring them back from the pirates. These countermeasures, however, failed to decrease the number resulting in issuing the ban on leaving the mainland. For the remaining collectors, the government reduced the amount of seafood tribute and also set up a tax payment association named 'Peongyeokgo' and 'Bomingo' for the sake of their obligated labor to present seafood tribute to the king. However, they also had to have the duty of official soldiers among six obligated labors, which produced different kinds of problems. In the late of Joseon Dynasty, the number of the abalone gathering men had decreased

and finally the existence and name had disappeared. Fourth, the author supposed and discussed the cause of their disappearing.

In the fourth chapter, their status and the detailed changes of Jikyeok in Joseon Dynasty are studied based on the review of their family lines, who were one included in the social class forced to have six obliged labors on 'Hojeokjungcho(then the census registration)'. From the results of reviewing the family lines, it is disclosed that most of them were from public slaves and they had marriages in the same social class or inter-slave families. In the late of 18th century, the status as 'Pojak' had been decreasingly phased out and four out of six 'Pojaks' had changed to public soldiers from the previous vocation. After the revolution of slave liberalization in 1801, most 'Pojaks' attempted to find their way out the hierarchical shackles.

As previously mentioned, the author strived to shed new light on them recognized as 'the target of exploitation and control' by revealing the meaning of the existence of the 'Pojakin' in Jeju and considering their social status and the changes of Jikyeok. In the early days, they had robust marine activities with multiple aspects and attempted to go beyond the restrictions with their own flexibilities, expanding their special livelihood even under the contradiction of governance system in Joseon Dynasty. We should pay attention that their marine activities have the enormous significance in the marine history.

목 차

Abstract

I. 머리말	1
II. 포작의 명칭과 성격	6
1. 포작의 명칭	6
2. 포작인의 존재와 의미	10
III. 포작인의 출륙과 존재양태	18
1. 포작인 출륙의 사회·경제적 배경	18
2. 출륙 포작인의 실태	29
3. 조선정부의 출륙 포작인에 대한 대책	38
4. 포작인의 소멸 시기와 원인	48
IV. 호적자료를 통해 본 포작의 지역변동	53
1. 호적자료에 나타난 포작	53
2. 호적자료의 지역 및 검토	56
3. 가계별 지역변동의 양상	60
1) 고석보(高石寶)의 家系 2) 김부윤(金夫允)의 家系	
3) 강계봉(姜戒奉)의 家系 4) 김유창(金有昌)의 家系	
5) 이완귀(李完貴)의 家系 6) 문성태(文成太)의 家系	
V. 맺음말	75
참고문헌	80

표 목차

<표 1> 포작의 명칭과 용례	6
<표 2> 17세기 전반 제주삼읍 해산물의 진상 내역	21
<표 3> 17세기 중반 제주지역 해산물의 진상 내역	23
<표 4> 18세기 후반 제주지역 해산물의 진상 내역	24
<표 5> 19세기 전반 제주지역 해산물의 진상 내역	25
<표 6> 19세기 중반 제주지역 해산물의 진상 내역	26
<표 7> 조선시대 제주지역 진상 해산물의 수량 변화	27
<표 8> 1609년 『경상도 울산부 호적대장』에 나타난 두모악(豆毛岳)의 실태	33
<표 9> 일파리·사계리·하모슬리 호적중초에 나타난 포작인의 존재양상	56
<표 10> 1783년 일파리의 연령별(5세 계급) 남녀의 분포	58
<표 11> 1783년 일파리의 본관별 성씨분포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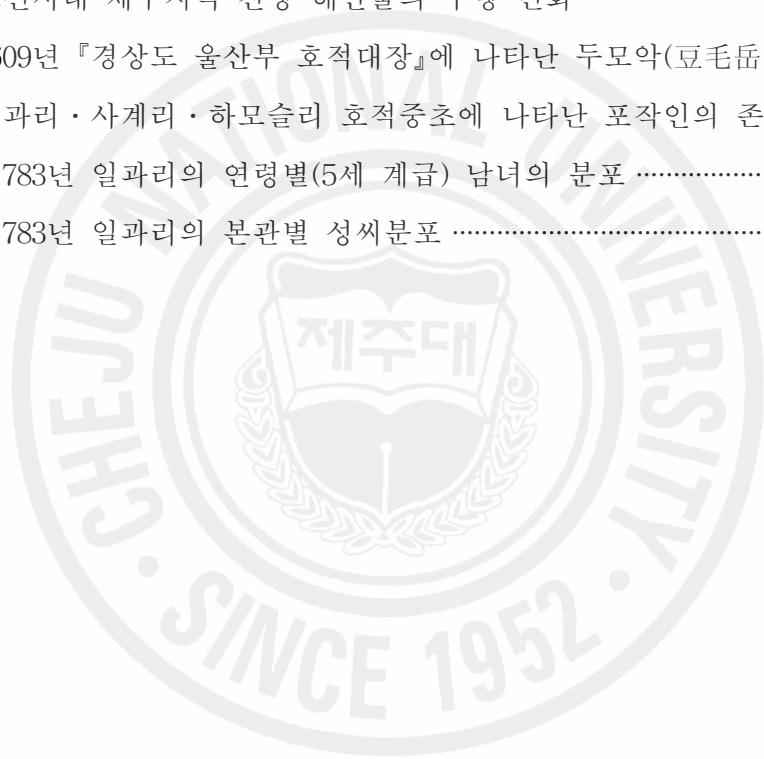


그림 목차

<그림 1> 1609년 『경상도 울산부 호적대장』中 두모악 기재의 예	31
<그림 2> 『조선지도』中 경상도 울산(蔚山)	32
<그림 3> 호적에 나타난 ‘포작(鮑作)’·‘어작(魚作)’·‘양포(良鮑)’의 기재 사례	55
<그림 4> 고석보(高石寶)의 家系圖	62
<그림 5> 김부윤(金夫允)의 家系圖	64
<그림 6> 강계봉(姜戒奉)의 家系圖	67
<그림 7> 김유창(金有昌)의 家系圖	69
<그림 8> 이완귀(李完貴)의 家系圖	71
<그림 9> 문성태(文成太)의 家系圖	74



I. 머리말

21세기를 바다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최근 해양에 대한 관심이 날로 늘고 있다. 역사학의 일각에서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환경을 이용해 해안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해양사(海洋史)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제주민들은 섬이라는 지리적 공간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일찍부터 바다를 무대로 해산물을 채취하거나 혹은 상선을 이끌고 주변국들과 교역을 하는 가운데 뜻하지 않은 풍랑을 만나 표류하는 등의 다양한 바다의 역사를 전개해 왔다.

이처럼 제주민들의 생계기반인 동시에 개척의 무대이기도 한 바다는 조선시대를 기점으로 육지와 단절된 닫힌 세계로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되어져 갔다. 이는 조선이 명나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른바 동아시아 중화적 세계 질서에 안주함에 따른 해양에 대한 관심이 훨씬 줄어든 결과로 이해되어진다.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 역사 민속학, 해양사적 관점에서 바다의 과거와 현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려는 움직임들, 다시 말하면 바다를 통해 역사를 바라보려는 사상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해양사는 “해양을 무대로 전개되는 인간의 행위를 연구하는 역사학의 한 분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삼아온 제주민들의 삶이 곧 해양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 의거,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제주지역 연근해에서 활발히 해양 활동을 전개한 주역으로 ‘전복을 채취하는 남자’라 일컫는 ‘포작(鮑作)’에 주목하고자 한다.

해산물 채취를 담당했던 포작(鮑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문헌 기록은 제주의 탐라국 시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연희 5년(905)에 편찬된 『엔기시키(延喜式)』 주계식상(主計式上)의 기사에서 탐라 고유의 특산품으로 보이는 탐라복(耽羅鮑)¹⁾의 등장과 『고려사』 문종 7년(1053)에 탐라국의 왕자가 그 아들을 고려 조정에 보내 전복·바닷말·거북껍질 같은 특산물을 바쳤다²⁾는 기록에

1) 『엔기시키(延喜式)』(연희 5년, 서기 905년에 편찬됨), 「肥厚國耽羅鮑39斤 豊後國耽羅鮑18斤」 진영일, 「古代耽羅의 交易과 ‘國’ 形成考」 『濟州島史研究』 제3집(제주도사연구회, 1994), 27쪽.

2) 『고려사』 권7, 세가 문종 7년 2월, 「耽羅國王子殊雲那, 遣其子陪戎校尉古物等, 來獻牛黃牛角牛皮螺肉櫃子海藻龜甲等物, 王授王子中虎將軍, 賜公服銀帶彩段藥物」 탐라국 왕자(王子) 수운나(殊雲那)가 그 아들 배용고

근거해 볼 때 해산물 채취를 담당했던 사람들이-비록 이 연구의 핵심용어(Keyword)인 포작은 아닐지라도-존재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 제주지역 포작(鮑作)들이 바다를 주무대로 전개한 어로나 교역 활동은 일차적으로 그들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이루어진 필수불가결한 수단이었다. 나아가 조선시대 포작에 대한 어복(魚腹) 진상 등의 경제적 수탈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해양을 교두보로 삼아 삶을 개척해 나가는 촉진제로 작용하였다. 즉 제주도민에게 부과되었던 과중한 부역과 조세, 가혹한 착취와 수탈로 인해 포작인(鮑作人)들은 결국 바다를 유랑했으며 혹은 내지(內地, 한반도부) 해안에 정착하기도 했음을 문헌기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바다를 무대로 삼아 생활해 온 제주도 포작인들의 배를 운정하는 능력과 항해술은 조선왕조에 의해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됨에 따라 왜구 침입시 이들을 회유하여 수군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후 포작인들에 대한 정치적·경제적·군사적인 압박의 가중으로 이를 둘러싼 갈등들이 표출되어 나타났으며, 이에 조선정부는 이들에 대한 자유로운 해양으로의 진출을 금하는 ‘출륙금지령(出陸禁止令)’을 시행하는 등 여러 가지 대응조치를 취하기에 이른다. 그 결과 해양활동을 근간으로 하는 포작의 모습은 점차 자취를 잃게 되었다.

이상에서 언급한 조선시대 제주지역뿐만 아니라 한반도 해안을 따라 해양활동을 전개해 온 포작(鮑作)은 그들과 대응되는 위치에 있는 잠녀(潛女;海女)보다 문헌 기록상에 먼저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포작의 의미는 현재, 지난 역사 속에 묻혀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모호하기만 하며 잠녀들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는 대조적으로 포작에 대해서는 연구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다시 말해, 해양사적 관점에서 ‘쇠퇴기’로 분류되어지는 조선시대³⁾ 해양활동의 주인공으로 인식되고 있는 표류민(漂流民) 및 잠녀(潛女)를 대상으로 한 사회·문학·민속·역사·해양사적으로 다양하게 축적되어진 연구결과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포작

위(陪戎校尉) 고물(古物) 등을 보내와 우황(牛黃)·우각(牛角)·우피(牛皮)·나육(螺肉)·비자(櫃子)·해조(海藻)·구갑(龜甲) 등 물품을 바치므로 왕은 왕자에게 중호장군(中虎將軍)을 제수하고 공복(公服)·은대(銀帶)·채단(彩段)·약물(藥物)을 내려주었다.

3) 하우봉, 「조선시대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교류」 『해양사관으로 본 한국사의 재조명』(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 기념사업회, 2004), 83쪽.

(鮑作)과 관련한 연구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현상은 포작에 대한 문헌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주된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포작을 제외한 대상으로의 편향된 시각에 의해 초래되어진 결과라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포작인(鮑作人)과 관련한 연구사를 검토하면, 송성대의 『濟州人の 海民精神』⁴⁾, 한영국의 「‘豆毛岳’考」⁵⁾, 다카하시 기미야끼(高橋公明)의 「中世東亞細亞海域에서의 海民과 交流-濟州道를 중심으로」⁶⁾, 김인호의 『韓國 濟州 歷史·文化 뿌리學』⁷⁾, 한림화의 「해양문화사 속의 제주해녀」⁸⁾, 박찬식의 「제주해녀의 역사적 고찰」⁹⁾, 그리고 장혜련의 「조선중기 제주유민의 발생과 대책」¹⁰⁾과 강재순의 「조선시대 동남해 연안의 타자-두모악·포작」¹¹⁾ 등을 들 수 있다. 이밖에 제주도 관련 고문헌 해석을 통해 포작인들이 조선정부에 공납한 전복 및 해산물(海産物)의 공물진상에 대한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¹²⁾ 포작인과 관련한 주요 연구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송성대는 포작인들을 해양 개척의 선도자로 인식하고, 그들이 지닌 진취적·개척적·자주적·합리적·개방적인 정신을 ‘해민정신(海民精神)’으로 재정리하고 있다. 즉, 포작인들의 해상활동을 통해 나타난 긍정적 측면을 인식하여 이들을 개방적·진취적인 존재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 4) 송성대, 『濟州人の 海民精神』(도서출판 제주문화, 1996).
- 5) 한영국, 「‘豆毛岳’考」 『한우근박사 정년기념사학논총』(지식산업사, 1981).
- 6) 고교공명(高橋公明), 「中世東亞細亞海域에서의 海民과 交流-濟州道를 중심으로」 『탐라문화』제8호(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9).
- 7) 김인호, 『韓國 濟州 歷史·文化 뿌리學』(우용출판사, 1997).
- 8) 한림화, 「해양문화사 속의 제주해녀」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민속원, 2006).
- 9) 박찬식, 「제주해녀의 역사적 고찰」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민속원, 2006).
- 10) 장혜련, 「조선중기 제주유민의 발생과 대책」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6).
- 11) 강재순, 「조선시대 동남해 연안의 타자-두모악·포작」(조선시대사학회·부산경남사학회·부경대학교 해양문화연구소 공동주최 학술대회 ‘동아시아 삼국의 국제관계와 해양교류’, 2007).
- 12) 권인혁, 「朝鮮後期 地方官衙 財政의 運營實態-濟州의 《事例》를 중심으로」 『탐라문화』제16호(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
권인혁·김동진,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수취체제와 주민의 경제생활」 『탐라문화』제19호(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8).
박찬식, 「19세기 濟州 지역 進上의 실태」 『탐라문화』제16호(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
나가모리 미쓰노부(長森美信), 「조선후기 제주 進上物 조달과 수송」 『탐라문화』제23호(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3).
양진석, 「18, 19세기 제주의 收取制度和 特徵」 『탐라문화』제24호(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한영국은 전라도·경상도 연해지역에 거주하던 제주유민을 곧 ‘두모악(豆毛岳)’이라 지칭하면서, 이들이 곧 포작(鮑作)의 역을 담당하여 정착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러한 ‘두모악’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그들에 대한 정부의 조치, 이에 따른 ‘두모악’의 존재 양태 추이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를 떠난 ‘두모악’들이 전라·경상도 연해지역에 정착하기도 했음을 시사해 주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다카하시(高橋公明)는 조선정부가 왜구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한 ‘수적(水賊)’이라고 명명한 용어에 주목하여 연구하였다. 그는 당시 수적 집단에는 해양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제주인, 즉 포작도 포함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이들과 왜구와의 상호 관계에 초점을 두어 왜구와 포작이 긴밀한 교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인호는 포작이 제주도에서 신석기시대 이래 계속 이어져 온 해수인(海水人)임을 밝히면서 그들이 먼 조상이 남방에서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제주도에 표착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림화와 박찬식은 제주해녀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과정에서 문헌기록에 나타난 포작(鮑作)에 관하여 사료적 접근을 통해 역사적인 의미를 추적했으며, 더불어 포작에 대한 어의(語義)적 고찰과 함께 포작과 잠녀(潛女)와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장혜련은 조선중기 제주유민의 발생 원인과 그 실태를 고찰하여 제주유민과 출륙금지의 상관관계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 제주유민은 곧 두모악, 두독야지, 포작인으로 명명되고 있음을 논하였다.

그리고 강재순은 ‘동아시아 삼국의 국제관계와 해양교류’를 테마로 한 학술대회의 발표문에서 두모악과 포작을 동일한 존재로 파악하면서, 조선시대의 변천과정에 따른 포작의 발생과 타자화, 공적영역으로의 편입 등 그들의 실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역사기록에 나타난 포작인의 개념과 성격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연구결과물과 함께 조선시대 제주지역 포작에 대한 연구를 위해 문헌사학의 관점에서 포작의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는 문헌사료들을 수집, 분석하였다. 특히 『조선왕조실록』¹³⁾ 및 『비변사등

13) 본고에서 인용한 『조선왕조실록』은 2007년 12월 2일자 온라인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을 참조했음.

록』 등의 국가관찬문서와 『제주풍토록』, 『남명소승』, 『남사록』, 『제주풍토기』, 『탐라지』, 『남천록』, 『남사일록』, 『지영록』, 『남환박물』, 『탐라장계초』, 『제주읍지』, 『제주대정정의읍지』, 『제주계록』, 『탐라사례』, 『탐라영사례』, 『제주사례』, 『호적중초』 등의 시기별 문헌집 및 지방관찬-사찬문서들은 조선시대 제주도 포작(鮑作)의 실태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사료로 활용되었다. 이들 사료들과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제주도 포작의 존재양태와 직역변동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II장에서는 포작에 대한 개념용어 정리와 함께 문헌기록을 통해 포작인의 존재적 의미를 해명하였다. 이어 III장에서는 그들이 어떠한 배경에 의해서 본거지를 뒤로하고 육지로 대거 출륙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이후 출륙 포작인들의 실태를 추적함으로써 그들이 각기 다른 존재양상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주도 출륙 포작인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처방안과 이들의 대응모습을 검토함과 동시에 조선후기 이르러 문헌상의 기록에서 그들이 점차 사라져가게 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현재 제주도에 남아 있는 호적자료를 통해 제주도 포작의 사회적 지위 및 직역변동 모습과 함께 당시 제주도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재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자료부족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조선시대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 속에서 치열하게 해양활동을 전개한 포작(鮑作)들의 역사를 재조명함으로써 잊혀진 제주도의 활발했던 해양사의 단면을 구명(究明)하고자 한다.

II. 포작의 명칭과 성격

1. 포작의 명칭

‘포작(鮑作)’이란 용어는 『성종실록』 14년(1483) 12월 6일 을축조 기사인 “鮑作人等自濟州而來”에 처음 등장하고 있다.¹⁴⁾ 이후 포작과 관련한 명칭 등은 『조선왕조실록』 및 여러 고문헌 곳곳에 나타난다. 그러나 현재 ‘포작’에 관한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동일한 포작을 지칭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차용표기로 기록되어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것은 연구자들의 서로 다른 관점에 의해 포작을 해석한 결과라 사료된다. 이에 포작의 명칭을 검토하여 그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규명하는 작업이 선행적으로 요구되어짐에 따라 우선, 『조선왕조실록』 원문에 나타난 포작의 명칭과 그 용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포작의 명칭과 용례¹⁵⁾

왕조 명칭	성종 (1469~ 1494)	연산군 (1494~ 1506)	중종 (1506~ 1544)	명종 (1545~ 1567)	선조 (1567~ 1608)	광해군 (1608~ 1623)	숙종 (1674~ 1720)	정조 (1776~ 1800)	합계
포작인(鮑作人)	6	1	4	1	8	1			21
포작간(鮑作干)	2		8	4	5				19
포작한(鮑作漢)			2		1	1			4
복작간(復作干)	1	1							2
포작배(鮑作輩)					1				1
기타 (鮑作船·鮑作)		3	6		1	1	2	1	14
합계	9	5	20	5	16	3	2	1	61

14) 『성종실록』 권161, 성종 14년 12월 6일 을축조, 「兵曹據全羅道觀察使柳洵啓本啓: “鮑作人等自濟州而來, 散處全羅, 慶尙兩道海曲, 潛行剽竊, 其漸可慮. 但時無顯然罪狀, 治罪爲難. 且雖欲刷還本土, 必不安業. 請令所在官守令, 萬戶, 於船隻字號著標, 入海時, 給路引, 如無路引, 或騎無標船, 而任意出入, 則論以海賊, 置之重典. 令所居邑, 每歲抄錄人口, 報觀察使轉啓, 若守令, 萬戶, 不能存撫, 致令流移, 請於殿最, 憑考施行” 從之.

15) <표 1>은 『조선왕조실록』을 참고로 표 작성.

위의 <표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포작과 관련하여 『조선왕조실록』에서는 59건의 기사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 기사 가운데 성종 16년(1485) 4월 12일 기사¹⁶⁾와 중종 18년(1523) 7월 20일 기사¹⁷⁾에는 한 기사 안에 ‘포작간(鮑作干)’과 ‘포작인(鮑作人)’의 명칭이 동시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에는 총 61건의 포작과 관련한 명칭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조선왕조실록』에서는 포작(鮑作)의 직역을 담당한 이들의 명칭을 포작인(鮑作人)·포작간(鮑作干)·포작한(鮑作漢)·복작간(馘作干) 등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으며,¹⁸⁾ 이 중에서도 특히 포작인, 포작간이라는 명칭이 40건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유사한 포작 직역을 담당하는 사람의 명칭임에도 불구하고 명칭 사용빈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한편, 국립국어원이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¹⁹⁾에는 포작간(鮑作干)을 “전복을 전문적으로 잡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던 말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포작(鮑作)²⁰⁾에 대해서는 “보자기의 잘못, ‘보자기’를 한자를 빌려서 쓴 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보자기를 “바다 속에 들어가서 조개, 미역 따위의 해산물을 따는 일을 하는 사람; 해인(海人)·포척(鮑尺)·해녀(海女)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보재기는 ‘잠수부’의 방언(경남)이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보자기에 대응하는 제주방언을 뜻한다 하겠다.

※ 이하 본고의 각주에서 진한 글씨체는 필자가 강조하는 단어나 어구를 나타내는 표시임.

16) 『성종실록』 권177, 성종 16년 4월 12일 계해조, 「領事洪應啓曰: “臣前日歷觀沿海諸邑, 鮑作干結幕海邊, 無定居, 寄生船上, 爲人勇悍, 其船輕疾無比, 雖暴風 虐浪, 略無畏忌. 倭賊遇之, 反畏避而去. 臣見其船中有大石數十, 臣問所用, 答云: ‘遇倭船, 用此石投擊, 則無不破碎’ 沿海諸邑封進海產珍品, 皆鮑作人所採也. 臣又聞鮑作人往往劫奪商船, 掠殺人物, 或爲人所逐, 則遺棄倭鞋而去, 似若倭人然. 此則鮑作干亦且有害. 請令沿海諸邑, 隨其所在, 曲加撫馭”」

17) 『중종실록』 권48, 중종 18년 7월 20일 무자조, 「忠淸道水使黃琛狀啓: “鮑作干崔仍松等以釣魚, 入加外德島, 有八人敗船在島, 卽載船出來. … 政院議 啓曰: “近因倭變, 屢遣宣傳官, 驛路疲弊. 若有緩急, 甚於此者, 將何以哉 今此出來人唐倭, 時未辨之. 然以鮑作人之力, 猶能載船而來, 已出陸路, 水使今已起送矣. 若軍機重事則驛路雖疲, 不可計也, 此則事不甚緊, 只遣漢學通事而率來何如”」

18) 국역조선왕조실록의 포작인에 대한 각주의 내용을 살펴보면,

- 포작인(鮑作人) : ① 어포(魚鮑)를 떠서 말리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
②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전복·미역 따위 해산물을 채취하는 사람들.
 - 포작간(鮑作干) : ① 고기를 잡아 어포(魚鮑)를 만들던 사람.
②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전복·미역 따위 해산물을 채취하는 사람들.
③ 국가의 각급 제사에 쓰는 어포(魚鮑)를 떠서 말리는 일을 하는 어부들.
- 등으로 설명되어 지고 있다.

19)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중·하(두산동아, 1999).

『한국한자어사전』²¹⁾에서도 ‘포작(鮑作)·포작선(鮑作船)·포작인(鮑作人)·포작간(鮑作干)·포작한(鮑作漢)·포척(鮑尺)’ 등 포작과 관련한 다양한 명칭들이 등재되어 있다. 여기서 포작(鮑作)·포작간(鮑作干)이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소금에 절이는 일 또는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 정의내리고 있으며, 이때 포작간의 ‘간(干)’은 ‘인(人)’이나 ‘한(漢)’의 뜻으로 사람을 지칭한다고 하였다. 이에 『표준국어대사전』에 보이는 한자표기 포작(鮑作)은 포작(鮑作)²²⁾의 오기가 아닌가 생각한다.²³⁾

또한, 포작인·포작간 등의 명칭에 대해 다카하시 기미아끼(高橋公明)는 ‘간(干)’은 본래 국가로부터 부역이 주어진 사람의 명칭이며, 현재 干은 「간」이라고 밖에 읽지 않지만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경우에는 「한」이라고 발음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干은 군(軍)·척(尺)·정(丁)²⁴⁾과 마찬가지로 대개 그 신분은 양인으로 역이 천하다는, ‘신양역천(身良役賤)’인 사람들의 명칭 말미에 사용되며, 약간 차별적인 어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⁵⁾ 『태종실록』 태종 15년(1415), 4월 13일 경진조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병조(兵曹)의 수교(受敎) 내에 ‘칭간칭척(稱干稱尺)이라 하는 자는 모조리 보충군(補充軍)에 소속시키라.’ 하였으나, 간척(干尺)이란 것은 전조(前朝)의 제도에 역천신량(役賤身良)으로 적(籍)에 올려서 역(役)을 정하여 조정의 반열에 통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만약 이들을 보충군에 소속시키게 되면, 서반(西班)의 대장(隊長)과 대부(隊副)의 직책을 받게 되어 그 실마리가 벌써 열리게 되니, 실로 미편(未便)합니다. 또 외방의 주군(州郡)에서도 간척인(干尺人)들을 역사(役使)시키고 있으니, 지금 주군으로 하여금 정군(正軍) 1천 명에 봉족(奉足) 2천명을 청하게 하는 것도 어려우니, 원컨대, 윗 항의 간척들을 보충군에 소속시키지 말고, 전역(前

21) 단국대학교부설동양학연구소, 『韓國漢字語辭典』 권4, 범호밀部~피리약部(단국대학교출판부, 1997).

22) 포작(보재기) : 한자어 포작(鮑作)은 ‘보재기’의 한자 차용 표기로, 다른 자료에서는 鮑作·浦作 등으로도 표기된다. 보재기는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조개·미역 등 해물을 채취하는 사람인 ‘보자기’의 제주도방언이다. (『역주 탐라지』, 푸른역사, 2002).

23) 『법환 줌너마을 역사·문화 고증 및 기본계획』(서귀포문화원, 2004).

24) 소금을 조공하는 ‘염간(鹽干), 지역의 진에서 군역을 수행했던 제주여성 군인인 ‘여정(女丁), 소위 백정이라고 불려졌던 ‘화척(禾尺)’ 등이 그 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한림화, 「해양문명사 속의 제주해녀」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2006, 54~55쪽).

25) 고교공명(高橋公明), 「中世東亞世亞海域에서의 海民과 交流-濟州도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제8호(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9), 120쪽.

役)에 환속(還屬)시켜 주(州)·군(郡)을 실(實)하게 하소서.²⁶⁾

이 기사는 조선시대 간척(干尺)에 대한 신분제도상 의미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간(干)이라 칭하고 척(尺)이라 칭하는 자, 즉 칭간칭척(稱干稱尺)인 사람들을 보충군으로 소속시키면서 그들의 신분이 신양역천(身良役賤)인 계층이라는 것에 대해 간략히 적어 놓고 있으며, 이러한 기사의 내용은 태종 연간 이후에도 계속 등장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²⁷⁾

따라서 포작간(鮑作干)의 명칭에서의 ‘간(干)’이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포작간(鮑作干)은 신양역천(身良役賤)으로, 포작(鮑作)이라는 업에 종사하면서 국가의 진상역(進上役)을 담당하였던 이들에게 붙여져 불려 졌던 것으로 보여진다.²⁸⁾

다음으로 제주도와 관련한 고문헌들에 나타난 포작인의 명칭을 살펴보면, 김상헌(金尙憲) 『남사록(南槎錄)』에는 포작배(浦作輩)·포작인(浦作人)·포작(浦作) 등으로 나타나며, 이원진(李元鎭)의 『탐라지(耽羅志)』와 이익태(李益泰)의 『지영록(知瀛錄)』, 이원조(李源祚)의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 등에는 포작(鮑作)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또한 김성구(金聲久)의 『남천록(南遷錄)』에는 포작(浦作)·포한(鮑漢)으로 불리고 있고, 이증(李增)의 『남사일록(南槎日錄)』에는 포작(浦作) 또는 포작배(浦作輩)라 적고 있으며, 이형상(李衡詳)의 『남환박물(南宦博物)』에는 포작

26) 『태종실록』 권29, 태종 15년, 4월 13일 경진조, 「兵曹受教內, 以稱干稱尺者, 悉屬補充軍. 然干尺者, 前朝之制, 以役賤身良, 付籍定役, 使不通於朝班. 今也屬補充軍, 則受西班牙隊長, 隊副之職, 其端已開, 實爲未便. 且外方州郡以干尺人等役使之, 今令州郡於正軍一千名, 定奉足二千名, 亦且難矣. 願上項干尺, 勿屬補充軍, 還屬前役, 以實州郡」

27) 이러한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를 바탕으로 유승원은 여말선초에 ‘干’이나 ‘尺’이라는 칭호를 붙여 이름 지어진 자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신양역천(身良役賤)인 계층으로 인식되었다고 하고 있다. 이들은 곧잘 칭간칭척자(稱干稱尺者) 또는 간척지도(干尺之徒)로 범칭되고, “나라의 풍속이 신양역천(身良役賤)을 혹은 간이라 칭하고 혹은尺이라 칭한다”라는 조선왕조실록(『세종실록』 세종 원년 5 경오)의 기사와 같이 한 때 신양역천의 표본처럼 간주되고 있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유승원, 「양인」 『한국사』 25, 국사편찬위원회, 1994, 180~187쪽).

28) 중앙정부는 이들 출륙 제주도민을 각사노비(各司奴婢)로 파악하고 있어 주목된다. 중종 35년(1540) 전라도 관찰사 윤개(尹漑)가 “제주는 토질이 척박해서 백성들이 살기 싫어하여 이주해 나오는 자가 많고 쇠환해 가는 경우도 대단히 많다. 각사노비들도 육지에 본거지를 두고 제주에 납공(納貢)하는 자 또한 매우 많은데 제주는 선상(選上)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이미 16세기 중반에 출륙한 각사노비가 많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현종 5년(1664) 충청감사 이익한(李翊漢)이 “신이 일찍이 제주를 맡고 있으면서 보니, 본주의 각사노비로서 육지로 나와서 살고 있는 자의 숫자가 1만 명에 가까웠다”고 보고하고 있어, 피역 출륙한 제주민들을 대부분 중앙관청의 각사노비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들 각사노비가 모두 포작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포작의 신분이 신양역천 계층에서 공노비로 전환되어 갔다는 추이는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박찬식, 「제주해녀의 역사적 고찰」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2006, 113~114쪽).

(鮑作)·포한(鮑漢)으로 기록되어져 있음을 살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천정일(泉靖一)의 『제주도』에 보면 중국이나 일본의 고문헌에는 제주의 포작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잠수사(潛水土)’라고도 지칭하고 있다.

위와 같이 포작인의 다양한 명칭에 대해 조선왕조실록 및 제주도 관련 고문헌과 기존에 연구된 바에 의거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포작(鮑作) 직역을 담당하는 이들의 명칭과 관련한 과거 기록을 살펴보면, 이를 표기한 한자차용표기가 다양했음을 알 수 있으며 가장 일반적으로 쓰인 것이 포작인(鮑作人), 포작간(鮑作干), 포작한(鮑作漢)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문헌상에 다양하게 명명되고 있는 이들의 명칭 가운데 출현 빈도가 가장 높고, 포괄적인 의미로서 ‘포작(鮑作) 역을 담당하는 사람(人)’의 뜻을 지니는 ‘포작인(鮑作人)’으로 통일하여 이 글을 전개해 나가고자 하며, 후일 포작의 구체적인 용어 검토 및 고증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2. 포작인의 존재와 의미

그렇다면 이처럼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우는 포작인(鮑作人)은 과연 누구이며, 어떠한 직역을 담당하였고, 통념상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는 잠녀(潛女)와 두모악(豆毛岳;豆無岳)과는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 고찰하여 포작인의 존재와 의미를 규명해 나가고자 한다.

여기서의 포작인은 제주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라도²⁹⁾·충청도³⁰⁾·경상도³¹⁾를 비롯 황해도³²⁾ 등지에서도 등장하고 있음을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입증할 수

29) 『중종실록』 권45, 중종 17년 6월 20일 을미조, 「全羅道右道鮑作干等逢倭于甫吉島, 被奪衣糧雜物, 火其船隻」 전라도 우도(右道)의 포작간(鮑作干)들이 보길도(甫吉島)에서 왜적(倭賊)을 만나 의복·식량·잡물(雜物)을 빼앗기고 배도 소실(燒失)당했다.

30) 『중종실록』 권48, 중종 18년 7월 28일 갑오조, 「忠淸道鮑作人所獲唐人(回) [八] 名入來」 충청도(忠淸道) 포작인(鮑作人)이 포획한 중국사람 8명이 서울로 올라왔다.

31) 『선조실록』 권64, 선조 28년 6월 14일 을묘조, 「嶺南鮑作之輩, 惟利是甘, 挈其妻子, 連續投入, 原其情狀, 極爲痛惋」 영남의 포작배(鮑作輩)들이 이익만을 탐해 처자를 거느리고 잇달아 적에 투항하니 그 정상을 지면 아주 통탄할 일입니다.

32) 『선조실록』 권24, 선조 23년 12월 23일 신묘조, 「黃海監司書狀: 吾父浦萬戶元景全, 長淵地大靑島, 鮑作干等

있으며, 이에 포작인은 제주도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여러 연해안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포작인(鮑作人)이란 용어는 『성종실록』 14년(1483) 12월 6일 기록에 처음 등장한 이후 그들에 대한 존재와 의미에 대해서는 성종 16년(1485) 4월 12일 계해조 이후로의 사료 (1)~(3)과 같은 여러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영사(領事) 홍응(洪應)이 아뢰기를, “신이 전일(前日)에 연해(沿海)의 여러 고을을 두루 살펴보니, 포작간(鮑作干)이 해변(海邊)에 장막을 치고 일정한 거처(居處)가 없이 선상(船上)에 기생(寄生)하고 있는데, 사람됨이 날래고 사나우며 그 배가 가볍고 빠르기가 비할 데 없어서, 비록 폭풍(暴風)과 사나운 파도(波濤)라 하여도 조금도 두려워하고 꺼려함이 없으며, 왜적(倭賊)이 이를 만나도 도리어 두려워하고 피해서 달아납니다. … 연해의 여러 고을에서 봉진(封進)하는 해산(海産)의 진품(珍品)은 모두 포작인(鮑作人)이 채취(採取)하는 것입니다.³³⁾

(2) “포작인(鮑作人)의 일을 지난번에 재상(宰相)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셨으나, 이 무리들은 본래 제주(濟州) 사람들입니다. 제주는 토지가 척박(瘠薄)하고 산업(産業)이 넉넉지 못하여,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에 도망하여 오로지 해물(海物)을 채취하는 것을 일삼아 <이것을> 판매하여 생활해 나가는데, 지금 만약 독촉하여 본 고장으로 돌려보내게 한다면, 저들이 반드시 실망할 것입니다. 신은 생각건대, 그대로 존무(存撫)하는 것이 편안하겠습니다.”하였다. … “이 무리들은 해물을 채취하여 매매(賣買)해서 살아가고, 간혹 여러 고을의 진상(進上)을 공급(供給)한다 하여, 수령(守令)들이 고의로 호적(戶籍)에 편입시켜 백성을 만들지 아니하고, 평민[齊民]들도 간혹 저들 가운데 투신하여 한 무리가 되기도 합니다.”³⁴⁾

船隻衣糧，爲賊被奪，以日次搜討將，致令賊船恣行，辭緣推考事」 황해감사(黃海監司)가 서장을 올리기를, “장연(長淵) 대청도(大淸島)의 포작간(鮑作干)들이 선적과 의복·양식을 도적들에게 빼앗겼는데 오차포만호(吾叉浦萬戶) 원경전(元景全)은 일차수토장(日次搜討將)으로서 적선(賊船)으로 하여금 자행하게 하였으니 그러한 사연으로 추고하소서.”

33) 『성종실록』 권177, 성종 16년 4월 12일 계해조, 「領事洪應啓曰: 臣前日歷觀沿海諸邑, 鮑作干結幕海邊, 無定居, 寄生船上, 爲人勇悍, 其船輕疾無比, 雖暴風虐浪, 略無畏忌. 倭賊遇之, 反畏避而去. … 沿海諸邑封進海産珍品, 皆鮑作人所採也」

34) 『성종실록』 권178, 성종 16년 윤4월 11일 신묘조, 「“鮑作人之事, 往者命議宰相. 此輩本濟州人也, 濟州土地瘠薄, 産業不裕, 逃散全羅, 慶尙地面, 專事採海, 鬻販資生. 今若督令還本, 彼必缺望. 臣謂仍令存撫爲便” … “此輩採海, 賣買以生, 或以供諸邑進上, 守令以故不編戶爲民, 齊民亦或投彼中作僮”」

(3) 제주(濟州)에서 출래(出來)한 포작인(鮑作人)들은 본래 향산(恒産)이 없고 오로지 고기를 잡는 것으로 업(業)을 삼아, 작은 배에 처자(妻子)를 싣고 해곡(海曲)으로 떠돌아다니며 우거(寓居)하는데, 이르는 곳이 만약 마음에 맞지 않음이 있으면, 곧 도망하여 흩어져서, 비록 거취(去就)가 일정함이 없으나, 부득이 연해(沿海)에 의지하여 머물면서 고기를 팔아 생활해 가니, 진실로 엄한 법(法)으로 다스릴 수 없으며, 또한 법으로 다스리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³⁵⁾

위와 같은 『성종실록』의 기록을 보아 제주도 포작인들은 바다에서 고기와 해산물(海産物) 등의 채취를 업으로 삼고, 이를 전라도와 경상도 연안을 돌아다니면서 교환, 판매하여 생활해 나가는 남자어부로 설명될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은 여러 고을의 해산(海産)의 진품(珍品)을 진상하는 역으로 동원되었던 사람이라 개념·정의 내릴 수 있겠다.

그렇다면, 바다를 공통의 생활무대로 하여 어류·해조류 등의 해산물 채취에 종사하면서 국가에 어복(魚鰯) 진상의 역을 담당하였던 포작인(鮑作人)과 잠녀(潛女)를 어떻게 구분 지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상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포작인과 잠녀와의 관계 고찰은 포작인의 기록이 잠녀보다 먼저 문헌상에 등장하였다는 점과 후에 포작인의 개념이 모호성을 띠고 잠녀와의 구분이 불분명해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 둘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 추론할 가치의 여지가 보여진다.

이를 위해 김상헌(金尙憲)의 『남사록(南槎錄)』(1601년)의 9월 22일 병자조와 이견(李健)의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1629년)를 차례로 언급해 보고자 한다.

(1) 포작배(浦作輩)는 홀아비로 살다가 늙어 죽는 자가 많이 있다. 그 까닭을 물어 보니 본주(本州)에서 진상하는 전복의 수량이 매우 많고 관리들의 공(公)을 빙자하여 사육을 채우는 것이 또 그 몇 곱이 되므로 포작배는 그 일에 견디지 못하여 도망하고 익사하여서 열에 둘 셋만 남게 되었다.³⁶⁾

35) 『성종실록』 권178, 성종 16년 윤4월 19일 기해조, 「濟州出來鮑作人等, 本無恒産, 專以捉魚爲業. 扁舟載妻子, 流寓海曲, 所至之處如有不愜, 旋即逃散. 雖去就無常, 不得已沿海依止, 賣魚資生, 固不可嚴法以治之, 亦不可無法以馭之」

36) 김상헌(金尙憲), 『남사록(南槎錄)』 권1, 9월 22일 병자조.

(2) 해산(海産)에는 단지 생복(生鰯)·오징어(烏賊魚)·분곽(分轄)·옥돔(玉頭魚) 등 수종이 있고, 이외에도 이름 모를 수종의 물고기가 있을 뿐으로 다른 어물은 없다. 그 중에서도 천(賤)한 것은 미역을 캐는 여자를 잠녀(潛女)라고 한다. 그들은 2월 이후부터 5월 이전에 이르기까지 바다에 들어가서 미역을 채취한다.³⁷⁾

남성인 포작인(鮑作人)은 주로 깊은 바다에서 전복을 잡아 이를 진상 조달하는 일을 담당하였음을 사료 (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사료 (2)에서 여성인 잠녀(潛女)는 미역 등의 해조류를 채취하였다는 내용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포작인(鮑作人)과 잠녀(潛女)와의 성별적 분업이 이루어졌음을 살펴볼 수 있겠다.³⁸⁾ 아울러 고문헌상에 포작인의 처(妻)로 여러 차례 잠녀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이들이 부부로서 가족을 구성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였음을 파악해 볼 수 있다.³⁹⁾

한편 포작인의 성격과 관련하여 고문헌에 나오는 포작인은 원래 제주도의 남자 어부를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제주도는 농경과 목축 등 토지에의 의존보다는 바다에 의존하여 어로와 교역에 종사한 제주인 남녀 모두가 상징적으로 포작인의 범주에 들어가며, 협의의 포작인 혹은 해인을 굳이 남녀 구별하여 호칭하고자 할 때는 남자를 포작부(浦作夫), 여자는 해녀(海女)라 하여 구별할 수 있다는⁴⁰⁾ 주장이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위의 주장과 같이 제주도의 해산물 채취에 종사한 남·녀 모두를 포작인이라 일컫는다면 문헌상 포작(鮑作)과 잠녀(潛女)를 굳이 구분지어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 사료되는 바이다.

이처럼 포작인(鮑作人)과 잠녀(潛女)에 대한 용어상의 구분은 명확히 정의 내려질 수 없으나, 시기의 변천에 따른 조선시대 사회·경제·문화적 요소들과 복

37) 이건(李健),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

38) 일본에서도 나잠업으로 소라 전복을 캐는 남성과 여성들이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류의 생업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아마(海女·海士)’라고 한다. 일본 아마에 대한 표기에는 해인(海人)·해사(海士)·어인(漁人)·잠녀(潛女)·수인(水人)·백수랑(白水朗)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좌혜경·고창훈,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2006, 15쪽).

39) 이원진(李元鎭), 『탐라지(耽羅志)』 공장조(工匠條).

이익태(李益泰), 『지영록(知瀛錄)』 증감십사(增感十事).

이형상(李衡祥), 『탐라장계초(耽羅狀啓抄)』.

배비장전(裵裨將傳) : 조선 후기 제주도를 배경으로 쓰여진 국문소설이다. 등장인물로 해녀와 포작이 부부로 등장하며 이들의 전복채취 모습과 함께 해산물 진상수탈의 힘겨운 삶을 묘사하고 있다.

40) 송성대, 『濟州人의 海民精神』(도서출판 제주문화, 1996), 182쪽.

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둘의 개념적 관계에 대해 미루어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선전기에 포작인은 전복 및 바다고기를 잡아 진상하는 역을 담당하는 어부(漁夫)로서 상징되어 오다가, 조선후기에 이르러 이들에게 과도한 전복 진상역과 과도한 균역이 부과됨으로 인해 점차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신 포작인들이 행하던 전복 채취 및 해산물 진상역은 그들과 함께 공동선상에서 활동해 온 잠녀(潛女)들의 몫으로 전가(轉嫁)됨에 따라 포작인(鮑作人)과 잠녀(潛女)의 용어 및 관계적 의미의 구분이 모호해졌다고 추측해 볼 수 있겠다.

한편, 이들 포작인에 대해서 중세 동아시아 해역에서 이동성과 수적(水賊)집단의 성격을 갖는 해민(海民)으로 해석하는 연구도 있어 참고 된다.⁴¹⁾

다카하시 기미야끼(高橋公明)⁴²⁾는 『성종실록』 성종 3년 2월 27일 갑오조의 「경상도·전라도의 관찰사·수군절도사에게 도적이 발생하므로 이를 속히 포획하도록 유시하다」라는 기록⁴³⁾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수적(水賊)행위가 왜인에게만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해양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제주인, 즉 포작인도 포함되어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포작인(鮑作人)과 두독야지(豆禿也只)와의 관계설정에 있어서도 그들은 유사한 생활형태를 가짐과 동시에 조선정부가 이들에 대해 제시한 대처방안을 고려할 때 이들 사이에는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지닌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출륙 제주도민이라 명명되는 두모악과 포작인은 과연 동일 집

41) 박찬식, 「제주해녀의 역사적 고찰」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민속원, 2006), 110쪽.

42) 고교공명(高橋公明), 「中世東亞世亞海域에서의 海民과 交流-濟州도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제8호(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9), 114~115쪽.

43) 『성종실록』 권15, 성종 3년 2월 27일 갑오조, 「諭全羅道觀察使金良瓚, 水軍節度使李惇仁曰: “頃者, 聞順天, 興陽, 樂安等官諸島中, 有八, 九人作黨爲盜者, 已令卿等捕獲, 未知卿等已認賊所向乎 又聞樂安將校金倍, 順天居私奴裴永達 玉山朴長命等三十餘人作黨, 乘四船, 持弓矢, 或許爲倭人, 或爲濟州人, 依泊諸島, 劫掠探海人, 又於邊邑放火作賊. 卿等務出奇謀捕獲以啓, 然不可煩擾, 務要秘密” 又以此諭慶尙道觀察使, 水軍節度使,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 김양경(金良瓚)·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이돈인(李惇仁)에게 유시하기를, “요즈음 들으니, 순천(順天)·흥양(興陽)·낙안(樂安) 관내의 여러 섬 속에 8, 9인이 작당하여 도둑질하는 자가 있다 하므로, 이미 경 등에게 포획(捕獲)하도록 명하였는데, 경 등이 도적이 향한 바를 확인하였는지 모르겠다. 또 들으니, 낙안 장교(樂安將校) 김배(金倍)와 순천(順天)에 거주하는 사노(私奴) 배영달(裴永達), 옥산(玉山) 박장명(朴長命) 등 30여 명이 작당하여 네 척의 배를 타고 궁시(弓矢)를 가지고서 혹 왜인(倭人)이라 속이고, 혹은 제주인(濟州人)이라 하며, 여러 섬에 정박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사람을 검탈하고, 또 변방 고을에서 방화(放火)하여 도둑질을 한다 하니, 경 등은 힘써 기묘한 계책을 내어 포획(捕獲)하여 아뢰되, 너무 번거롭고 떠들썩하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니 힘써 비밀로 하라.” 하였다. 또 이로써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와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에게 효유하였다.

단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음의 기록을 근거로 이들의 상호 관련성을 구명해 보고자 한다. 두모악과 관련한 조선왕조실록의 최초의 기사는 『성종실록』 성종 8년 8월 5일 기해조에 찾아 볼 수 있으며, 이후 『성종실록』 8년 11월 21일 갑신조와 『성종실록』 23년 2월 8일 기유조에서도 등장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1) 지금 어느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도내의 사천(泗川)과 고성(固城)·진주(晉州) 지방에, 「제주(濟州)의 두독야(豆禿也)」라고만 이름을 칭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2, 3척의 배를 가지고 출래(出來)하더니 이제는 변하여 32척이 되었으며, 강기슭에 의지하여 집을 지었는데⁴⁴⁾

(2) 근년에 제주(濟州) 세 고을의 인민(人民)이 자칭 두독야지(豆禿也只)라 하면서 처자(妻子)들을 거느리고 배를 타고 경상도·전라도의 바닷가 연변(沿邊)에 옮겨 정박(碇泊)하는 자가 수 천여 인이다.⁴⁵⁾

(3) 또 연해(沿海)에는 두무악(頭無岳)이 매우 많은데, 제주(濟州)의 한라산(漢拿山)을 혹 두무악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세속에서 제주 사람을 두무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두독(頭禿)이라고 쓰기도 합니다.⁴⁶⁾

위의 『성종실록』 기사를 통해 두독야(豆禿也)·두독야지(豆禿也只)·두무악(頭無岳)이라 칭하는 이들의 존재에 대해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두무악(頭無岳)⁴⁷⁾이란 용어는 조선전기 인문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38권 전라도 제주목 산천조에 기록된 “한라산(漢拏山)은 주 남쪽 20리에 있는 진산(鎭山)이다. 한라(漢拏)라고 말하는 것은 운한(雲漢)을 나인

44) 『성종실록』 권83, 성종 8년 8월 5일 기해조, 「今有人來言: ‘道內泗川, 固城, 晉州地面, 濟州豆禿也只稱名人, 初將二三船出來, 今轉爲三十二隻, 依岸爲廬」

45) 『성종실록』 권86, 성종 8년 11월 21일 갑신조, 「近年濟州三邑人民自稱 ‘豆禿也只’, 挈妻子乘船, 移泊慶尙, 全羅沿邊者, 幾千餘人」

46) 『성종실록』 권262, 성종 23년 2월 8일 기유조, 「且沿海頭無岳甚多, 濟州漢拿山 [漢拏山] 或名頭無岳, 故俗稱濟州人爲頭無岳, 或書頭禿也只」

47) 김상헌의 『남사록』과 이원진의 『탐라지』, 김성구의 『남천록』 등에서도 이와 같은 두무악(頭無岳)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拏引)할 만하기 때문이다. 혹은 두무악(頭無岳)이라 하니 봉우리마다 평평하기 때문이요, 혹은 원산(圓山)이라고 하니 높고 둥글기 때문이다”는 기사를 근거로 두무악(頭無岳)은 곧 한라산을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성종실록』 기사에서는 한라산을 지칭하는 두무악이 제주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그들이 제주도를 벗어나 경상도·전라도 해안에 무리를 지어 정착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한영국(韓榮國)의 『‘豆毛岳’考』에 의하면 두모악이란 원래는 한라산을 두무악 또는 두모악이라고도 칭한 데서 말미암은 제주도인에 대한 속칭이었지만, 15세기 중엽부터 18세기 초엽에 이르기까지는 이른바 출륙 제주도민, 즉 원주지인 제주도를 불법적으로 이탈하여 주로 전라·경상도 연해지역에 거주하던 제주도민을 가리키는 공식명칭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두무악(頭無岳)’ 등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명명되어지는 두독야(豆秃也)·두독야지(豆秃也只)·두모악(頭毛岳)·두독(頭秃)은 모두 출륙 제주도민을 지칭하고 있음을 파악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들 두무악(頭無岳)집단은 포작인(鮑作人)과 동일시되는 존재로서 연결 지어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된다. 『성종실록』 성종 4년 3월 28일 무오조 기사와 『중종실록』 중종 17년 6월 신축조 기사를 통해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할 수가 있다.

(1) “제주(濟州)는 바다로 둘러 있어 사면에서 적을 받게 되므로 방어가 가장 긴요한데, 요즈음 흉년으로 말미암아 군민(軍民)이 유산(流散)하여, 지금 전라도의 연변(沿邊) 여러 고을로 옮겨 사는 자가 많습니다. 이미 본도의 관찰사(觀察使)를 시켜 추쇄(推刷)하여 합계한 것이 양인(良人) 91, 정병(正兵) 3, 선군(船軍) 12, 공천(公賤) 29, 사천(私賤) 17입니다. 그 중에서 사천과 신역(身役)이 없는 양인은 억지로 돌아오게 할 것 없으나, 군역(軍役)이 있는 사람과 공천은, 청컨대 모두 쇄환(刷還)하게 하소서.”⁴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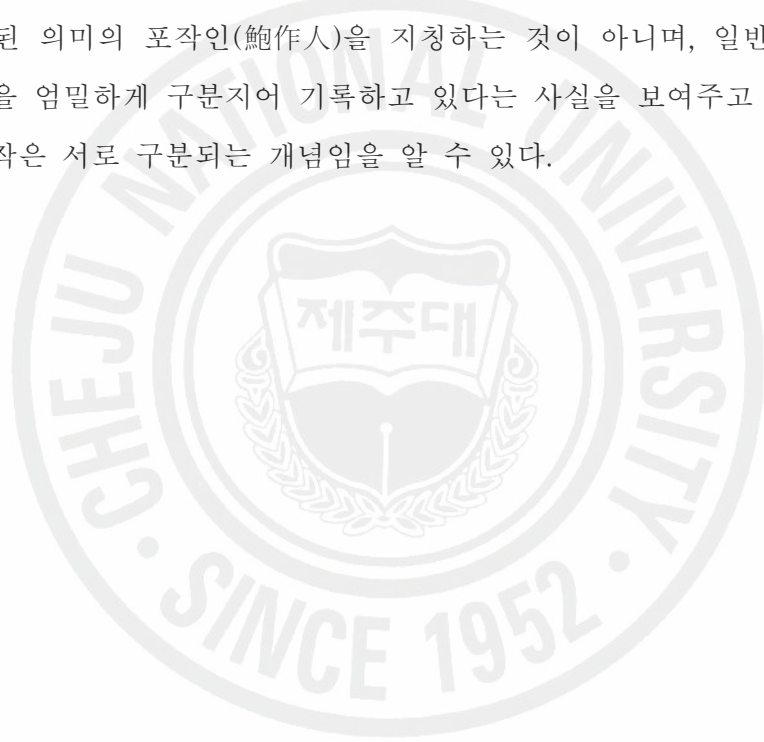
(2) “제주 사람들은 비록 포작간이 아니더라도 유랑하는 자가 또한 많이 있으니,

48) 『성종실록』 권28, 성종 4년 3월 28일 무오조, “濟州環海, 四面受敵, 防禦最緊, 而近因年荒, 軍民流散, 今於全羅道沿邊諸邑, 移寓者甚多. 已令本道觀察使推刷, 計得良人九十一, 正兵三, 船軍十二, 公賤二十九, 私賤十七. 其私賤及無役良人, 則不須勒還, 軍役人及公賤, 請皆刷還”

포작간들을 쇄환할 것이 없습니다.”⁴⁹⁾

위의 사료(1)과 (2)에서 나타난 기사의 내용처럼 출륙 제주도민인 두무악(頭無岳)이 양인·선군·공천·사천 등 다양한 계층이 담당 역을 피해 전라도 해안지역으로 옮겨 살고 있음을 볼 때, 두무악(頭無岳)과 포작인(鮑作人)이 동일한 존재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시 조선시대 제주도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포작인(鮑作人)은 출륙 제주도민(;두모악) 중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진다.

따라서 위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두모악이 곧 해물을 채취하고 진상역을 담당하는 한정된 의미의 포작인(鮑作人)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 출륙 제주도민과 포작을 엄밀하게 구분지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두모악과 포작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49) 『중종실록』 권45, 중종 17년 6월 신축조, 「“濟州人雖非鮑作干, 流移者亦多有之, 鮑作干不須刷還”」

Ⅲ. 포작인의 출륙과 존재양태

1. 포작인 출륙의 사회·경제적 배경

출륙 제주도민을 뜻하며 두모악으로 불리던 이들 가운데에는 국가에 진상용 추복(追馘)과 인복(引馘) 및 다양한 종류의 어복 조달을 담당한 포작인(鮑作人)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과연 무슨 이유에서 자신의 본거지를 뒤로하고, 육지로 대거 출륙해 나가야만 했는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열악했던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상헌(金尙憲)은 『남사록(南槎錄)』⁵⁰⁾에서 제주도의 열악한 자연환경을 다음과 같이 생생히 그려내고 있다.

(1) 땅에 바위와 돌이 많아 흙이 두 어치 퍼진데 불과하고, 또 흙이 가볍고 건조해서 밭은 개간하는 데는 반드시 우마(牛馬)를 몰아 밟는다. 그리고 목면(木棉)과 마포(麻布)가 생산되지 않아 의식(衣食)이 모자라니, 오직 해물(海物)을 캐어 생업을 버금하고 있다.

(2) 삼읍(三邑)이 모두 한라산 밑에 있어서 평토(平土)는 반묘(半畝)도 없고 밭을 가는 자는 고깃배를 예는 듯해야 한다.

(3) 농기(農器)가 매우 좁고 작아서 어린아이 장난감 같다. 그 까닭을 물어보니, 흙이 두 어치 속에만 들어가도 다 바위와 돌이므로 깊이 갈 수 없다고 한다.

이렇듯 제주도는 환해의 화산섬으로 토양 대부분이 척박한 화산회토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표 거의가 자갈로 덮여 있어 심경(深耕)과 김매기가 매우 어려웠다. 또한 토성(土性)이 찰지지 못해 파종 후에는 우마(牛馬)를 이용해 답전(踏田)을

50) 김상헌, 『남사록(南槎錄)』 권1, 9월 22일 병자조.

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투수성(透水性)이 강한 제주도 지질의 특수성에 기인하여 비교적 많은 강우량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물이 지하로 빠져들어 감과 동시에 예기치 못한 기상조건으로 파종시 종자가 날리거나 그것이 빗물에 유산되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하였다.⁵¹⁾ 이러한 제주도의 사면대해풍재(四面大海風災)와 산고심곡수재(山高深谷水災) 및 석다박토한재(石多薄土旱災) 등 소위 삼재(三災)로 말미암아 농사만으로는 생계를 유지시키기가 매우 어려웠으며, 때문에 제주도민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특산물을 가지고 바다로 나아가 그들에게 필요한 쌀·배·소금 등과 교역하며 생계를 이어 나갔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와 같은 제주도의 자연재해 발생에 대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고 있다.

(1) 크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었는데, 제주(濟州)에 큰 나무가 뽑히고, 밭곡식과 나무 열매가 손실되었으며, 표몰(漂沒)된 민호(民戶)가 18호(戶)요, 우마(牛馬)가 표류(漂流)되어 많이 죽었고, 동서포(東西浦)의 병선(兵船) 20여 척이 파괴되었다.⁵²⁾

(2) 제주(濟州)는 땅이 좁고 사람은 많은데다가, 전토(田土)가 척박(瘠薄)하여 살아갈 수가 없으므로, 떠돌아다니며 사는 자가 매우 많아서, 별처럼 무리지어 모이고 개미처럼 떼 지어 모이므로, 조금도 정처(定處)가 없다.⁵³⁾

제주의 열악한 자연적 조건과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조선정부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과제였다. 특히 제주의 자연재해는 유기적·연속적으로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가져옴에 따라 제주도민의 삶은 더욱 궁핍해져 갈 수 밖에 없었으며, 이는 출륙 포작인이 출현하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제주도민의 궁핍한 생활여건은 15세기 이후 조선왕조의 중앙집권적 지배체제가 점차 확립됨에 따라 더욱 악화되어 갔다. 더욱이 제주도에 파견된 중앙의 관리들과 제주도의 토호세력에 의한 수탈까지 겹쳐서 도민들은 더할 수 없는

51) 권인혁, 김동진,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수취체제와 주민의 경제생활」 『탐라문화』 제19호(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8), 181쪽.

52) 『태종실록』 권10, 태종 5년 7월 29일 임술조, 「大風以雨, 濟州大木拔, 早穀木實損傷, 漂民戶十八, 漂牛馬多死, 東西浦兵船二十餘艘傷破」

53) 『성종실록』 권178, 성종 16년 윤 4월 19일 기해조, 「濟州土窄人多, 加以田土瘠薄, 不能聊生, 流寓者甚多」

고통을 겪어야만 하였다. 또한 제주도는 그 지역이 협소하고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잡역(雜役)·잡세(雜稅)는 해마다 증대되고 있었다.⁵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생계를 위협받은 포작인들은 사활을 건 출륙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포작인(鮑作人)이 출륙하게 되는 경제적 배경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작용하였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로 포작인에 대한 공물(貢物)·진상(進上)의 과중을 들 수 있으며, 둘째로 관리들의 포작인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수탈을 들 수 있다. 그들에게 과다하게 책정되었던 수취체제의 실태와 폐단은 김상헌(金尙憲)의 『남사록(南槎錄)』과 이견(李健)의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 『광해군일기』의 아래와 같은 기록을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다.

(1) 본주(本州)에서 진상하는 전복의 수량이 매우 많고 관리들의 공(公)을 빙자하여 사육을 채우는 것이 또 그 몇 곱이 되므로 포작배는 그 일에 견디지 못하여 도망하고 익사하여서 열에 둘 셋만 남게 되나 징렴 공응(供應)은 전보다 줄지 아니하니 이 때문에 … 이웃에 사는 홀어미가 있다 하더라도 차라리 빌어먹다가 스스로 죽을지언정 포작인(浦作人)의 아내가 되려고 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⁵⁵⁾

(2) 그들은 생복을 잡아다가 관가 소징(所徵)의 역(役)에 응하고 그 나머지를 팔아서 의식(衣食)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생활의 간고(艱苦) 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더구나 불렴(不廉)의 관의 있어 탐오지심(貪汚之心)이 생기면 명목(名目)을 교묘히 만들어 징색(徵色)하기를 수없이 하므로 1년간의 소업으로서도 그 역에 응하기가 부족하다. 하물며 소속 관청에 수납(輸納)의 고통과 이서(吏胥)의 무간(無奸)이 폐가 끝이 없으니 또 무엇으로서 의식의 자(資)를 바라리오.⁵⁶⁾

(3) 선혜청이 아뢰기를, 의금부 도사 한명욱(韓明勛)이 명을 받들고 제주에 갔더니,

54) 권인혁, 「19세기 초 梁濟海의 謀變 實狀과 그 性格」, 『탐라문화』제7호(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8), 133쪽.

55) 김상헌(金尙憲), 『남사록(南槎錄)』 권1, 9월 22일 병자조.

56) 이견(李健),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 「如是採取 應官家所徵之役 以其所餘 典賣衣食 其爲生理之艱苦 已不足言 而若有不廉之官 恣生貪汚之心 則巧作名目 徵索無算 一年所業 不足以應其役 其官門輸納之苦 吏胥舞弊之弊 罔有紀極 況望其衣食之資乎」

… 또 전일에 목사들이 해적(海賊)의 상황을 정탐한다는 구실로 군관을 내보내 많은 포작인(鮑作人)을 인솔하고 떠나 오랫동안 도서(島嶼)에 머물며 생전복을 따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진상만을 위해서가 아니며 사사로이 쓰여 지는 것들도 많다고 하였습니다.⁵⁷⁾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포작인들이 부담하여야 했던 전복 진상의 수는 그들에게 터무니없이 과중하게 부과되었으며, 더불어 관리들의 가혹한 수탈적 상황으로 인해 포작인들의 출륙은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에게 부과되었던 공물·진상 실태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였을까. 이를 위해 조선시대 포작인이 중앙정부로부터 상납하여야 했던 해산물 진상의 구체적인 종류와 내용, 그 내역에 따른 수효에 대해서 각 문헌을 통해 시기별로 검토하고자 하며, 포작인들의 출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선, 17세기 전반 제주어사로 파견되었던 김상헌의 『남사록(南槎錄)』 기록을 선두(先頭)로 하여 조선시대 변천과정에 따른 해산물 진상의 구체적인 실상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17세기 전반 - 김상헌의 『남사록(南槎錄)』(선조 34년, 1601년)

<표 2> 17세기 전반 제주삼읍 해산물의 진상 내역

지역	구분	진 상 내 용
제주	별진상	추복(槌鮑) 3,030첩(貼), 조복(條鮑) 230첩, 인복(引鮑) 910주지(注之), 오징어[烏賊魚] 680첩
	사재감(司宰監) 공물	대회전복(大灰全鮑) 500첩, 중회전복(中灰全鮑) 945첩, 소회전복(小灰全鮑) 8,310첩
	별공물	대회전복(大灰全鮑) 1,000첩, 중회전복(中灰全鮑) 700첩
대정		대회전복(大灰全鮑) 500첩, 중회전복(中灰全鮑) 250첩
정의		대회전복(大灰全鮑) 500첩, 중회전복(中灰全鮑) 195첩

(자료 : 김상헌(金尙憲), 『남사록(南槎錄)』)

57) 『광해군일기』 권10, 광해군 즉위년 11월 3일 병술조, 「宣惠廳啓曰: 義禁府都事韓明勗, 奉使往濟州, 則本州人民呈訴曰: … 且前日牧使等, 托稱偵探海賊, 差遣軍官, 多率鮑作, 久留島嶼, 摘取生鮑, 非但爲其進上, 而私用亦多」

위의 <표 2>를 통하여 조선전기 대동법 실시 이전의 제주도 해산물 진상의 실태를 대략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먼저, 제주도의 공물 상납은 주로 별진상(別進上)과 별공물(別貢物)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⁵⁸⁾ 또한 <표 2>에 나타난 진상물은 모두 “삼읍의 포작으로부터 취해지며, 기타 해채(海菜) 및 수령의 봉송(封送)하는 수량은 이 한(限)에 있지 아니하므로 전도(全島)의 물력이 거의 여기에 없어진다”⁵⁹⁾고 기록됨에 따라 제주지역의 해산물 진상은 포작인들에게 부과되어졌으며, 이들이 겪는 진상부담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가에 대해 추측해 볼 수 있겠다.

이러 17세기 전반의 포작으로부터 취해지고 있는 해산물 진상 품목은 크게 추복(搥腹)·조복(條腹)·인복(引腹)·회전복(灰全腹) 등의 전복과 함께 오징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회전복은 그 크기에 따라 대·중·소로 나뉘어 진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추복이란 방망이로 두드려가면서 말린 전복으로 추포(槌鮑)라고도 일컫는다. 조복은 ‘오리’와 같이 가늘고 길게 썰어 말린 전복으로 여겨지며, 인복은 납작하게 펴서 말린 전복으로 건복(乾腹)이라고도 칭한다.⁶⁰⁾ 이렇듯 포작이 진상하는 전복의 종류와 매우 다양한 가운데, 추복과 인복의 전수(全數)를 마련함에 있어 이는 모두 매우 드문 종류였으며, 또한 채득(採得)할 때에도 매우 힘이 들었다. 혹 재료를 얻었더라도 포작인들이 직접 만들 수 없으므로 솜씨가 좋은 사람을 빌려서 세(貰)를 주고 만들어야 했다. 따라서 전복 값과 사람을 빌리는 값을 합하면 1인당 1달삿을 벌리기 위해서는 거의 1필의 역(役)이 소요되었고, 그러한 것이 한 달에 8차례나 되었으므로 이는 1년에 8필의 역에 해당하는 것이었다.⁶¹⁾ 이에 포작인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부과되어지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이 표에서 보여지는 위의 전복들은 모두 말려 가공한 상태로 바쳐졌는데, 이는 생복으로 바칠 경우 운반과정에서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마른전복이 지니는 효능의 특성으로 말미암은 조치라 생각되어 진다.

58) 박찬식, 「19세기 濟州 지역 進上의 실태」 『탐라문화』제16호(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 258쪽.

59) 김상헌, 『남사록(南槎錄)』 권1, 9월 22일 병자조, 「此皆取辦於三邑浦作而其他海菜及守令封送之數 不在此限 一島物力殆盡於此矣」

60) 이원진 씬·김찬흡외 옮김, 『(역주)탐라지』(푸른역사, 2002), 164쪽.

61) 양진석, 「18·19세기 제주의 收取制度와 特徵」 『탐라문화』제24호(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116쪽.

(2) 17세기 중반 - 이원진의 『탐라지(耽羅志)』(효종 4년, 1653년)

<표 3> 17세기 중반 제주지역 해산물의 진상 내역

구 분	종류	추복(槌鮞)	조복(條鮞)	인복(引鮞)	미역 [粉藿]	미역귀 [藿耳]	오징어 [烏賊魚]
	시기						
월령(月令)	2월령	265첩 ⁶²⁾	265첩	95속(束)	-	-	-
	3월령	240첩	-	85속	40속	2석 5두	-
	4월령	760첩	-	170속	-	-	-
	5월령	760첩	-	170속	-	-	-
	6월령	1,108첩	-	170속	-	-	215첩
	7월령	680첩	-	170속	-	-	430첩
	8월령	680첩	-	170속	-	-	258첩
	9월령	425첩	-	85속	-	-	172첩

(자료 : 이원진(李元鎭)의 『탐라지(耽羅志)』)

17세기 중반인 조선후기에 이르러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상공은 대부분 미납(米納)으로 바뀌어 갔다. 그러나 위 <표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제주도의 별공과 진상은 대동법이 실시된 이후에도 현물로 상납하는 형식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오히려 조선후기에 와서 제주도의 진상부담은 더욱 체계화 되어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⁶³⁾ 이 때, 월령(月令)이란 다달이 정해진 예에 의

62) 조선시대 해산물 진상의 수량 단위를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원문의 단위		현대의 환산치	비 고
량(量) -부피	1말=1두(斗)=10되	6300ml	○ 홑 (합, 合): 1되의 1/10 ○ 되 (승, 升): 1말의 1/10 ○ 말 (두, 斗): 1되의 10배 ○ 섬 (석, 石): 1말의 10배
	1되=1승(升)=10홑	3홑 5작 = 630ml	
	1홑=1합(合)=10작	63.0ml	
형(衡) -무게	1근(斤)=16양(兩)	641.9g	
	1양(兩)=10돈	40g	
	1근(鈞)=30근(斤)	-	
	1石=4근(鈞)	-	
기타	1첩(貼)	'접'의 차자 표기로, 물고기나 전복 따위의 묶음을 한 단위로 이르는 말이다. 종류에 따라 10개 또는 100개를 한 단위로 한다.	
	1속(束)	束은 '뭇'의 차자표기로, '묶음'을 낱개로 세는 단위이다. 물고기는 열 마리의 묶음을 한 뭇이라 하고, 미역은 대개 50개를 한 뭇이라 한다.	
	1장(張)	털이 없는 가죽 외에 보통 얇은 물건을 셀 때 쓰는 단위이다.	
	1개(箇)	낱으로 된 물건을 세는 단위.	
	1주지(注之)	'주지'의 차자표기로 미역·다시마의 한 묶음을 이르는 말, 또는 인복의 한 묶음[束]을 이르는 말로 쓰인다. 炸·注乙[줄]로도 표기된다.	

(강영봉, 「固有語彙 研究-〈耽羅營事例〉와 〈濟州事例〉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제20호(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9)를 참조하여 표 작성.

63) 박찬식, 「『耽羅巡歷圖』에 보이는 제주 진상의 실태」 『耽羅巡歷圖研究論叢』(탐라순력도연구회, 2000), 103쪽

하여 지방에서 나는 물건을 국왕에게 바치는 것으로, 제주도는 2월부터 시작하여 9월까지 계속 진상되고 있다. 그 해산물 진상 종류로는 추복·조복·인복 등 전복과 미역, 오징어 등으로 나타난다. 미역은 미역을 말린 후 분말로 만든 분곽(粉藿)과 미역귀를 칭하는 곱이(藿耳)로 구분하여 진상되어졌다.⁶⁴⁾

(3) 18세기 전반 - 이형상, 『남환박물(南宦博物)』(숙종 29년, 1703년)

○ 18세기 전반 제주지역 해산물의 진상 내역

추복(槌鮑) 3,900여첩, 조복(條鮑) 260여첩, 인복(引鮑) 1,100여첩, 회전복(灰全鮑) 3,860여첩, 도합(都合) 9,100여첩과 오징어[烏賊魚] 860여첩 및 분곽(粉藿)·조곽(早藿)·곱이(藿耳) 등의 일이 모두 이 80여명 포작인에게서 나옵니다.

위의 『남환박물』 기록을 통해, 제주에서 진상되어지는 주된 해산물은 전복이며, 이러한 전복채취는 80여 명의 포작에게 부과되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17세기 중반의 해산물 진상 내역인 <표 3>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양이 급격히 감소됨을 살필 수 있다.

(4) 18세기 후반 - 『제주대정정의읍지』(정조 17년, 1793년으로 추정)

<표 4> 18세기 후반 제주지역 해산물의 진상 내역

구 분	종류	추복(槌鮑)	조복(條鮑)	인복(引鮑)	오징어
	시기				
월령(月令)	2월령	113첩	113첩	30속(注之)	-
	3월령	113첩	-	27속	-
	4월령	245첩	-	54속	-
	5월령	245첩	-	54속	-
	6월령	190첩	-	54속	73첩
	7월령	189첩	-	54속	139첩
	8월령	189첩	-	54속	88첩
	9월령	139첩	-	27속	64첩

(자료 : 『제주대정정의읍지(濟州大靜旌義邑誌)』 진공조)

64) 『향토사교육자료』(제주도교육연구원, 1996), 148쪽.

『제주대정정의읍지』의 진공조에 나타난 18세기 후반 해산물의 진상 내역은 다음 <표 4>와 같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17, 18세기의 해산물 종류 가운데 분곽·조곽·괵이 등의 미역을 제외시키고 있음으로써 추복, 조복, 인복 및 오징어만을 진상하고 있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남환박물』에서의 각 해산물의 수량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전 시기보다도 절반가량 그 액수가 줄어들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19세기 전반 - 『탐라사례(耽羅事例)』(순조 27년, 1824년 이후 시기로 추정)

<표 5> 19세기 전반 제주지역 해산물의 진상 내역

구 분	종류 지역 시기	추복(搥鮞)			조복(條鮞)			인복(引鮞)				오징어
		州 先手措備 ⁶⁵⁾	旌義 ※	총계	州 ※	旌義 ※	총계	州 ※	大靜 ※	旌義 ※	총계	
월령 (月令)	2월령	67첩	40첩	107첩	67첩	40첩	107첩		32속		32속	-
	3월령	73첩	34첩	107첩			-		20속	9속	29속	-
	4월령	159첩	76첩	235첩			-		42속	16속	58속	-
	5월령	160첩	75첩	235첩			-		52속	6속	58속	-
	6월령	128첩	50첩	178첩			-		46속	11속	57속	69첩
	7월령	117첩	60첩	177첩			-		46속	11속	57속	135첩
	8월령	113첩	63첩	176첩			-	8속	41속	8속	57속	85첩
	9월령	87첩	45첩	132첩			-		24속	5속	29속	60첩

(자료 : 『탐라사례(耽羅事例)』 공헌조)

<표 5>는 1824년 이후 시기로 추정되는 19세기 전반의 『탐라사례(耽羅事例)』에 나타난 해산물의 진상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이는 1841~1843년 사이에 편찬된 이원조의 『탐라지초본』에 기재된 해산물의 진상 수량과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탐라지초본』에 나타난 해산물 진상의 내역표를 생략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내용은 『탐라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탐라사례』 공헌조 2월령의 추복, 조복과 관련하여 “搥鮞一百七貼, 六十七貼, 自平役, 每貼二斗式, 州善手措備, 四十貼, 旌義善手措備”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포작의 고역을 완화시키기

65) 이원진, 『탐라지초본』 工匠條 鮑作에 「進上搥引鮞及官用魚鮞皆令鮑作擔當令則進上善手禮吏處給價備納官用私賃先手措備」진상 추인복 및 관용 물고기·진복 모두를 포작에게 명하여 담당하게 하였다 명한 즉, 진상 선수 예리는 관용으로 쓸 비품을 개인에게 사서 공급가격으로 처리하라고 기록되어져 있다. 이에 위 표에서 선수조비(善手措備)를 생략하여 ※표시로 나타냄을 밝힌다.

위해 영조 14년(1738)의 평역고의 설치와 그 관련성을 지니며, 그들이 관청으로부터 역가(役價) 명목으로 받은 것은 추복·인복 매첩 당 米 2두씩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복은 매 주지(注之)당 米 2두 5승의 역가를 지급받았고, 오징어는 매 첩의 가격이 2두이며 이는 평역고로부터 출납되어진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역가의 지급은 관청에 진상물을 제공해야 하는 그들의 역에 비하면 경제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6) 19세기 중반 - 『탐영사례(耽營事例)』(철종 5년, 1854년 직후시기로 추정)

<표 6> 19세기 중반 제주지역 해산물의 진상 내역

구 분	종류 지역 시기	추복(搥鰓)			조복(條鰓)			인복(引鰓)				오징어
		州 先手措備	旌義 ※	총계	州 ※	旌義 ※	총계	州 ※	大靜 ※	旌義 ※	총계	
월령 (月令)	2월령	80첩	44첩	131첩	80첩	44첩	131첩		32속		32속	-
	3월령	87첩	44첩	131첩			-		20속	9속	29속	-
	4월령	189첩	95첩	284첩			-		42속	16속	58속	-
	5월령	189첩	95첩	284첩			-		52속	6속	58속	-
	6월령	144첩	72첩	216첩			-		46속	11속	57속	83첩
	7월령	143첩	72첩	215첩			-		46속	11속	57속	159첩
	8월령	142첩	72첩	214첩			-	8속	41속	8속	57속	99첩
	9월령	105첩	50첩	155첩			-		24속	5속	29속	73첩

(자료 : 『탐영사례(耽營事例)』 공헌조)

<표 6>은 19세기 중반 해산물 진상 내역을 『탐영사례』에 의거하여 작성한 표이다. 이는 19세기 전반의 해산물 진상 내역을 나타낸 <표 5>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추복과 조복은 제주목과 정의현 진상 선수예리에게 준비토록 하였으며, 인복은 제주목을 비롯한 양현(兩縣)의 선수예리가 담당하였다. 한편, 그 수량적인 면에서 <표 5>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인복은 양적변화가 없으나 그 나머지 추복, 조복, 오징어의 양이 감소되어 책정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의 여러 사료를 바탕으로 제주도 포작인의 진상한 해산물(海産物)의 진상 실태를 정리해 본 결과, 17세기 전반~19세기 중반에 이르는 시기별 해산물의 진상 품목과 수량의 변화양상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포작인들의 담당하였던 해산물 진헌(進獻)의 대중(大宗)을 이루고 있는 품목은 전복과 오

징어이고, 달마다 월령(月令)으로 바쳐야 하는 추복(搥鰻)과 조복(條鰻), 인복(引鰻) 등과 같은 전복류의 진상은 2월에서 9월까지 이루어 졌으며, 오징어는 6월에서 9월까지 진상되고 있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겠다. 위의 해산물 진상의 전체적인 수량 변화를 표로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조선시대 제주지역 진상 해산물의 수량 변화⁶⁶⁾

(단위 : 貼)

연대 종류	17세기 전반	17세기 중반	18세기 전반	18세기 후반	19세기 전반	19세기 중반
	남사록 (1601)	탐라지 (1653)	남환박물 (1703)	제주대정 정의읍지 (1793)	탐라사례 (1824)	탐영사례 (1854)
추복(搥鰻)	3,030	4,918	3,900여	1,423	1,347	1,630
조복(條鰻)	230	265	260여	113	107	131
인복(引鰻)	910	1,115	1,100여	354	377	377
오징어[烏賊魚]	680	1,075	860여	364	349	414

이상 <표 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조선정부의 중앙집권체제가 확립되어감에 따라 포작인에게 주어지는 해산물의 양이 17세기 중반에 이르러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 전·후반을 기점으로 하여 진상 해산물의 수량이 급격히 격감되고 있으며, 이는 19세기에 넘어오면서 수량이 조금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17, 18세기와 비교해 보았을 때 양적으로 현저히 감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 표에 보이는 규정이외에도 수시로 부과되는 별진상용 전복, 그리고 탐관오리들의 사적으로 징수하는 전복도 포작인들이 채취하여야만 하였으며, 수령(首領)을 비롯한 지방 관리들은 진상제도를 사리추구의 도구로 이용하고 그 징수량은 국가규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증대되고 있었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⁶⁷⁾

여기서 해산물 진상액수의 급격한 감소 현상은 포작인(鮑作人)과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며, 이러한 조선정부의 양감(量減)정책 실시의 근본적인 배경에 대해서

66) 『남사록』, 『탐라지』, 『남환박물』, 『제주대정정의읍지』, 『탐라사례』, 『탐영사례』의 자료를 참고로 표 작성.

67) 나가모리 미쓰노부(長森美信), 「조선후기 제주 進上物 조달과 수송」 『탐라문화』 제23호(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3), 140~141쪽.

는 ‘3. 조선정부의 출륙 포작인에 대한 대책’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보고자 한다.

포작인 출륙의 사회·경제적 배경에는 위와 같은 공물·진상의 과중한 수취체제의 폐단과 더불어 포작인에 대한 역(役)의 과중함을 들 수 있다.

조선시대 제주에는 소위 6고역(六苦役)이라는 계층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는 제주도 지역에서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여섯 가지 직역을 총칭해서 부르는 보통명사의 의미를 갖는다.⁶⁸⁾ 이러한 6고역에 포작(鮑作) 직역도 포함되어 있음을 볼 때, 조선시대 포작인들이 겪은 사회·경제적 고충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렇듯 진상용 전복과 관아용 어복 조달을 담당한 포작(鮑作)은 그 진상액이 과다하고, 아울러 관리들의 빙공영사(憑公營私)로 말미암아 목자(牧子) 못지않은 고역을 치러야 했다.⁶⁹⁾ 이형상의 『탐라장계초(耽羅狀啓抄)』에 나타난 기록을 보면, 이러한 상황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지아비는 포작으로서 겸하여 선격 등 허다한 괴로운 일을 행합니다. 처는 잡녀로서 1년 동안의 진상 미역과 전복 공납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고역이 뉘이 목자들보다 열배나 됩니다. 대개 1년 통틀어 계산해 보면 포작의 공납하는 값을 20필을 내려가지 않고, 잡녀들이 공납하는 바는 7~8필이 됩니다. 한 집안에서 부부의 공납하는 바가 거의 30여 필에 이르니, 갯가의 백성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피하려고 하는 것은 형세가 진실로 그러한 바 있습니다. 중년(中年) 이상에서는 포작의 본디 숫자가 많게는 3백여 명에 이르렀으므로 혹 감히고 혹 곤장을 맞더라도 오히려 책임에 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인 즉 다만 88명뿐이고, 부모 상(喪)에 있거나 여러 탈이 있어서 이 중에서 그 실제 부역하는 바는 더욱 극심히 영성(零星) 합니다.⁷⁰⁾

위의 기록에서 보이듯이, 포작인들은 전복 진상뿐만이 아니라 격군(格軍)⁷¹⁾으

68) 김동진, 『18·19世紀 濟州島의 身分構造 研究 : 『大靜縣戶籍中草』를 中心으로』(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대학원, 1995), 152쪽.

69) 권인혁, 「19世紀 前半 濟州地方의 社會經濟構造와 그 變動-哲宗朝 濟州民亂과 관련하여」 『이원순교수화갑기념사학논총』(교학사, 1986), 298쪽.

70) 이형상, 『탐라장계초(耽羅狀啓抄)』, 「夫以鮑作兼行船格等許多苦役 妻以潛女 備納一年內進上藿鮓 其爲苦役十倍於牧子 槩以一年通計 則鮑作所納之價 不下二十疋 潛女所納 亦至七八疋 一家內夫婦所納 幾至三十餘疋 則浦民之抵死謀避 勢所固然 中年以上鮑作元數 多至三百餘名 或因或杖 猶可責應 今則只是八十八名 而在喪雜頗 又在於此中 其所實役 尤極零星」

71) 격군(格軍) : ① 조선시대에, 사공(沙工)의 일을 돕던 수부(水夫); 격인(格人)·선격(船格), ② ‘결군’의 취음(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상 : 격군조, 두산동아, 1999, 312쪽).

로 징발되어 나가는 등 잡역(雜役)의 부담을 저야만 하였다. 그래서 포작인들은 과중한 역(役)에서 벗어나기 위한 피역행위를 도모하였으며, 그 결과 8백여 명에 달하던 포작인들이 80여명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함께 피역을 하지 못한 포작인들은 피역자의 몫까지 모두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겪는 고통은 매우 컸었다고 할 수 있겠다.⁷²⁾ 지금까지 논의한 제주도의 열악한 환경 조건으로 말미암은 생활고와 함께 조선왕조의 중앙집권적 통치 강화에 따른 공부(貢賦)의 증대 및 격심한 관부의 수탈은 결국 포작인들이 제주를 떠나 출륙하게 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어찌 보면 그들의 출륙이 주어진 환경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의 능동적인 해양활동 의미보다는 수동적인 해양활동으로 인식될지 모르겠으나, 자의에 의해서 주어진 역경을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갔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포작인들이 ‘출륙’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어진다.

2. 출륙 포작인의 실태

조선 중기에 이르러 제주지역 포작인(鮑作人)들은 공물 진상 부담의 가중과 가혹한 노역 징발에 따른 생활고로 인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출륙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는 이들이 어디로 이동해 갔으며, 그 곳에서의 존재 양태는 어떠한지에 대해 조명해 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사회경제적 어려움과 차별을 견디지 못하고 출륙하여 경상도·전라도 연해안에 거주하면서 생업을 마련한 포작인 그룹의 실태에 대해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포작인(鮑作人)들이 제주에서 와서 전라도·경상도 두 도의 바닷가에 흩어져 있는데, 몰래 도둑질을 하니 그 조짐이 염려스러우나, 다만 현재 드러난 죄상(罪狀)이 없으므로 죄를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또 비록 본토(本土)로 쇄환(刷還)시

72) 권인혁, 「조선후기 지방관아 재정의 운영실상-제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탐라문화』제16호(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 100쪽.

키고자하나 반드시 생업(生業)에 안주하지 못할 것이니, 청컨대 살고 있는 고을의 수령(守令)·만호(萬戶)로 하여금 선척(船隻)에 자호(字號)로 표(標)를 붙이고, 바다에 나갈 때에는 노인(路引)을 주도록 하되, 만일 노인이 없거나 혹은 표가 없는 배를 타고 마음대로 출입하면 해적(海賊)으로 논하여 중한 법으로 처치하도록 하소서⁷³⁾

(2) 신이 들건대 바다 연변에 와서 사는 제주(濟州) 사람에게 수령이 역(役)을 정하지 아니한 자를 이제 감사(監司)로 하여금 추국(推鞠)하여 죄를 논하게 하였다고 하는데, 신이 이 사람을 보니 본래 농업은 아니하고 오로지 고기를 잡아 생활하기 때문에 여러 고을 수령이 복작간(鮑作干)이라고 일컫고 모든 진상(進上)하는 해물(海物)은 오로지 이 사람을 의뢰하여 채포(採捕)함으로 인하여 사랑해 보호하고 그 사람도 수령이 그를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좋아하는데, 만약 침책(侵責)을 당하면 다른 고을로 옮겨서 정처 없이 옮기는 것이 예사입니다. ... 이 같은 사람이 몇 천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데,⁷⁴⁾

위의 (1) 기록으로 보아 출륙 포작인들은 주로 전라도와 경상도 해안에 산거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의 성종 20년 기록에서 경차관 이의(李誼)가 복작간(鮑作干)의 역을 지고 정주하고 있는 전라도 내의 포작인만도 그 수가 「不知其千人」이라고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한반도 남해안으로 떠나간 포작인들의 숫자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양남 연해(兩南 沿海)에 정착한 포작인들은 소주지(所住地) 지방관아로부터 녹안(錄案)되어 포작(鮑作) 역(役)을 담당하면서 소거(所居) 군현(郡縣)의 정식 주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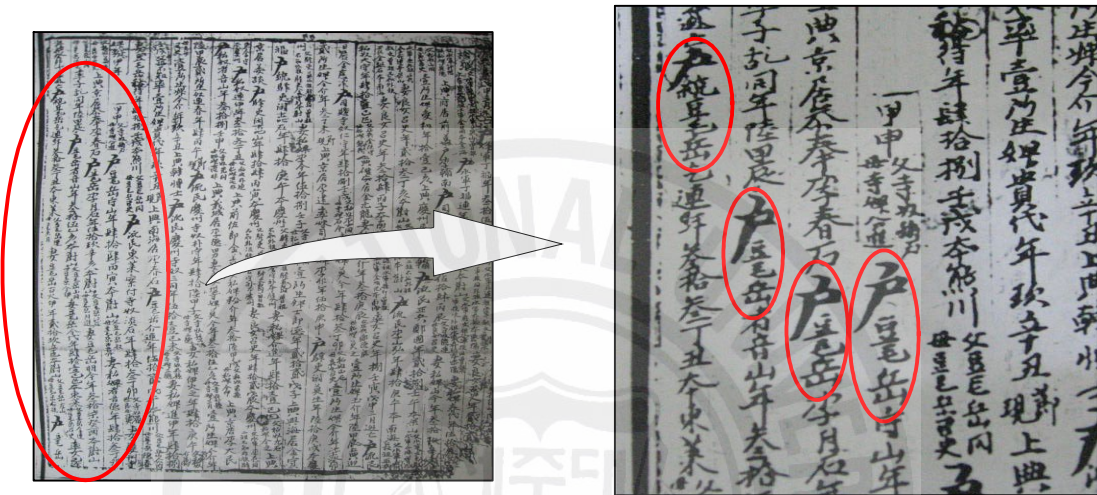
한영국의 『豆毛岳考』에서는 현존하는 17, 18세기의 호적대장인 『경상도 울산부 호적대장』 가운데 1609년(광해군 원년) · 1672년(현종 13) · 1684년(숙종 10) · 1705년(숙종 31) · 1708(숙종 34)년도 5式年分 5冊에 나타나는 두모악(豆毛岳)의 실체를 파악해 놓고 있다.

73) 『성종실록』 권161, 성종 14년 12월 6일 을축조, 「“鮑作人等自濟州而來, 散處全羅, 慶尙兩道海曲, 潛行剽竊, 其漸可慮. 但時無顯然罪狀, 治罪爲難. 且雖欲刷還本土, 必不安業. 請令所在官守令, 萬戶, 於船隻字號著標, 入海時, 給路引, 如無路引, 或騎無標船, 而任意出入, 則論以海賊, 置之重典. 令所居邑, 每歲抄錄人口, 報觀察使轉啓, 若守令, 萬戶, 不能存撫, 致令流移, 請於殿最, 憑考施行”」

74) 『성종실록』 권226, 성종 20년 3월 15일 계유조, 「臣聞沿海來居濟州人, 守令不定役者, 令監司推鞠論罪. 臣見此人本不農業, 專以捕魚資生, 故諸邑守令, 稱爲鮑作干, 凡進上海物, 專賴此人捕採, 因而愛護之, 其人亦愛守令, 得安其生. 若遇侵責, 則移寓他官, 遷徙無定, 如此之人, 不知其幾千人也」

<그림 1>은 두모악 명칭이 호적에 처음 등장한 1609년 『경상도 울산부 호적대장』 중 일부의 기록을 표시한 것이다. 이 호적에서 두모악의 존재는 울산의 부내면(府內面) 1호수, 대대여리(大垓如里) 2호수, 온양리(溫陽里) 9호수로 총 12호수를 찾아 볼 수 있으며, 기록된 명칭 모두 ‘豆毛岳’이라 칭하고 있다.

<그림 1> 1609년 『경상도 울산부 호적대장』 中 두모악 기재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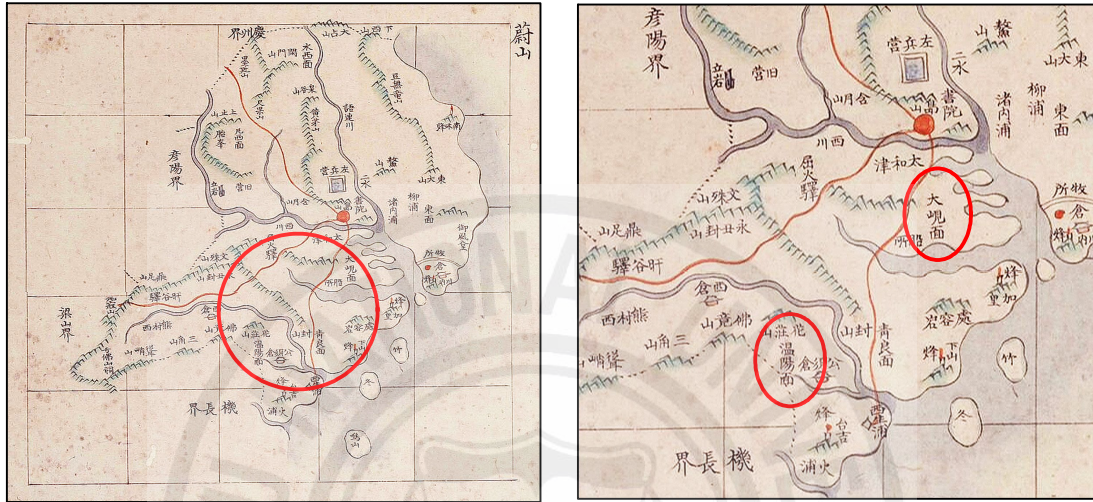


제주의 두모악들이 집주하고 있는 곳을 지도에 표시하면 <그림 2>와 같으며, 이들은 울산의 해안 마을을 중심으로 정주해 살았음을 이 지도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蔚山府 古跡條를 보면 울산은 토양이 기름지고, 수산물과 소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주민 가운데 부자가 된 집이 많다고 적고 있다.⁷⁵⁾ 이러한 기록은 제주도 유이민인 두모악들이 울산 지역으로 이거·정착해 나간 배경으로 설명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15세기 말엽 양남 연해 지역으로 출륙 정착한 포작인들은 언어와 습속 등 생활양식의 상이로 인하여 그 곳 주민들로부터 기피되었고, 또 정부로부터도 치안상 우려되어 강력한 통제를 받았다. 이러한 두모악의 상당수가 출륙 포작인(鮑作人)임을 감안할 때, 이들은 진상 해물 채납의 포작(鮑作) 역(役)을 전담하면서 본래의 남해안 주민들과 격리된 가운데 그들만의 집단부락을 형성하며 살아갔다. 이는 1609년 경남 울산 호적대장 중

75)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2,蔚山府 古跡條 古邑城 細註, 「이섬(李)의 記에 ‘울주는 옛 흥려부(興麗府)이다. … 땅이 기름지고 또한 물고기와 소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주민 가운데 앉아서 부자 된 집이 여럿이다. 이에 나라에서 쓰는 비용이 많이 나 수천에 이르렀고, 해산물을 바치는 것도 또한 적지 않았다’고 하였다.

‘두모악’이 등장하는 통호수에 집중적으로 유민(流民)과 해부(海夫)·해척(海尺)의 명칭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천인시 되어 그들 나름의 특수부락을 이룩하고 생활하여 왔다는 것을 파악하게 한다.

<그림 2> 『조선지도』 中 경상도 울산(蔚山)



다음 <표 8>은 1609년 『경상도 울산부 호적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12가구(家口) 내 두모악(豆毛岳)들의 실태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호주(戶主)를 비롯한 그의 처(妻)의 집안 대부분이 두모악으로서 폐쇄적인 통혼권을 보여주는 신분내혼 양상의 모습을 띠고 있으며, 호주의 평균나이는 47.8세, 그의 처(妻) 평균나이는 43.7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1609년 호적 대부분의 두모악호가 노비호의 호적 기재양식에 준하여 기록되어져 있었다. 12戶의 두모악호 가운데 양인 호적양식으로 기재된 것은 부내면의 호주 김삼동(金三同)과 대대여리의 호주 김분손(金粉孫), 그리고 온양리의 호주 만동(萬同) 등이며, 나머지 9戶는 모두 노비호적양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호적에 기재된 두모악 대부분이 명과 함께 姓을 기록(具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이들이 노비나 천인으로 처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가구를 제외한 호주와 처의 본관이 울산·동래·창원·웅천 등으로 기록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출신지인 제주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정착지역의 지명으로 모록(冒錄)함으로써 그들이 처한 사회적 지위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으로의 이행을 획득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사료된다.

<표 8> 1609년 『경상도 울산부 호적대장』에 나타난 두모악(豆毛岳)의 실태

地域		戶主				家族關係	妻	戶主의 四祖								妻의 四祖							
								父		祖(母)		曾祖		外祖		父		祖(母)		曾祖		外祖	
面名	里名	職役	姓名	나이	本官			本官	職役	姓名	職役	姓名	職役	姓名	職役	姓名	本官	職役	姓名	職役	姓名	職役	姓名
府內面	미상	豆毛岳	金三同	5□	울산	妻: 豆毛岳 眞令(53세) 率女: 眞德	울산	豆毛岳	古音同	豆毛岳	□伊	不知	豆毛岳	金通金	울산	豆毛岳	古音孫	豆毛岳	南孫	不知	豆毛岳	金通金	울산
南面	大袋如里	豆毛岳	甘失	58	울산	妻: 良女 同令(34세) 率子: 慕乃(10세)	無	豆毛岳	汗石	無	介孫	無	介同	不知		豆毛岳	莫同	豆毛岳	莫石	不知	不知		
		豆毛岳	金粉孫	46	울산	妻: 豆毛岳 內隱德(47세) 所生男: 粉介(23세)	無	豆毛岳	左山	無	進石	不知	豆毛岳	□金	無	豆毛岳	內隱同	無	彦孫	無	豆毛岳	金豆之	無
	溫陽里	豆毛岳	介連	52	웅천	妻: 豆毛岳 □□(48세)	웅천	豆毛岳	命同	※76) 豆毛岳	德春					豆毛岳	同	※豆毛岳	召史				
		豆毛岳	守山	44	울산	妻: 私婢 者音德(43세) 上典: 京居□奉 李春石	無	豆毛岳	叔	※豆毛岳	□□分					私奴	萬連	※良女	召史				
		豆毛岳	李月石	59	울산	妻: 豆毛岳 明令(37세) 率子: 亂同(6세)	울산	豆毛岳	汗石	※豆毛岳	月進					豆毛岳	山同	※豆毛岳	淡之				
		豆毛岳	者音山	35	울산	妻: 豆毛岳 今代(41세) 率女: 己逢(2세)	동래	豆毛岳	山同	※豆毛岳	令伊					豆毛岳	金連	※豆毛岳	召史				
		豆毛岳	乞連	33	동래	妻: 豆毛岳 古火伊(29세)	울산	豆毛岳	運	※豆毛岳	月					豆毛岳	左山	※豆毛岳	命進				
		豆毛岳	淡介	53	울산	妻: 豆毛岳 介伊(46세) 率子: 淡金(23세)	울산	豆毛岳	洛石	※豆毛岳	元進					豆毛岳	文進	※豆毛岳	令進				
		豆毛岳	白豆伊	44	창원	妻: 豆毛岳 靑月(53세)	창원	豆毛岳	龍伊	※豆毛岳	達麻					豆毛岳	粉孫	※豆毛岳	□德				
		豆毛岳	靑山	35	울산	妻: 豆毛岳 也背(36세) 率女: 靑玲(7세)	동래	豆毛岳	鄭乙	※豆毛岳	太令					豆毛岳	朴乞	※豆毛岳	元進				
豆毛岳	萬同	65	제주	妻: 私婢 先德(57세) 上典: 義城居 李德男	無	豆毛岳	?(韃손)	豆毛岳	朴□長	不知			?	?	제주	無	先同	※私婢	□非				

※ □은 호적의 서지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판별이 불가능한 글자이고, ?은 호적이 훼손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글자이다.

76) 울산 남면 온양리의 9戶 가운데 마지막 호를 제외한 8戶는 호주의 사조(四祖)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父母의 그 직역과 名만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라 표시한 부분은 祖가 아닌 母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밝힌다. 또한 위 <표 8>은 1609년 『경상도 울산부 호적대장』을 참고로 하여 표를 작성하였다.

두 번째로, 그들이 지닌 우수한 해양사적 능력에 따라 조선정부로의 격군(格軍), 즉 수군(水軍)으로 편입된 부류(77)를 들 수 있다. 바다와 함께 동고동락(同苦同樂) 해온 제주도 포작인들은 바다가 곧 삶의 일부이며, 삶의 원천이었다. 이에 따라 어로활동을 실천하는 가운데 포작인들은 해양생물의 생태와 습성, 조류 및 해류, 풍향, 해저지형 및 선박건조술 등과 관련한 다양하고 상세한 해양 지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밖에 없었다.⁷⁸⁾ 조선정부는 이러한 고도의 해양사적 정보와 기술을 지니고 있는 포작인들을 수군(水軍)으로 편입시켜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포작인들을 수군으로 활용한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다.

(1) 이 무리들은 이미 배[舟楫]로써 생활하고 있으니, 바다를 방어하는 데 이용하면 곧 국가의 이익입니다. 소재지[所在官]의 만호(萬戶)에게 부근의 가까운 곳에 분치(分置)하도록 이미 법을 세웠으니, 그대로 본관(本官)으로 하여금 적(籍)에 올려 군사를 만들고, 수군(水軍)의 제도와 같게 하되 번들고 교대하는 것을 드물게 하며, 보인(保人)의 수(數)를 넉넉하게 하고, 만약에 묵은 땅과 주인(主人)이 없는 전지(田地)는 점차로 절급(折給)해서, 이들로 하여금 힘써 농사짓게 하고, 혹은 해물(海物)도 채취하게 하여 살아나가게 하면, 만일 변방(邊方)에 위급한 일이 있으면 이 무리들이 가장 수상(水上)에서 쓸 만한 군사가 될 것입니다.⁷⁹⁾

(2) “제주(濟州)의 포작간(鮑作干)들이 남도(南道) 연해변에 와서 살며 없는 물건들을 가져다가 팔고 사고하여 돌아가는데, 제주 목사 이운(李耘)의 계청(啓請)에 따라 감독하여 쇄환(刷還)하도록 하자 중도에서 도망했었습니다. [곧 김유월(金六月) 등이다] 이번엔 또 70여 명을 쇄환하다가 제주의 길이 막혀 현재 들여보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종인(李宗仁)에게 물어보니 ‘포작간들은 수전(水戰)을 하기가 어렵

77) 충무공 이순신 유고 전집인 『이충무공전서』의 당포대첩·한산도대첩·부산포대첩에 대한 장계의 내용에 사졸로서 화살이나 철환을 맞아 전사하거나 혹은 부상당한 사람을 열거하면서 보자기(鮑作人)의 이름 등도 기재해 놓고 있다. 이를 통해 포작인이 광범위하게 수군조직의 하부구조를 이루고 있었으며, 또한 임진왜란시 이순신이 전라좌수영에서 46척에 달하는 포작선을 동원하였다는 기록에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 권2).

78) 아키미치 토모야 지음/이선에 옮김, 『해양 인류학』(민속원, 2005), 372쪽.

79) 『성종실록』 권178, 성종 16년 윤4월 19일 기해조, 「但此輩既以舟楫爲生, 用以防海, 乃國家之利也. 所在官萬戶傍近處分置, 既已立法. 仍令本官着籍爲兵, 如水軍之制而疎其番遞, 優其保數, 如陳荒無主之田, 漸次折給, 使之或力農或採海, 以資其生, 則萬一邊上有警, 此輩最爲水上可用之兵也」

지 않다.’ 하니, 바라건대 포작간 70명을 도로 머물러 두어 수전 때의 사용에 대비 하되, 이 뒤부터는 연한(年限)을 정하여 쇠환하게 함이 어떠하리까?”⁸⁰⁾

(3) 제주의 세 고을은 주민들이 날로 유망(流亡)하여 고을이 거의 빌 지경에 이르렀기에 경관(京官)을 파견하여 육지로 이주해 온 자들을 일체 쇠환하여 모두 원적(原籍)에 환원시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도 수군절도사 유흥(柳泓)이, 수영(水營)에 소속되어 배를 부리는 데 능숙한 포작한들은 일정한 숫자를 머물게 하여야 한다고 청해왔으므로 그대로 머물게 하고 수영에서 부리게 하였습니다.⁸¹⁾

(4) 각 포(浦)에 있는 대맹선(大猛船)⁸²⁾은 바닷이 무거워서 역풍(逆風)을 만나면 가지를 못하니 왜적을 만날지라도 잡을 이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포작선(鮑作船)은 가볍고 빨라서 비록 역풍을 만날지라도 노만 저으면 갈 수 있으며, 대맹선 한 척을 만들 재목이면 작은 배 3, 4척을 만들 수 있습니다.⁸³⁾

위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사료 (1)과 (2), (3)에서는 왜적에 대한 방비를 논의하면서 남도(南道) 연해변에 살고 있는 출륙 포작인(鮑作人)들을 수전(水戰)에 활용하고자 그들을 쇠환하는 법을 정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배를 다루는데 능숙한 그들을 제주로 환원시키기 보다는 그 곳에 머물게 하여 수군으로 편입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료 (4)를 보면 순변사(巡邊使) 이계동(李季叟)이 질둔(質鈍)한 대맹선에 비해 가볍고 빠른 포작선(鮑作船)의 효용성에 주목하면서 포작인들의 배를 병선(兵船)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함을 살필 수가 있다.⁸⁴⁾

80) 『중종실록』 권45, 중종 17년 6월 26일 신축조, 「“濟州鮑作干, 來居南道沿邊, 質遷有無而生活. 以濟州牧使李耘之啓請, 督令刷還, 中途而逃. [卽金六月等也] 今又七十餘名刷還, 而以濟州路塞, 時未入送耳. 問於李宗仁則非鮑作干, 難以水戰. 請鮑作干七十名還留, 以備水戰之用. 自今以後, 限年刷還何如”」

81) 『중종실록』 권92, 중종 35년 1월 10일 계묘조, 「濟州三邑, 居民日就流亡, 幾至空虛, 故爲遣京官, 陸地移居者, 一切搜刷, 悉還原籍. 而因右道 水使柳泓啓請, 營屬操舟慣熟鮑作漢等, 量數許留, 使仍營役」

82) 대맹선(大猛船) : 조선시대에, 수영(水營)에 속한 큰 전투선으로 3층 구조로 이루어졌으며, 사면에 창이 나 있는 배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상 : 대맹선조, 두산동아, 1999, 1466쪽).

83) 『연산군일기』 권26, 연산군 3년 8월 17일 병술조, 「各浦大猛船質重, 遇逆風不得行, 雖遇倭賊萬無捕獲之理. 鮑作船輕疾, 雖遇逆風, 若能搖櫓則可行, 以大猛船一隻之材, 可作小船三四」

84) 이 당시 제주지역 포작선(鮑作船)은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만들어진 ‘덕판배’일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배’라 불리는 ‘덕판배’는 제주도 포구의 환경 조건상 그 규모가 작고, 제주섬에 발달한 암석해안을 고려하여 뱃머리에 통나무를 가로로 덧붙여 충돌시 배가 부서지지 않도록 제조되었다. 이러한 덕판배의 기동성(機動性) 및 내파성(耐波性) 등의 우수성으로 인해 조선정부는 덕판배를 병선으로 활용하고자하며, 이 같은 내용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포작인(鮑作人)들이 지닌 고도의 해양사적인 능력은 중앙정부로부터 경제적으로 해산물 진상 담당자로서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인 군사 방어책으로도 이용되었다. 이로써 출륙 포작인들은 해당 지역의 수군에 편입되어 그들의 바다와 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줌에 따라 빈번한 왜구침입에 따른 방어 대책에 고심하던 조선정부의 군사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존재로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세 번째로, 조선정부가 출륙 포작인에게 취한 정책 속에서 수적(水賊)이나 왜구(倭寇)로 편입되어 나가는 부류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1) 신이 전일(前日)에 연해(沿海)의 여러 고을을 두루 살펴보니, 포작간(鮑作干)이 해변(海邊)에 장막(幕)을 치고 일정한 거처(居處)가 없이 선상(船上)에 기생(寄生)하고 있는데, 사람됨이 날래고 사나우며 그 배가 가볍고 빠르기가 비할 데 없어서, 비록 폭풍과 사나운 파도라 하여도 조금도 두려워하고 꺼려함이 없으며, 왜적이 이를 만나도 도리어 두려워하고 피해서 달아납니다. 신이 그 배 가운데를 보니 큰 돌[石]이 수십 개 있으므로 신이 쓸 데를 물어보았는데 대답하기를, ‘왜선(倭船)을 만났을 때 이 돌을 사용하여 던져서 치면 부서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신이 또 듣건대, 포작인이 이따금 상선(商船)을 겁탈(劫奪)하고 사람과 재물을 약탈하며 살해하는데, 간혹 사람이 쫓아가는 바가 있으면 왜인의 신발[倭鞋]을 버리고 가서 마치 왜인이 그런 것처럼 한다 합니다.⁸⁵⁾

(2) 제주(濟州)의 포작인(鮑作人)으로 전라(全羅) 연변(沿邊)의 여러 고을에 흩어져 산자들이 자못 많은데, 이 무리들은 왕래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이전에 해적(海賊)을 만나는 일이 있으면, 본도(本道)의 사람들이 모두 이 무리들을 의심하였습니다.⁸⁶⁾

(3) “지금 형조의 공사(公事)를 보건대, 제주(濟州)의 포작인(鮑作人)들의 일은 지

85) 『성종실록』 권177, 성종 16년 4월 12일 계해조, 「“臣前日歷觀沿海諸邑, 鮑作干結幕海邊, 無定居, 寄生船上, 爲人勇悍, 其船輕疾無比, 雖暴風虐浪, 略無畏忌. 倭賊遇之, 反畏避而去. 臣見其船中有大石數十, 臣問所用, 答云: ‘遇倭船, 用此石投擊, 則無不破碎’ … 臣又聞鮑作人往往劫奪商船, 掠殺人物, 或爲人所逐, 則遺棄倭鞋而去, 似若倭人然. 此則鮑作干亦且有害. 請令沿海諸邑, 隨其所在, 曲加撫馭”」

86) 『성종실록』 권246, 성종 21년 10월 24일 임신조, 「濟州鮑作人, 散接全羅沿邊諸邑者頗多, 此輩彼此往來無定, 前此遇有海賊, 本道人, 皆疑此輩」

극히 염려스럽다.” [제주 포작인 김유월(金六月) 등 남녀 74명이 전라도 흥덕(興德) 지방에 이사하여 살면서 본토로 쇄환(刷還)되는 것을 싫어하여, 압송(押送)하는 색리(色吏)를 공갈하며 배반하였다] 하매, 자건이 아뢰기를, 추자도 근처에 도서(島嶼)가 많은데 포작인들이 모여 해적 노릇을 하니 찾아서 쇄환하고 수색하여 토벌함이 어떠하리까?”⁸⁷⁾

위의 사료 (1)은 제주도 출륙 포작인의 또 다른 성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에는 포작선(鮑作船)의 뛰어난 성능과 더불어 왜적도 도망갈 정도로 그들의 강한 전술력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또한 포작인들이 약탈 이후 왜인의 신발을 남겨둠으로써 그들의 행적을 숨기려 하였다는 점에서 출륙 포작인들의 수적(水賊)행위를 짐작할 수가 있다. 이에 다카하시는 이들이 습격한 배로부터 도망갈 때 왜인의 이물(履物)을 두고 간 것은 전술의 묘안이 아니라, 왜복(倭服)·왜어(倭語)와 함께 왜인과의 교류를 얘기해 주는 사실로서 해석하고 있다. 사료 (2)는 연변 사람들이 해적을 만나면 제주 포작인(鮑作人)의 무리인지를 의심한다는 내용에서 실제 이들이 약탈을 행했다는 근거로 제시될 수 있겠으며, 사료 (3)에서는 출륙 포작인들이 해적(海賊) 행위를 함에 따라 이들을 쇄환조치하기에 이르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출륙 포작인(鮑作人)들의 모습은 그들이 조선정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면서 수적(水賊)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출륙 포작인들의 수적행위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진 출륙 포작인들이 수적(水賊)으로 변화된 모습은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바라보는 시각에 한정됨에 따라 그들의 구체적인 수적 행위의 실상을 담고 있지 않은 편향된 평가의 오류를 내포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아직 수적(水賊)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가 선행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불리 제주도 출륙 포작인(鮑作人)을 수적(水賊)으로의 부정적인 평가를 내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평가는 그들을 자칫 해양사적 의미로의 개척자가 아닌 약탈자로서의 퇴보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에 따라 양자 간 해석에 관하여는 수적에 대

87) 『중종실록』 권44, 중종 17년 5월 28일 계유조, “今見刑曹公事, 濟州鮑作人等事, 至爲可慮.” [濟州鮑作人金六月等男女七十四名, 移居全羅道興德地面, 而厭其刷還本土, 恐喝押去色吏而叛] 自堅曰: “楸子島近處多島嶼, 鮑作人等聚爲水賊, 推刷搜討何如”]

한 개념이 정립된 이후인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지금까지 출륙 포작인의 실태를 세 부류의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즉, 사회·경제적 어려움과 차별 속에서 출륙을 감행한 그들은 주로 전라도·경상도 해안에 정착하여 포작(鮑作) 역을 지니며 살아가거나, 또는 그들의 탁월한 해양 사적 능력을 인정받아 수군으로 편입된 부류로 구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조선 정부가 그들에게 취한 정책에 의거하지 못하였거나 이를 기피하여 유랑하면서 수적이나 왜구에 유착되어 갖가지 사회문제를 야기 시켜 나가는 부류로 나뉘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선정부는 기존의 생활영역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출륙 포작인들에 대해 주목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대책을 마련하게 되는 필요성을 경각시켜 주었다.

3. 조선정부의 출륙 포작인에 대한 대책

제주도 포작인(鮑作人)들이 처한 가혹한 사회·경제적 상황은 그들로 하여금 도외로 출륙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제주도 포작인들의 집단적인 유망 도산의 증가는 당시 조선정부에 큰 물의를 일으킬 정도로 큰 위기감으로 다가왔으며, 이에 대한 긴급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조선정부가 출륙 포작인들에게 어떠한 대책을 취하였는지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1) 출륙 포작인의 수적화에 대한 대책

육지로 유망한 출륙 포작인 수의 증대는 당시 왜구(倭寇)와의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던 조선정부에게 있어 크게 주목받지 못함에 따라, 형식적으로 쇄환 조치 하는데 그치게 되었다. 하지만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출륙한 이들을 아무런 생활 개선의 보장도 없이 쇄환한다는 것은 출륙 포작인으로 하여금 수적(水賊)과 표리(表裏)를 이루게 하고, 더 나아가 왜구에 편승하여 해적으로 작적(作賊)하는 결과

를 초래하는데 지나지 않은 것이었다.⁸⁸⁾ 이에 조선정부는 유망하는 포작인들에 대해 ‘방지대책’과 ‘쇄환정책’을 시행하였다.

초기 조선정부는 이들 출륙 포작인들에 대해 강경한 쇄환 정책으로 일관하였지만, 점차 남해안에 정착한 포작인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자 강경한 방침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입장 변경은 이들이 왜적과 더불어 수적(水賊)으로 편입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위기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고육책이었다.⁸⁹⁾ 따라서 정부는 출륙 포작인들이 정착한 해당 수령들로 하여금 그들을 감시하면서 일정한 지역 내에 안주토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기록은 『성종실록』 성종 16년 윤 4월 11일 신묘조 기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저들이 과연 도적[草竊]질하는 폐단이 있기는 하나, 한결같이 평민으로 다스릴 수 없다. 비록 본토로 돌려보내게 하더라도 반드시 즐겨 좇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망과 틈이 생길 것이다. 저들이 유이(流移)하는 것은 제주(濟州)의 수령(守令)들이 <저들을> 어루만져 방지하는 것이 방도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그것을 수령들에게 일러서 다시 무자(撫字)를 가하여 나오지 못하게 하라.”⁹⁰⁾

위의 성종(成宗)의 하교(下敎)는 출륙 포작인들이 수적 또는 해적으로의 편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회유책으로의 변화를 엿볼 수가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선정부의 그들에 대한 유연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출륙 포작인 숫자가 줄어들지 않음에 따라 남아있는 제주도민은 출륙한 포작인들의 몫까지 떠맡게 되면서 과중된 공부(貢賦)의 부담에 시달려야만 하였다. 이는 포작인들의 출륙을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에 따라 조선정부는 남해안의 각 군현에서 관내의 출륙 포작인들을 낱낱이 조사, 등록하고 이들에게 국역을 부과함으로써 그 주거와 생활을 강력히 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⁹¹⁾

88) 한영국, 「『豆毛岳』考」 『한우근박사 정년기념사학논총』(지식산업사, 1981), 812쪽.

89) 박찬식, 「제주해녀의 역사적 고찰」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민속원, 2006), 114~115쪽.

90) 『성종실록』 권178, 성종 16년 윤4월 11일 신묘조, 「上曰: “彼等果有草竊之弊, 然不可一以齊民治之. 雖令還本, 必不樂從, 反生怨隙. 彼人之流移, 由濟州守令撫御乖方耳. 其諭守令, 更加撫字, 俾勿出來”」

91) 박찬식, 「출륙금지령과 제주도민」 『월간관광제주』 9-10월호(월간관광제주사, 1989).

(1) 경차관(敬差官) 이의(李誼)가 충청도에 돌아와 서계(書啓)하기를, … 신이 듣건대 바다 연변에 와서 사는 제주(濟州) 사람에게 수령이 역(役)을 정하지 아니한 자를 이제 감사(監司)로 하여금 추국(推鞠)하여 죄를 논하게 하였다고 하는데, 신이 이 사람을 보니 본래 농업은 아니하고 오로지 고기를 잡아 생활하기 때문에 여러 고을 수령이 복작간(鰕作干)이라고 일컫고 모든 진상(進上)하는 해물(海物)은 오로지 이 사람을 의뢰하여 채포(採捕)함으로 인하여 사랑해 보호하고 그 사람도 수령이 그를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좋아하는데, 만약 침책(侵責)을 당하면 다른 고을로 옮겨서 정처 없이 옮기는 것이 예사입니다. … 이 같은 사람이 몇 천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데, 하루아침에 상부(常賦)의 역을 정하면 역을 피해 도망쳐 흩어져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수적과 더불어 서로 안팎이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청컨대 을사년의 하서(下書)⁹²⁾에 의하여 녹안(錄案)하여 수(數)만 알고 역은 정하지 말아서 시끄럽지 않도록 하며, 항상 무휼(撫恤)을 더하여 그 생활을 편안하게 하소서.⁹³⁾

(2) 연해(沿海)의 여러 고을과 제주(濟州) 사람들을 정역(定役)한 일은 만약 포작간(鮑作干)을 삼아 해물(海物)을 채취하여 진상(進上)에 이바지하는 것도 신역(身役)이니, 마땅히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을에서 추쇄(推刷)하여 녹안(錄案)하고, 평소 무휼(撫恤)하여 그들이 생업(生業)에 안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 이익을 보고 살기를 꾀하여 다른 고을로 옮겨 가는 자를 만약 금하지 아니하여 거주하거나 옮겨가기를 제멋대로 하여 이로 인해 수적(水賊)이 된다면 그 폐단을 장차 금하기 어려울 것이니, 청컨대 지금부터는 엄하게 방금(防禁)을 더하여 제멋대로 옮겨 다니지 못하게 하고, 만일 도피했다가 발견되는 자는 녹안되어 있는 곳으로 쇄환하되, 수령으로서 잘 무마하고 통어(通御)하지 못하여 이주하도록 한 자는 그 죄의 경중(輕重)에 따라 과죄(科罪)하소서.⁹⁴⁾

92) 『성종실록』 권178, 성종 16년 윤 4월 19일 기해조.

93) 『성종실록』 권226, 성종 20년 3월 15일 계유조, 「臣聞沿海來居濟州人, 守令不定役者, 令監司推鞠論罪. 臣見此人本不農業, 專以捕魚資生, 故諸邑守令, 稱爲鰕作干, 凡進上海物, 專賴此人捕採, 因而愛護之, 其人亦愛守令, 得安其生. 若遇侵責, 則移寓他官, 遷徙無定, 常態也, … 如此之人, 不知其幾千人也, 而一朝定爲常賦之役, 則避役逃散, 彼此流移, 與水賊相爲表裏, 深可畏也. 請依乙巳年下書, 錄案知數, 勿定役, 勿騷擾, 常加撫恤, 以安其生」

94) 『성종실록』 권227, 성종 20년 4월 21일 기유조, 「沿海諸邑濟州人定役事, 則若定爲鮑作干, 採捕海物, 以供進上, 亦是身役, 當於所居邑推刷錄案, 常加撫恤, 使得安業可也. 然其見利謀生, 移去他邑者, 若不禁防, 則去留自恣, 因爲水賊, 弊將難禁. 請自今嚴加防禁, 勿令擅移. 如有逃避後現者, 當於錄案處刷還. 其守令不能撫禦, 致令移徙者, 分輕重科罪」

이와 같이 사료 (1)에서 경차관 이의(李誼)는 출륙 포작인들에게 역을 정하게 하는 조치는 이미 해당 군현에서 진상 해물을 전담하고 있는 까닭으로 도리어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⁹⁵⁾ 녹안(錄案)하여 그 수(數)만 알고 역은 정하지 말 것을 건의하고 있다. 이후 한 달여 뒤인 성종 16년(1458년) 4월 21일 기사인 사료 (2)에서 조선정부는 포작인에 대한 그 첫 번째 조치로 이의(李誼)의 건의를 수렴하여 정역(定役)의 부과를 폐지하고,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추쇄하여 녹안(錄案)하게 하였으며 무휼하여 생업에 안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수적(水賊)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하게 방금하여 이동에 제한을 둠과 동시에 만일 도피했다가 발견되는 자가 있으면 녹안되어 있는 곳으로 쇄환하고, 그 담당 관리에게 그 죄를 묻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하게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포작인들의 출륙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 아닌, 그들의 수적(水賊)에 편입하게 됨으로써 수반되어지는 치안상의 혼란과 위기감에서의 임기응변적 조치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은 임시적이나마 그들의 수적화(水賊化)에 대한 통제책으로 작용되었고, 전라도·경상도의 치안을 도모하는 형식에 치중하여 시행되어 나갔다.

결국 포작인들의 출륙하게 되는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배경인 경제적 개선책을 무시한 채 이루어 졌던 조선정부의 이 같은 대처방안은 출륙 포작인과 수적의 발생을 감소시키지 못하고 더욱 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성종 21년 10월 24일 임신조에 제주도 진상선이 해적에게 침탈되는 사건⁹⁶⁾이 일어나자 전라도 연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출륙 포작인들의 녹안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의 출입을 허가제로 하는 방안과 지금까지 등록되지 아니한 신래(新來)의 포작인(鮑作人)에 대해서는 모두 원주지로 쇄환할 것을 검토하게 되었다.⁹⁷⁾ 이 같은 조선정부의 출륙 포작인에 대한 강력한 쇄환의 조치는 이원진의 『탐라지(耽羅志)』 노비조(奴婢條)에 아래와 같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95) 한영국, 「'豆毛岳'考」 『한우근박사 정년기념사학논총』(지식산업사, 1981), 813쪽.

96) 「“濟州人, 齎奉進上方物出來者, 爲倭賊所奪, 賊變寢息間, 請抄軍護涉”」 “제주 사람으로 진상(進上)할 방물(方物)을 가지고 오던 자가 왜적(倭賊)에게 빼앗겼으니, 적변(賊變)이 그칠 동안은 군사를 뽑아서 호위(護衛)하여 바다를 건너게 하소서.”

97) 한영국, 「'豆毛岳'考」 『한우근박사 정년기념사학논총』(지식산업사, 1981), 814쪽.

본도의 백성은 생리(生理)가 매우 고통스러운데다가 남정(男丁)의 역(役)이 몹시 무거운 까닭에 삼읍(三邑) 사람으로 육지에 나아가 돌아오지 않은 자가 매우 많다. 바다를 건너 도망한 자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사는데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며, 무리를 지어 하나의 촌락을 이루고 사는 경우도 있다. 아들을 낳고 손자를 키울 정도로 세월이 이미 오래이니 쇠환의 법이 비록 엄하다 해도 말은바 관원이 능히 봉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제 이경구(李慶口)의 장계에 따라 우선 도망한 지 10년이 안 되는 자들을 쇠환하고자 했지만, 흉년(凶年)으로 인하여 다시 물고 말았다.⁹⁸⁾

이처럼 출륙 포작인들은 수시로 그들의 본거지인 제주도로 쇠환되어 왔으나, 이는 새로이 육지로 도망쳐온 신래자(新來者)들에 한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아래 김상헌(金尙憲)의 『남사록(南槎錄)』의 기록에서는 포작인들의 불법적인 출륙을 막기 위해 제주 도내의 조천(朝天), 별도(別刀) 두 포구만을 한정시켜 개항하도록 했으며, 출항시 출선기(出船記)의 항목을 꼼꼼히 대조하며 점검하는 등의 통제책을 전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을묘⁹⁹⁾ 이후로부터는 사선(私船)이 임의로 출입하였으므로 도중(島中)의 피역(避役)하는 사람이 이따금 배를 타고 육지로 달아났다. 그 때문에 다만 조천(朝天), 별도(別刀) 두 포구에 대하여서만 배를 놓기를 허가하고, 배를 놓는 날에는 목사 와 군관 1인이 문부(文溥)를 잡아 대조하고 점검하여 이것을 출선기(出船記)라고 하였으며, 비록 1인 1마라 할지라도 감히 숨기지 못하게 하고, 나쁜 일을 막는 법이 상세하지 않은 것이 없게 되었다.¹⁰⁰⁾

그러나 포작인의 출륙에 따른 선박출입을 엄격히 조사한 후에 ‘도항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불법적으로 출륙한 포작인들을 잡아 쇠환시키는 등의 강력하고도 적극적인 조선정부의 이 같은 통제책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망하는 포작인의 수를 줄이지 못하였다. 이러한 조선정부의 출륙 포작인에 대한 대책은 그들이 출륙하

98) 이원진(李元鎭), 『탐라지(耽羅志)』 노비조(奴婢條).

99) 1579년(선조 12).

100) 김상헌(金尙憲), 『남사록(南槎錄)』 권3, 10월 12일.

게 되는 근본적인 요인을 망각한 채 출륙이라는 현상 그 자체만을 줄이기 위한 근시안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포작인들의 출륙은 어찌 보면 중앙정부의 모순에 의해 파생된 순리적인 결과라 생각되어 진다.

2) 출륙금지령 공포

조선정부의 유망 제주도민과 출륙 포작인에 대한 강경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16세기 말엽 제주도의 인구수는 반으로 줄어들 정도로 급격히 줄어들어 갔으며 이에 조선정부는 그들의 출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하였다.

이에 조선정부는 인조 7년(1629)¹⁰¹⁾ 비변사의 건의한 바대로 제주도에 대해 ‘출륙금지령(出陸禁止令)’의 하교를 내렸다. 이러한 조치는 포작인들이 가족을 거느리고 떠돌이 해상활동을 하는 까닭을 빙자하여 섬에 정착하지 않음으로 인한 조공 및 부역, 그리고 군복무 할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 궁여지책으로 섬을 봉쇄한 데서 연유하였다고 파악되어 진다.¹⁰²⁾

(1) 포작(浦作)의 역(役)은 전에 비하여 더욱 괴로워졌다. 본주(本州)의 공안(貢案)에는 추복·조복·인복을 따로 진상하는데, 사재(司宰)가 감독하는 공물은 대중회복(大中灰復)이 아울러 1만 80여 첩, 오징어 1천 70여 첩인데 모두가 삼읍의 포작(浦作)으로부터 거두기에 힘쓴다. 기타 해채(海菜)는 수령(守令)이 헐값으로 억지로 사들여서 다시 이들에게 육지에다 내다 팔아오게 하여 곱값으로 독려하여 받아서 자기를 살찌게 하는 밑천으로 삼는다. 세월이 지나가자 잠녀(潛女)와 포작배(浦作輩)가 곳곳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 참혹하고 상심함이 이와 같았음에야. 그러나 그들 무리는 바다에서 따지 않으면 또한 살아갈 수 없으니 그 사정의 딱함이 그치지 않는다.¹⁰³⁾

101) 『인조실록』 권21, 인조 7년 8월 13일 을축조, 「濟州居民流移陸邑, 三邑軍額減縮. 備局請嚴禁島民之出入, 上從之」 제주(濟州)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유리(流離)하여 육지의 고을에 옮겨 사는 관계로 세 고을의 군액(軍額)이 감소되자, 비국이 도민(島民)의 출입을 엄금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102) 한림화, 「해양문명사 속의 제주해녀」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민속원, 2006), 61쪽.

103) 이증(李增), 『남사일록(南槎日錄)』, 숙종 5년 12월 초8일.

(2) 「해읍(海邑)에서 전복을 공납하는 것은 모두 관청에서 값을 주어서 보장하는데, 유독 제주에서는 공납하는 전복에다가 거북껍질과 오징어의 공납이 있는데도 값을 보장해 줌이 없어 너무나 괴로워하고 고르지 못하오니 그 값을 보상해 주어 고을의 손실을 덜어 주시기를 청합니다」고 하였다.¹⁰⁴⁾

사료 (1)과 (2)의 기록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조선정부가 유망자에 대한 쇄환의 노력을 늦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행정적 처우 개선이 이루어 지지 않음으로써 포작인들의 고통은 되풀이 되었다. 이런 점에서 출륙금지령은 단순히 제주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이라기보다 인구감소로 발생했던 국가 재정의 감축에 의한 우려로서 시행되어졌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출륙금지령의 반포는 오히려 더 많은 포작인들을 육지로 내몰리게 했으며, 그 결과 전복 진상역을 전담하는 포작인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조선 후기에 들어와 포작들의 역 동원으로만 정해진 전복 및 해산물의 진상 액수를 채우는데 한계로써 작용하게 되었다.¹⁰⁵⁾

3) 남아있는 포작인에 대한 대책

출륙 포작인 외에 제주도에 남아 있는 포작인에 대한 조선정부의 대책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조선정부의 포작인에 대한 진상·공물의 수량 경감을 들 수 있겠다. 위의 <표 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해산물의 진상 액수는 18세기를 전후로 해서 전 시기보다 급격히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전복 채취를 담당하던 포작인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든 데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김성구의 『남천록(南遷錄)』 8월 15일자의 기록과 이형상의 『제주민막장(濟州民瘼狀)』에 아래와 같이 서술되어 있다.

(1) 오늘은 명절이어서 일을 보지 않았다. 본 현에는 포작인(浦作人)이 겨우 10여

104) 이증(李增), 『남사일록(南槎日錄)』, 의주부윤(義州府尹) 이공(李公) 갈명(葛銘).

105) 박찬식, 「제주해녀의 역사적 고찰」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민속원, 2006), 118쪽.

명인테 매달 진상하는 수량이 매우 많기 때문에 봉진(封進)할 때마다 독촉을 심히 급하게 하고, 관가에서 징색(徵索)하는 것도 또한 많으므로 마음으로 매우 측은하게 여기었다. 이곳에 온 후로 무릇 포작인에 관계되는 부역을 없애고 수량도 감하여 내려 주었더니, 저들이 명절이라고 칭하며 약간의 포복(鮑腹)을 가지고 왔다. 또한 그 순박한 풍속을 볼 수 있다.¹⁰⁶⁾

(2)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80명이 1년간 공납하는 바는 거의 1만 여첩이 이릅니다. 만약 별양(別樣)으로 변통하지 않는다면 이런 부류의 지대(支待)를 몇 년 얻는 것도 그 또한 어려울 것입니다. ... 그만 두지 말라고 하신다면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주의 회록으로 상평청 모전비(耗田米) 3백석을 특별히 획급하여 주신다면, 3읍에서 공납하는 추복·인복·조복·오징어들을 값을 주고 사서 공납할 수 있습니다. 회전복·분곽·조곽·곽이만을 분정 하여 받도록 함으로써 조정의 진홀하는 뜻을 보여 주신다면 겨우 버티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예를 좇아 응당 내리는 물건이 아니므로 능히 관용으로 금지할 수 없어서 이어 도리어 나라 곡식으로부터 얻기를 청하는 것입니다.¹⁰⁷⁾

위의 사료 (1)은 조선 숙종 5년(1679)에서 숙종 8년(1682)의 3년간 정의현감으로 재임한 김성구가 포작인들의 고충을 측은히 여겨 그들의 전복 진상액을 감하여 준 사실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사료 (2)에서는 숙종 29년(1702) 제주목사로 재임 중에 있던 이형상이 3백여 명에 달하는 포작인의 수가 80여 명으로 줄어들어 따라서 전복과 오징어를 관에서 값을 주고 사들일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요청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결국 해산물의 수량을 반 이상으로 절감하게 하는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여진다.¹⁰⁸⁾

두 번째 포작인들이 진상의 고역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평역고(平役庫) 및 보민고(補民庫) 설치 등의 지방 재정의 운영을 들 수 있겠다.

106) 김성구(金聲久), 『남천록(南遷錄)』, 8월 15일.

107) 이형상, 『濟州民瘼狀』 / 『숙종실록』 권37, 28년 7월 12일 신유조, 「以此推之 則八十名一年所納 幾至萬有餘貼 若不別變通 此類之得支數年 其亦難矣 耳聞目見 可駭可憐 晝思夜度 無一善策 其矣等支堪與否 雖不暇論 莫重進上 終必至於闕封而後已 分義至此 惶悶何如 無已則有一焉 本島會錄常平廳耗田米三百石 特爲畫給 則三邑所納搥鮑引鮑條鮑烏賊魚 乃是給價買納 灰全鮑粉霍早霍霍耳叱分 分定捧上 以示朝家軫恤之意 則或可支吾矣 此非循例應下之物 而不能禁止於官用 乃反請得於國穀」

108) 박찬식, 「『耽羅巡歷圖』에 보이는 제주 진상의 실태」 『耽羅巡歷圖研究論叢』(담라순력도연구회, 2000), 108쪽.

(1) 영조 14년(1738), 평역청(平役廳)을 설치하고 제번한 각색군관, 각양생들로부터 받아들이는 평역미를 이들에게도 지급토록 한 조치함.¹⁰⁹⁾

(2) 정조 15년, 대정현의 포작인이 내는 지장복(地裝馘), 마두복(馬頭馘), 경주인역가복(京主人役價馘)의 가격을 미가(米價)로 환산하여 평역미로 구입함.¹¹⁰⁾

사료 (1)과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행해진 이러한 조치는 포작인들의 공물진상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었으나, 평역고 운영이 부실해짐¹¹¹⁾에 따라 이를 배려한 조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초기 평역고의 설립 목적은 군역변통, 고역처(苦役處)의 부담 경감과 더불어 관아재정 확충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매년 지출되는 내용을 보면 군역과 고역처에 관계가 된 것은 답한, 목자, 선격 뿐 이었고 그 외에는 관속(官屬)과 관노비들에 대한 급료가 대부분으로 당초 설립 목적이 어느 한 방향으로 편향되어 운영되는 폐단이 나타났다. 이에 정조 5년(1781)에 제주어사로 파견된 박천형(朴天衡)은 서계(書啓)를 통해 포호(浦戶)가 매달 관가(官家)에 진배(進排)하는 어복물(魚馘物) 중 부정한 명목과 이치에 맞지 않게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폐해를 모두 혁파하도록 하였으며, 평역고의 폐단과 포작(鮑作)을 포함한 6고역의 폐해를 논하면서 6고역에게 예하미(例下米)를 지급할 것을 건의하였다.¹¹²⁾

현종 9년(1843) 포작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게 되는데,¹¹³⁾ 이러한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원조(李源祚)의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 濟州牧 工匠條 鮑作에 대한 다음의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포작(鮑作) : 진상 주인복 및 관용 물고기·전복 모두를 포작에게 명하여 담당하게 하였다. 명한 즉, 진상 선수 예리¹¹⁴⁾는 관용으로 쓸 비품을 개인에게 사서 공급가

109) 『제주읍지』 濟州牧 均稅條/ 大靜縣 俸廩條(아세아문화사 읍지 6, 1983), 210~211쪽.

110) 『신해대정현리정절목(辛亥大靜縣釐正節目)』.

111) 『비변사등록』, 정조 2년 무술 5월 23일/ 『비변사등록』, 정조 6년 임인 1월 15일/ 『비변사등록』, 순조 11년 신미 3월 27일(제주도·제주사정립사업추진위원회, 『備邊司謄錄中 濟州記錄』, 1999).

112) 고창석, 「『자료소개』 濟州巡撫御使 朴天衡의 書啓」 『제주도사연구』제8집(제주도사연구회, 1999), 79쪽.

113) 권인혁·김동진, 「조선 후기 제주지역의 수취체제와 주민의 경제생활」 『탐라문화』제19호(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2쪽.

격으로 처리하라.¹¹⁵⁾

위의 기록에 따르면, 포작이 부담했던 어복(魚腹) 진상역을 예리처(禮吏處)가 대행하게 하고 관아용은 민간에게서 사들이게 함으로써 표면적으로 포작역은 없어진 것처럼 보여진다. 그러나 포작은 또 다른 선격(船格)으로서의 역을 지게 됨에 따라 소위 '6고역'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였다.

선격(船格) 혹은 격군(格軍)이라 불려지는 또 다른 성격의 포작의 역(役)은 목숨을 담보로 진상공물을 싣고 험한 바다를 건너야 하는 포작역 만큼이나 고된 역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격군 역을 기피하여 그 숫자는 실로 전무할 정도였으며, 이에 따라 필요한 때마다 임시로 모집해 부리고 고가를 첨급(添給)하는 양상으로인 '임시모격 첨급고가(臨時募格 添給雇價)'로 변질되었다.¹¹⁶⁾ 또한 격군을 모집할 때 진속(鎭屬)·이속들의 농간이 전개되어 나타났으며, 격군에 든 부형이 병이 들어 격역(格役)을 이행치 못할 때에는 그 역이 자제에게 칙정(勅定)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폐해도 발생되었다. 다시 말해 격군 고가로 5, 6필목을 내야지만 격군역이 면제될 수 있었고 관아에서는 이를 가지고 식년대공마 운송비용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이들 대납자 대거가 빈궁자였으므로 자식을 팔아 갚거나 그렇지 않으면 친족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었다.¹¹⁷⁾

이 문제는 헌종 12년(1846)에 이르러 진홀고 모조(耗條) 일부를 보민고에 옮기고 이를 통하여 식년대공마 격군 고가(雇價)를 지급함으로써 해결되게 되었다.¹¹⁸⁾ 이후 철종 5년(1854)에 보민고의 기능을 확대시켜 담은고(覃恩庫)와 견역고(鑄役庫)의 쌀을 보민고로 이부(移付)시켜 대정·정의현의 진상어복가(進上魚腹價)와 백랍(白蠟)·표고버섯의 진상가를 지급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¹¹⁹⁾

114) 『제주대정현하모슬리호적중초』 도광 11년(1831) 3통 3호에 직역이 선수예리인 오창제(吳昌齊: 32세)의 기록이 보이며, 6년 후인 도광 17년(1837)에 그의 직역은 서원(書員)으로 변동되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115) 이원조, 『탐라지초본』, 제주목 공장조 포작, 「進上攄引鰓及官用魚鰓皆令鮑作擔當 令則進上善手禮吏處給價備納官用私賃」

116) 권인혁, 「19世紀 前半 濟州地方의 社會經濟構造와 그 變動-哲宗朝 濟州民亂과 관련하여」, 『이원순교수학감기념사학논총』(교학사, 1986), 298쪽.

117) 『濟州牧關牒』(규장각도서 No.15125) 道光 26년 5월 28일.

118) 권인혁·김동진,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수취체제와 주민의 경제생활」, 『탐라문화』제19호(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89쪽.

119) 『탐라사례(耽羅事例)』, 보민고 조(補民庫 條).

이렇듯 조선정부는 출륙 포작인을 경감시키려는 목적 하에 제주에 남아 있는 포작인들에게 평역고와 보민고 등의 관아재정을 설치하여 평역미를 지급하고, 예리처로 하여금 포작의 진상역을 대리케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포작인들의 또 다른 역인 선격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선격이 필요한 때에 수시로 모집하여 고가(雇價)를 지급하는 형식으로서의 유동적인 조취를 취하였음을 살펴 볼 수 있다.

4. 포작인의 소멸 시기와 원인

조선후기로 들어오면서 포작인(鮑作人)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갔으며, 결국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¹²⁰⁾ 따라서 이 장에서는 제주도 포작인들이 무슨 이유에서 사라져 갔으며, 이들이 담당하였던 전복을 비롯한 각종 해산물의 진상은 누구에게로 전가되었는가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포작인들이 사라져간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원인으로 그들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폐단에 따른 유망, 즉 출륙을 들 수 있겠다. 잡역(雜役)·잡부(雜賦)에 따른 포작인들에게 주어진 고질적 병폐는 그들의 생존을 위협함에 따라 육지로의 출륙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포작인의 수는 대폭 감소되어 나간다. 이러한 상황은 정의현감 김성구(金聲久)가 제주목사 최관(崔寬)에게 읍폐(邑幣)의 상황을 논하여 보고한다는 장계에서 살필 수가 있다.

본 현의 진상하는 수량은 극히 그 범위가 넓고 많습니다. 포작한(鮑作漢)은 단지 7인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진상역(進上役)에 응함은, 그 형편이 진실로 공급하지 못할 바이옵니다. 아울러 본현은 다음과 달라서 날씨가 편온한 날이 절무(絶無)합니다. 애오라지 바람이 아니면 비가 오고, 비가 아니면 안개 날씨로, 채복(採鰓)하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까닭에 매

120) 현종 14년(1848) 3월 이후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동경대학소장본 『탐라지』의 공장조에서는 포작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나 이후 광무 6년(1902) 9월 이후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남만리의 『탐라지』 공장조에서는 포작인의 기록을 찾을 수 없으며, 그들에 대한 내용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월령(月令)을 당하여 진상할 때면 혹은 잡아 가두어 대신하기도 하고, 혹은 사람을 보내어 형틀의 채찍을 극도로 사용하지 않은 바가 아니었으나 또한 그래도 수량을 채우지 못합니다. … 또 고로(故老)의 말을 들으면 전에는 포작인의 수가 대단히 많아서 죽히 진상역(進上役)에 응할 수 있었던 까닭에 진상할 때 조금도 꺾힘이 없었는데, 경신년(1680년, 숙종 6) 이후로 거의 다 죽고 남은 사람이 많지 않으니, 위에서 분담시키는 수가 비록 할인하여 준다 하더라도 실은 앞선 보다 더한 셈이니 조판(措辦)할 형편이 만무하고, 혹은 누차의 퇴한지환(退限之患:진상 기한을 뒤로 물리게 되는 걱정)을 면할 수 없다고 합니다.¹²¹⁾

두 번째 원인으로 위에서 언급하였던 현종 9년(1843)에 포작인들이 수행하던 진상역을 예리처에서 대행하게 하고, 관아용은 사무역(私貿易)으로 충당함에 따른 포작역의 효과를 제시해 볼 수 있겠다. 그 결과 포작역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으며 이들은 또 다른 성격을 지닌 격군으로의役に 징발됨에 따라 포작이 아닌 격군으로 변화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료가 참고 된다.

(1) 수군(水軍) : 지금 숫자는 제주성 소속 152명과 보인이 각 2명, 총패(摠牌) 6명이 있다. 조천 소속 32명, 별방 소속 9명, 애월 소속 13명, 명월 소속 14명이 있다. 수군이 부족하니 전선의 격군은 포작으로써 충당하고 겹하여 치고 찌르는 훈련을 익히는 것이 마땅하다.¹²²⁾

(2) 전선(戰船)은 포작한(鮑作干)이 없으면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가(代價)를 지급하지 않으면 전장(戰場)에 나가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처자를 무휼(撫恤)할만한 가물(價物)을 넉넉히 지급할 일을 행이(行移)하여 알렸습니다. 각처의 포작한들이 격군(格軍)으로 동원된다는 영(令)을 듣고는 온갖 계책을 다하여 이를 피하려 도모하고 있습니다.¹²³⁾

121) 김성구(金聲久), 『남천록(南遷錄)』, 제주목사 최관(崔寬)에게 읍폐(邑幣)의 상황을 논하여 보고함(숙종 5년, 8월 6일).

122) 이원진(李元鎭), 『탐라지(耽羅志)』, 제주목(濟州牧) 군병조(軍兵條) 수군(水軍).

123) 『선조실록』 권121, 선조 33년 1월 4일 기유조, 「戰船無鮑作, 則不得制船, 鮑作不給價, 則不肯赴戰, 故妻子撫恤價物優給之意, 行移知委, 而各處鮑作等, 聞格軍之令, 百計謀避」

위의 이원진의 『탐라지(耽羅志)』 군병조(軍兵條) 수군(水軍)에 대한 기록과 『선조실록』의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포작인들은 격군역으로 징발되어 충당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선조실록』에서 ‘포작인 없이는 전선(戰船)을 운행할 수 없다’는 기록에서 조선정부가 배를 다루는 그들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이 잘 드러나 있다. 또한 포작인이 격군으로 징발됨에 있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벗어나려는 모습에서 포작역과 마찬가지로 격군(格軍)역의 고충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추정해 볼 수 있다.

포작인들이 소멸해 간 그 세 번째 요인으로 조선후기로의 성리학적 질서에 입각한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강화를 들 수 있겠다. 비록 제주도가 절해고도의 섬이긴 하나 가부장적인 이념적 사고방식과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유교적 윤리관이 전해들어오지 않을 리가 만무하였으며, 이에 농사나 장사보다 포작(鮑作) 역(役)인 물질은 더욱 천한 직역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남성인 포작인들은 점차 그 일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추정되어지며,¹²⁴⁾ 이러한 조선후기 포작인들의 급격한 감소로 말미암아 그들이 담당하였던 포작(鮑作)의 역은 여성인 잠녀(潛女)에 의해 행해지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끝으로 이들 포작인들의 재생산이 불가능 하였던 점을 들 수 있다. 제주도는 남자의 역이 몹시 무거운 까닭에 삼읍(三邑)사람으로 육지에 나아가 돌아오지 않는 자가 매우 많으며,¹²⁵⁾ 바다에 나갔다가 배가 침몰하여 돌아오지 아니하는 사람이 1년이면 백여 명을 밀돌지 않은 까닭에 여자가 많고 남자가 적었다고 한다.¹²⁶⁾ 이러한 ‘남소여다(男小女多)’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포작인들은 처첩을 거느리지 못하고 홀아비로 살다가 죽는 사람이 비일비재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김상헌의 『남사록』에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져 있다.

제주 풍속은 많이 처첩(妻妾)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포작배(浦作輩)는 홀아비로

124) 한림화는 제주도 포작인들이 사라진 이유를 고려시대부터 조선조 내내 주로 정치범의 수형지로 제주섬이 이용되는 데서 비롯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범은 대개가 왕족과 양반계층의 인물들이었는데, 이들은 유형지에서도 일하지 않고 권위롭게 살았다. 이러한 모습을 접하면서 제주의 남성들은 ‘글 읽는 일’을 선호하게 되었으며, 이에 상일에서 손을 놔버렸을 것으로도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한림화, 「역사로 보는 제주해녀」,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미』, 민속원, 2006, 56~57쪽).

125) 이원진(李元鎭), 『탐라지(耽羅志)』, 노비조(奴婢條).

126) 임제(林悌), 『남명소승(南溟小乘)』, 선조 11년 2월 16일.

살다가 늙어 죽는 자가 많이 있다. 그 까닭을 물어보니 본주(本州)에서 진상하는 전복의 수량이 매우 많고 관리들의 공(公)을 빙자하여 사육을 채우는 것이 또 그 몇 곱이 되므로 포작배는 그 일에 견디지 못하여 도망하고 익사하여서 열에 둘 셋만 남게 되나 징렴 공응(供應)은 전보다 줄지 아니하니 이 때문에 그 몸은 오래 바다에 있고 그 아내는 오래 옥 속에 있어 원한을 품고 고통을 견디는 모양은 말로 다 이룰 수 없다. 이런 때문에 이웃에 사는 홀어미가 있다 하더라도 차라리 빌어먹다가 스스로 죽을지언정 포작인(浦作人)의 아내가 되려고 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¹²⁷⁾

이렇듯 포작인들에게 주어진 사회·경제적 상황은 여성들조차도 기피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제주도의 남소여다(男小女多) 사회로서 형성되어진 보편적인 처첩(妻妾)제도의 범주 안¹²⁸⁾에 그들 포작인은 제외 대상이었다는 것이 기록을 통해 이해해 볼 수 있다.

현재 구전(口傳)되어 오는 제주도 속담에 “보재기 삼, 사대민 초상을 물에 녹인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어부(;포작인)로 삼, 사대를 내려오다 보면 바다에 나가 돌아오지 못하는 이도 생겨난다는 뜻을 지닌 속담으로서,¹²⁹⁾ 생계를 위해 바다에 몸을 실었던 이들 포작인의 고충과 희생을 묘사하고 있음과 동시에 그들의 재생산의 불가능은 이러한 결과로 인해 빚어진 것임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포작인의 명칭과 그들 존재가 문헌상에 사라져간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답을 구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포작인들은 조선왕조 초기 이래 강력한 중앙집권화 정책에 맞물려 과중하게 부과되었던 공물·진상과 갖가지 부역, 그리고 이들이 출륙을 막기 위해 시행되었던 정책들로 인하여 더 이상 포작인으로서의 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음을 기록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127) 김상헌(金尙憲), 『남사록(南槎錄)』, 9월 22일 병자조.

128) 김상헌(金尙憲), 『남사록(南槎錄)』, 9월 22일 병자조, 「地誌生女爲重 貢獻商船 前後 海路險隔 屢致漂沒 故州人以生女爲重 女數三倍於男 雖行乞者并畜妻妾 南溟小乘亦云 雖殘疾男子 娶婦多至八九人矣」 지지(地誌)에 의하면 딸 낳기를 중히 여긴다. 진상 상선이 전후(前後)하여 이어지고 바닷길은 험하여 자주 표몰을 당하기 때문에 섬사람은 딸 낳기를 중히 여기며 **여자 수가 남자의 세곱이나 되어 거지라 할지라도 다 처첩을 가지게 된다.** 남명소승에서도 역시 말하기를 **비록 병이 있는 남자일지라도 부인을 취하는데 많게는 팔구(八九)인에 이른다**고 하였다.

129) 문금숙, 「제주속담에 나타난 제주인들의 생활상」, 『돌과 바람의 역사』(제주역사연구회, 1993), 121쪽.

이에 포작인들이 점차 소멸되어 감에 따라 기존 그들에게 주어졌던 역의 부담은 결국 그들과 유사한 환경적·사회적 처지에 놓여 있던 잠녀(潛女)들의 몫으로 전가되어졌다. 따라서 남녀성별 구분에 의한 포작인(鮑作人)과 잠녀(潛女)의 명칭은 조선후기로 들어오면서 그 구분이 모호해짐에 따라 ‘포작(鮑作)’이 잠녀(潛女)의 의미로도 사용되어 졌을 것으로 보여진다. 위와 같은 내용은 조선후기로부터 오대까지 구전되어온 한경면 옹포리 송씨(宋氏)해녀의 ‘鮑作嘆’이라는 한시(漢詩)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포작탄(鮑作嘆)

소학잠영험부사(少學潛泳驗浮槎)	어려서부터 자맥질과 떼배 띄움을 익혀
이팔귀우격군가(二八歸于格軍家)	열여섯 되던 해에 격군에게 시집왔네.
해국도시오정제(海國都是吾庭際)	바다는 매양 우리 집 뜰과 같으나
동전위업각생애(同田爲業各生涯)	같은 밭에서 일을 하며 따로따로 살아야 하네.

위의 한시는 잠녀(潛女)의 고달픈 생애가 사행 이십자(字)에 요약되어져 있으며, 그 내용은 잠녀가 생활의 터전인 바다를 아예 뜰로 생각함으로써 바다에 종사하는 고통을 즐거움으로 옮겨놓고 있다.¹³⁰⁾

이렇듯 이 글의 저자가 잠녀(潛女;해녀)임에도 불구하고, 잠녀들의 고된 삶의 내용을 담은 한시의 제목을 포작탄(鮑作嘆)이라 적어놓고 있음에 따라 이 시를 지을 당시인 조선후기에는 포작과 잠녀의 의미가 혼용되어 쓰여 지고 있었음을 살필 수가 있다.

130) 오문복 편저, 『영주풍아(瀛州風雅)』(도서출판 제주문화, 1988), 113쪽.

IV. 호적자료를 통해 본 포작의 직역변동

1. 호적자료에 나타난 포작

조선시대의 전통적 사회신분구조는 양반(兩班), 중인(中人), 상민(常民), 노비(奴婢)의 네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조선시대 신분구조 속에서 이들 네 신분층은 각기 다른 그들의 직역과 사회적 지위를 지님으로써 정치·사회·경제적으로 차별적 구조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차별적 사회신분구조 범주 안에서 제주도는 열악한 지형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세납액(稅納額)이 영세할 수밖에 없었으며, 수취체제의 변칙적인 운영과 과중한 민역(民役)의 부담을 야기 시켰다. 또한 탐관오리의 고질적인 수탈행위로 국가의 각종 구제책은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었다.¹³¹⁾

이 장에서는 위와 같은 제주도의 사회·경제적 상황의 결과로 존재하게 되는 6고역(六苦役) 계층¹³²⁾ 가운데 제주도 포작(鮑作) 직역자들의 신분적 지위와 그 직역변동의 양상을 호적중초를 통해 추적해 보고자 한다. 호적(戶籍)은 국가에서 주민들의 신분을 파악하고, 각종 역역(力役)과 공납(貢納)을 부과하기 위해 작성되어진 자료로서 호주의 직역, 성명, 나이, 생년, 본관, 사조(四祖)의 직역과 이름, 그의 배우자의 성씨, 나이, 생년, 본관 및 사조의 직역과 이름 등을 밝히고, 슬하의 자녀는 물론 화첩(花妾), 노비(奴婢), 고공(雇工), 차입자(借入者)에 관한 내용도 빠짐없이 모두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마을 주민들의 인적사항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호적중초는 개인의 가족구성, 혼인관계 및 신분구조, 신분 계층의 변동, 인구현상 등 향촌사회의 제반문제를 재구성하는데 있어 일차적인 자료로서

131) 김동진, 「19세기 濟州 지역의 신분구조와 職役의 사회적 의미」, 『19세기 제주사회연구』(일지사, 1997), 11쪽.

132) 6고역은 시대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따랐다. 즉 본래는 목자(牧子)·담한(番漢)·선격(船格)·과직(果直)·잠녀(潛女)·포작(鮑作)을 지칭하였으나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목자·포작·지장(紙匠)·유군(遺軍)·담한·선격을 19세기 전반에는 아병(牙兵)·목자·방군(防軍)·과직·선격·담한 혹은 포작·담한·목자·방군·선격·아병을 지칭한다. (김동진, 「18·19세기 沓漢의 신분적 지위와 그 변동-濟州 大靜縣 戶籍中草의 분석」, 『역사민속학』제3호, 한국민속역사학회, 1993, 61~62쪽).

의 가치를 지닌다 할 수 있겠다.¹³³⁾

본고에서는 제주도에 남아 있는 529개의 호적중초¹³⁴⁾ 가운데 시기상 가장 오래된 기록을 담고 있는 제주도 대정현(大靜縣) 일과리(日果里) 호적중초(戶籍中草)를 중심으로 하여 대정지역의 해안가에 위치한 마을인 사계리(沙溪里; 今勿路里)¹³⁵⁾·하모슬리(下慕瑟里)¹³⁶⁾ 호적중초도 함께 의거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호적상에 보이는 포작 직역의 명칭에 대해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위의 본문 2장을 통해 조선왕조실록 및 제주도 관련 고문헌 등에 명시되어진 포작인의 명칭과 그 용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포작 직역을 표기한 한자차용표기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장 일반적으로 포작인(鮑作人), 포작간(鮑作干), 포작한(鮑作漢) 등으로 기록되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호적중초에는 또 다른 포작 직역명칭이 표기되어져 있음에 따라 포작 직역의 명칭적 의미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림 3>은 호적본문에 나타난 포작 직역의 명칭이 포작(鮑作) 외에 어작(魚作) 또는 양포(良鮑)로 명시되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진상 어복을 담당하는 직역명에 포작(鮑作)이란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고기를 잡는 사람으로의 어작(魚作)은 그 의미상 포작과 큰 차별성은 없는 듯 보이나, 한 호적 내에 동일한 직역을 칭하면서 두 가지 명칭이 나란히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어작(魚作)의 명칭은 대정현 하모슬리 호적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계리 호적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는

133) 김동진, 「朝鮮後期 濟州地域 戶籍中草의 實態와 그 性格」 『역사민속학』 제20호(한국역사민속학회, 2005), 118쪽.

134) 제주도 호적중초의 현황을 살펴보면 大浦里(33)·德修里(46)·道順里(50)·東城里(38)·沙溪里(44)·月坪里(14)·中文里(41)·日果里(52)·下慕瑟里(43)·廻水里(26)·河源里(36)·도두리·중엄리·장전리·상加里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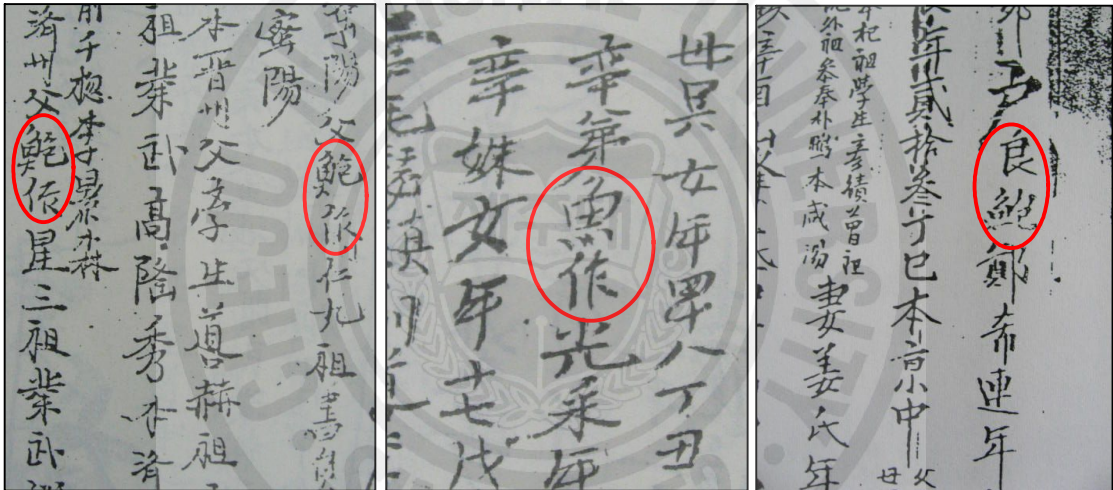
135) 사계리의 명칭은 본래 ‘검은길’로 한자로 표기하면 ‘今物路里’이다. 금물로리가 사계리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현종 6년(1840)경이다. 따라서 현종 3년(1837) 호적중초까지는 금물로리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며, 금물로리에서 사계리로 마을 명칭이 개명되면서 1840년 이후는 사계리 호적중초라 기재되어 있다. (김동진, 「朝鮮後期 濟州地域 戶籍中草의 實態와 그 性格」 『역사민속학』 제20호, 134쪽).

136) 하모리 호적중초의 마을명은 순조 원년(1801) 호적중초에 ‘下慕瑟浦里’, 광무 8년(1904) 호적중초에 ‘下慕里’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下慕瑟里’라 표기하였다. 이는 마을 명칭이 모슬포리→상모슬포시(상모슬리)·하모슬포리(하모슬리)→상모리·하모리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하모슬리는 가파도와 마라도로 가는 뱃길의 포구이며, 어촌 마을이다. 특히 조선시대 이 곳에는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한 9진성 가운데 모슬진성이 위치해 있었다. 조선후기 이 곳은 고부이씨의 영향력이 강했던 곳 중의 하나이며, 그 다음으로 진주강씨·김해김씨들이 다수 모여 살고 있다. (김동진, 「朝鮮後期 濟州地域 戶籍中草의 實態와 그 性格」 『역사민속학』 제20호, 144쪽).

점에서 포작과 어작의 명칭적 차이성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주도가 아닌 『전라도 해남현 호적대장』에서 포작 직역명으로 보이는 양포(良鮑)¹³⁷라는 명칭이 눈에 띈다. ‘양포’는 어의 그대로 ‘양인신분의 포작’이라 해석되어질 수 있으며, 또는 포작 직역과 유사한 하나의 직역명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에 불과하며, 아직까지 이 용어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이 명칭에 대한 고증적 고찰이 선행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 3> 『濟州大靜縣下摹瑟里戶籍中草』(1810)에 나타난 ‘포작(鮑作)’
 『濟州大靜縣下摹瑟里戶籍中草』(1801)에 나타난 ‘어작(魚作)’¹³⁸
 『全羅道海南縣戶籍大帳』(1639)에 나타난 ‘양포(良鮑)’ 기재 사례



대정현(大靜縣) 일과리·사계리·하모슬리의 호적상에 기재되어 있는 당시의 포작 직역자들의 존재양상을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이 표에 따르면,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에 이르는 시기의 포작의 수는 총 12명으로, 2명의 사망자를 제외한 포작(鮑作) 생존자의 평균 나이는 30.3세로 나타난다.

이 세 지역 가운데 1800년 이전 호적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잘 남아 있어 포작인의 구체적인 실태를 알 수 있는 대정현(大靜縣) 일과리(日果里) 호적중

137) 戶主：良鮑 鄭希連, 29세, 本-靈光/ 父：良鮑 鄭敦山(故)/ 祖：鄭目山(故)/ 曾祖：良鮑 鄭子孫(故)/ 外祖：良鮑 吳丕詳(故), 本-金海
 妻：良女 戒良, 23세, 本-京中/ 父：□奴 □□(故)/ 母：同婢 貴介

138) 『濟州大靜縣沙溪里戶籍中草』(1807)의 7동 1호에의 지영종(池榮宗)의 직역에도 ‘어작(魚作)’이라 표기되어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초를 바탕으로 포작(鮑作) 직역자들의 가계를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신분계층의 분포와 시기별 직역 변동 양상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¹³⁹⁾

<표 9> 일과리·사계리·하모슬리 호적중초에 나타난 포작인의 존재양상¹⁴²⁾

리명	자료연도	통/호	戶主와 의 관계	職役名	성명	나이	戶主職役
일과리	1771년(영조 47)	5통/1호	戶主	포작(鮑作)	고석보(高石寶)	34	
	1771년(영조 47)	5통/3호	戶主	"	김부윤(金夫允)	26	
	1771년(영조 47)	6통/2호	戶主	"	이완귀(李完貴)	43	
	1771년(영조 47)	13통/5호	戶主	"	홍대전(洪大典)	44	
	1771년(영조 47)	23통/3호	戶主	"	강계봉(姜戒奉)	47	
	1774년(영조 50)	3통/2호	子	"	문성태(文成太)	7	父-忠翊衛
	1774년(영조 50)	18통/2호	戶主	"	문순우(文順友)	5	
	1777년(영조 50)	5통/4호	戶主	"	김유창(金有昌)	57	
사계리	1807년(순조 7)	7통/1호	子	어작(魚作)	지영종(池榮宗)	19	父-前將官
하모슬리	1801년 ¹⁴⁰⁾ (순조 1)	11통/1호	弟	"	김광래(金光來)	21	兄-格軍
	1810년 ¹⁴¹⁾ (순조 10)	12통/4호	父	포작(鮑作)	박인구(朴仁九)	(故)	女-朴父
	1810년(순조 10)	13통/1호	父	"	고성삼(高星三)	(故)	女-高父

2. 호적자료의 지역 및 검토

호적상에 나타나는 포작인의 실태 및 직역변동을 고찰하기 위한 1차 자료로서

139) 전형택,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6.친인」, 『한국사』 25권(국사편찬위원회, 2003).

_____, 「조선후기의 사회-5.노비신분층의 동향과 변화」, 『한국사』 34권(국사편찬위원회, 2003).

김상환, 「朝鮮後期 公奴婢의 身分變動-17·8세기 丹城縣 戶籍大帳을 中心으로」, 『경북사학』 제12집. 참조.

140) 조선시대 호적은 원칙적으로 子·卯·午·酉의 地干이 드는 3년 마다인 식년에 조사하여 만들게 된다. 하지만 이 호적 표제에는 가경 6년(1801) 호적중초가 '嘉慶五年拾月日辛酉式戶口成籍中草'라 되어 있다. 이는 이듬해 정월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지만 실제 작성한 연도와 월을 기재한 경우로서, 결국 이 호적은 1800년 10월에 1801년 신유년 정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진 호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41) 위의 내용과 같이 이 호적은 가경 15년(1810) 호적중초가 가경 14년(1809) 10월로 되어있는 있으나, 이는 1809년 10월에 1810년 경오년 정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진 호적이라 할 수 있다.

142) <표 9>는 『제주대정현일과리통적』, 『제주대정현사계리호적중초』, 『제주대정현하모슬리호적중초』를 참고로 표 작성.

대정현(大靜縣) 일과리(日果里)의 호적중초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 ‘날외’라고 불려 졌던 일과리는 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에 자리하고 있는 리(里)로서, 조선시대 대정현에 소속되어 있던 마을이었다. 일과리는 1416년(태종 16) 대정현이 신설 당시에 4대촌의 하나로서, 이 당시이거나 또는 면리(面里) 제도가 시행될 당시인 1400년경에 ‘일과’로 개칭되었다. 이후 서삼리(西三里)와 신평리가 분리되고, 1900년경 일과리와 동일리로 분리됨과 동시에 일과 1리·일과 2리로 분리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염전(鹽田)과 풍부한 용천수(湧天水)의 환경조건을 지닌 이곳은 농경과 어업이 모두 유리한 해안가로 점차 이주하기 시작하여 오늘의 본리지역(동일리와 일과리 본동 및 일과2리) 일대의 이곳저곳에 거주하게 됨으로서 적게는 3~4호, 또는 20여 호의 취락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오늘날의 부락을 이루게 되었다.¹⁴³⁾ 이렇듯 예로부터 대정현의 해안가에 취락을 형성하면서 바다와 밀접한 상호연관성을 지니는 일과리의 지역적 특성과 더불어 현존하는 호적 기록상 포작(鮑作)의 가장 오래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 의거하여 일과리 호적자료를 중점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일과리의 1783년 이전 호적중초(戶籍中草)가 남아있지 않은 관계로 인하여 1771년부터의 기록이 남아있는 일과리 통적(統籍)을 기초로 하여 1783년 이전 일과리 포작인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1774년 이외의 통적에는 사조(四祖)에 대한 기록을 모두 생략하고 있음에 따라 1774년 이전과 이후의 4조와 관련된 내용을 비교·검토해 볼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으나, 1783년 이후의 호적중초에는 호주의 사조를 기록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포작 집안의 직역 변동을 파악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1783년 일과리 호적중초를 기준으로 하여 18세기 후반 당시 대정현 일과리의 전반적인 모습에 대해 언급해 보고자 한다. 1783년 일과리의 경우 호수(戶數)는 134호(27통 4호)¹⁴⁴⁾, 구수(口數)는 688口로 나타나며, 그 구수 가운데 남자는 304口·여자는 384口를 차지하고 있다. 대략적으로 호당평균구(戶當平均口)는 4.95인으로, 1780~1785년 평균 4.96인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정현 지역의 수치¹⁴⁵⁾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143)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일과일리, 『日果一里誌-傳統과 協同의 마을』, 1992.

144) 1783년 통적 말미에 원호(元戶) 134호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원호를 기준으로 통·호를 계산하면 26통 4호가 되어야 하지만 통적과 호적에는 총 27통 4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있음에 따라 1통이 누락된 것으로 여겨진다.

살필 수가 있다. 다음으로 1783년 호적중초에 기재된 연령별 남녀의 분포도를 분석하여 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 1783년 일과리의 연령별(5세 계급) 남녀의 분포¹⁴⁶⁾

연령별(세)	성별		총계(口)	성비(%)
	남	녀		
0~4	32	33	65	97.0
5~9	44	44	88	100.0
10~14	28	37	65	75.7
0~14	104	114	218	91.2
15~19	21	23	44	91.3
20~24	12	29	41	41.4
25~29	20	24	44	83.3
30~34	25	27	52	92.6
35~39	14	40	54	35.0
40~44	24	25	49	96.0
45~49	15	21	36	71.4
50~54	21	34	55	61.8
55~59	11	10	21	110.0
15~59	163	233	396	70.0
60~64	13	7	20	185.7
65~69	7	9	16	77.8
70~74	8	7	15	114.3
75~79	6	7	13	85.7
80세 이상	3	7	10	42.9
60세 이상	37	37	74	100.0
총계	308	384	688	80.2

<표 10>을 통해 일과리의 연령별 남녀의 분포에 따른 성비를 파악해 볼 수 있다. 성비(性比)란 일반적으로 여자를 100으로 하여 산출한 남자의 수를 일컫는데, 큰 전쟁이나 인구이동이 없는 상황에서 한 나라의 성비는 95~102 사이로 나타나게 된다.¹⁴⁷⁾ 하지만 이 당시 일과리의 성비는 이와는 상반된 수치를 보이며, 제주지역의 다른 호적에서도 동일시되게 보여지는 ‘남소여다(男小女多)’의 상황을

145) 김동진, 『『호적중초』를 통해 본 朝鮮後期 大靜縣의 戶口와 그 變動』 『동서사학』 제6·7합집(2000), 138쪽.

146) <표 10>은 『1783년 제주대정현일과리호적중초』를 참고로 표 작성.

147) 김동진, 『『호적중초』를 통해 본 朝鮮後期 大靜縣의 戶口와 그 變動』 『동서사학』 제6·7합집(2000), 149쪽.

잘 대변해 주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특히 15~59세의 대부분의 역(役)을 담당하고 있는 남성의 성비가 두드러지게 낮은 수치를 보이는데, 이는 생업을 위해 혹은 국가의 진상공물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표류·사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이루어짐과 동시에 이러한 과중한 역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의 출륙 도망이 빚어낸 결과라 사료된다. 여기에는 상당수의 포작인(鮑作人)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1783년 일과리의 연령에 따른 남녀의 구성표에서 보여지는 결과는 단순한 수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조선 후기 사회·경제적 상황에 말미암은 제주도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이 시기 일과리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본관별 성씨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작성한 것이 <표 11>이다.

<표 11> 1783년 일과리의 본관별 성씨분포¹⁴⁸⁾

本貫別姓氏	(戶主) 가구수	(妻) 가구수	本貫別姓氏	(戶主) 가구수	(妻) 가구수
진주강씨	25	13	군위오씨	-	2
순천강씨	1	1	장성위씨	-	1
제주고씨	6	10	고부이씨	11	9
김해김씨	24	21	완산이씨	5	2
나주김씨	2	-	합천이씨	-	1
김녕김씨	1	1	영주임씨	8	4
영동김씨	1	-	원주원씨	-	2
광주김씨	-	1	풍천임씨	3	4
나주라씨	4	2	나주정씨	6	-
문화류씨	-	1	동래정씨	1	-
복성문씨	10	3	청주정씨	3	1
밀양박씨		4	함안조씨	1	-
수원백씨	2	1	제주진씨	1	-
해□백씨	1	-	진주진씨	1	-
용주변씨	-	1	진주하씨	3	-
창녕성씨	-	3	양천허씨	2	2
홍양송씨	1	1	함덕현씨	6	2
제주양씨	1	1			

148) <표 11>은 『1783년 제주대정현일과리호적중초』를 참고로 표 작성.

4개의 호에 대한 본관은 그 호적중초의 서지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판별이 불가능 하였으므로, 총 130호에 대한 본관별 성씨분포를 파악하였다.

위와 같이 1783년 당시 호주와 처 본관별 성씨 수는 각각 총 26성씨를 헤아리며, 호주와 처의 성씨 분포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그 분포는 진주강씨, 김해김씨, 고부이씨, 북성문씨, 영주임씨 순으로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이처럼 1783년 일과리의 호적중초를 바탕으로 이 당시 일과리 향촌사회의 호구구조와 성별에 따른 연령구성 및 성비, 본관별 성씨분포 등의 제반적 상황에 관해 살펴보았다. 호적에 기록되어진 위와 같은 내용은 필자가 밝히고자 하는 호적상 포작의 직역변동이 당시 사회구조적 현실과 어떻게 부합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줌에 따라 그 의미를 지닌다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포작인의 가계별 분석을 통해 시대에 따른 포작인의 직역변동을 고찰함으로써 이에 수반되는 그들의 존재실태와 신분변동의 구체적인 양상을 규명하고자하며, 이에 일과리 호적중초에 나타난 8명의 포작 가운데 2가계는 추적이 불가능함에 따라 6가계에 한해서 설명해 보고자 한다.

3. 가계별 직역변동의 양상

1) 고석보(高石寶)의 家系

<그림 4>는 일과리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호적자료인 1771년 통적을 기준으로 포작(鮑作) 역을 지고 있는 고석보(高石寶)의 가계도를 작성한 것이다. 가계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고석보의 집안은 호적상 증조(曾祖)·조(祖)·부(父) 모두 공노비인 집안이었다. 고석보는 1771년 34세의 나이로 포작역을 지고 있었으며 1780년까지 귀벽(貴壁)과 귀덕(貴德)의 여동생 2명과 같이 거주하였는데, 이 동생들 역시 대정현 관비(官婢)의 역을 지고 있음을 호적중초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이후 고석보는 1783년 46세의 늦은 나이로 내섬시비(內贍寺婢)인 41세 강창예(姜昌乂)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부인 창예는 공노비로서 그녀의 증조(曾祖)·조(祖)·부(父) 또한 시노(寺奴), 즉 공노비의 집안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두 집안에서 보여지는 신분구조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18세기 말에 이르면 공노비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던 시노비가 급격히 감소되는 현상이었음에

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에의 시노비가 강하게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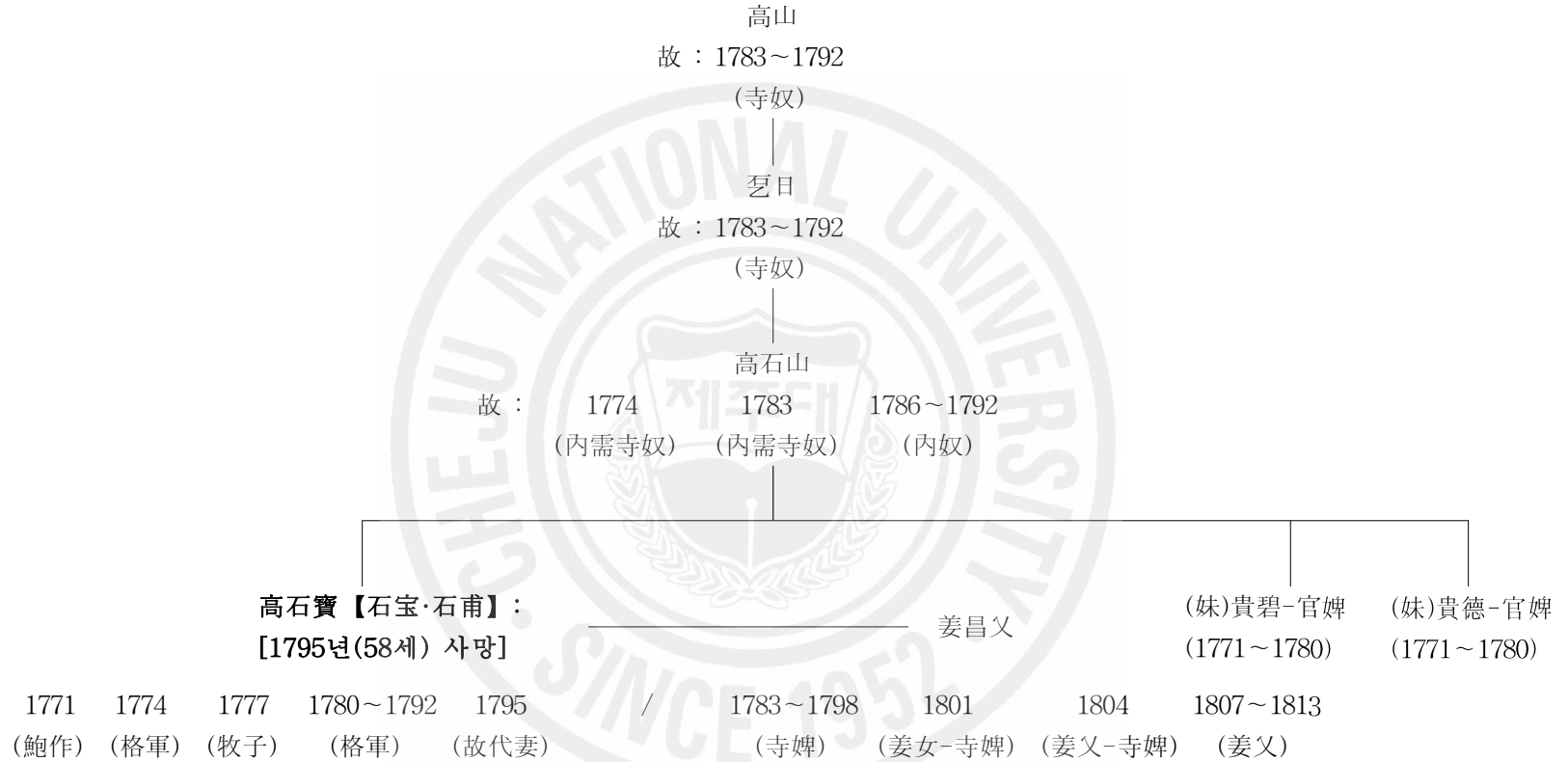
고석보는 1795년 58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는데, 그 대를 이을 자식이 없으므로 호주를 부인이 대신하게 된다. 생존시에는 鮑作→(仁順府奴)格軍→(仁順府奴)牧子→(仁順府奴)格軍으로의 직역이 변동되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으며, 여기에서 그가 사망할 때까지의 6고역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는 6고역에 해당하는 포작·격군 역인 양역(良役)은 공노비로 인해 충당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모습은 아래에서 설명되어질 다섯 가계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음에 따라 공노비의 신천역량(身賤良役)을 통한 신분상승은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진다.¹⁴⁹⁾

위의 III장에서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과중한 사회·경제적 폐단에 따른 출륙포작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을 살펴보았다. 대책 가운데 하나로 조선정부는 출륙포작이 부담했던 부당한 진상역을 예리처(禮吏處)가 대행하게 하고 관아용은 민간에게서 사들이게 하였다. 이는 표면적으로 포작역이 없어진 것처럼 보였으나 포작은 또 다른 역인 격군(格軍)으로서의 역을 지게 됨에 따라 6고역(六苦役)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고석보(高石寶)의 가계도에 나타난 포작인 고석보의 직역변동의 양상은 위의 내용과 부합되는 모습을 보이며, 이는 당시 제주도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홀로 남은 부인 창예는 1798년에 내섬시노(內贍寺奴) 차귀방군(遮歸防軍)인 남동생 강계택(姜戒宅)의 호로 편입하게 된다. 1801년 호적을 보면 창예를 비롯 강계택과 부인, 그의 사조(四祖)의 직역을 모두 지운 흔적이 보이며 이후 그녀의 직역변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1801년 공노비(公奴婢)가 혁파됨에도 불구하고 시비(寺婢)로서 양인화(良人化) 되지 못하고, 신분상승에서 제외되고 있었음을 살펴 볼 수 있겠다.

149) 김동진, 「18세기 후반 濟州地域 公奴婢의 存在樣態」 『역사민속학』 제24호(한국역사민속학회, 2007), 208~223쪽.

<그림 4> 고석보(高石寶)의 家系圖(단위 : 년)



2) 김부윤(金夫允)의 家系

<그림 5>는 1771년 포작 직역을 칭했던 김부윤(金夫允)을 중심으로 작성한 가계도이다. 김부윤의 아버지 김봉정(金奉丁)은 생존시(~47세) 염한(鹽漢)으로서 직역을 담당하였고, 김부윤은 그가 1828년 사망할 때(~87세)까지 (典奴)鮑作→(典醫監奴)沓漢→(典醫監奴)鹽漢→書員→老漢→(?)→書員으로의 직역의 변동을 보여 왔다. 이때 김부윤이 76세가 되는 해인 1816년도의 직역명에 ‘老漢’이라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직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령(高齡)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노직(老職)이라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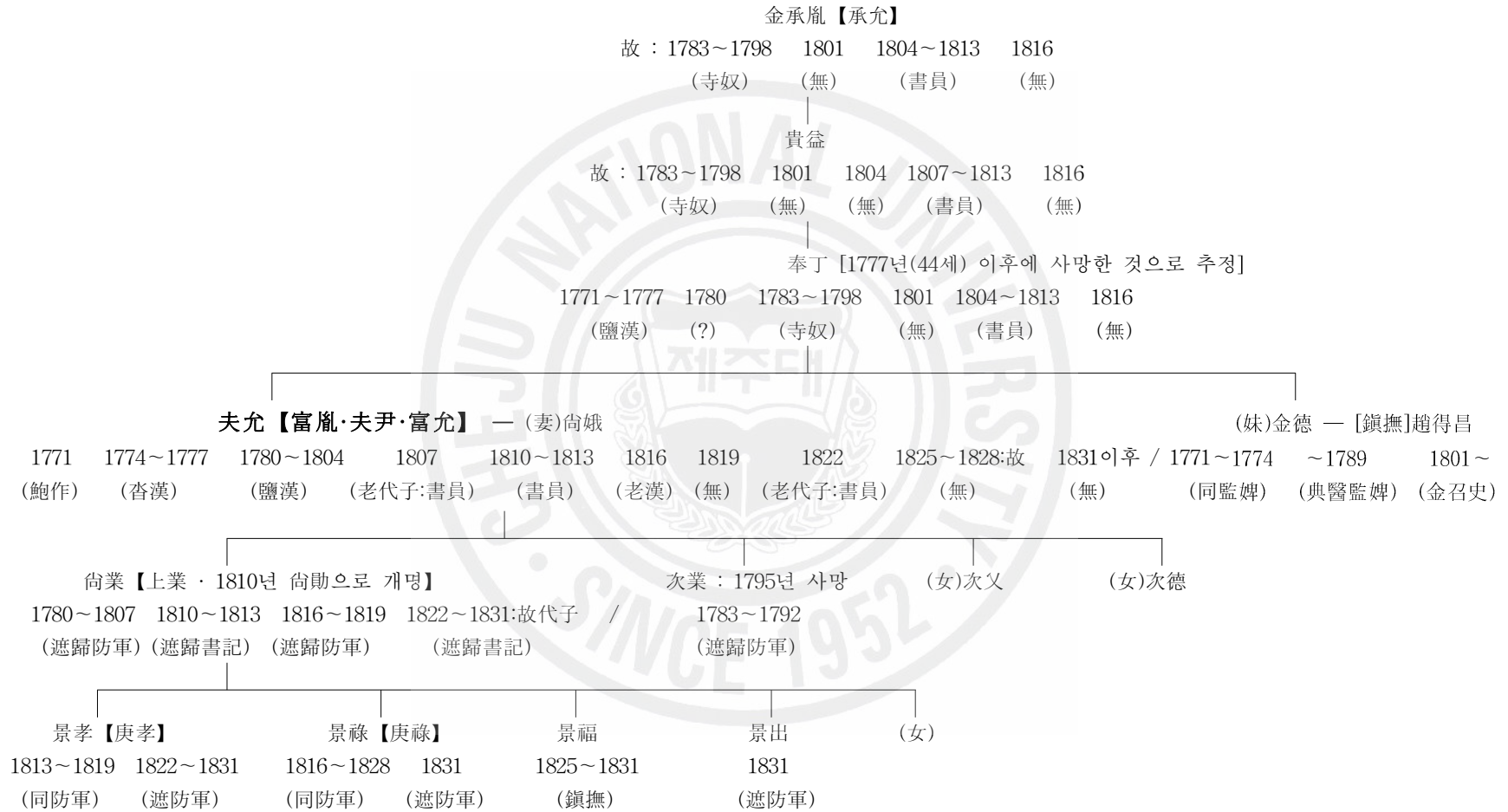
그는 포작역 이후 1777년부터 무려 24년 동안 염한(鹽漢)으로서의 역을 지고 있었는데, 이는 아버지의 봉정이 1777년 사망하자 그 직을 아들인 부윤이 계속해서 세습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¹⁵⁰⁾

그런데 여기서 포작·담한·염한으로의 6고역을 담당하여 오던 김부윤을 비롯 그의 사조가 갑자기 서원으로의 직역이 상승되고 있음이 눈에 띈다. 이러한 호주인 김부윤의 직역 변동 시기를 보면 1807년으로서, 대체적으로 증조(曾祖)·조(祖)·부(父) 모두 1804년을 기준으로 역이 서원으로 변동되고 있음을 살필 수 있겠다. 따라서 이 집안은 1801년 공노비가 혁파된 이후 상층으로서의 신분 상승을 꾀하고 있었으나, 1816년 이후 김부윤의 직역과 1825년 이후 증조·조·부의 직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과 더불어 김부윤의 아들 및 그의 손자의 직역의 변천과정을 고찰해 보았을 때 상층으로의 진출은 불가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김부윤은 다음에 소개할 일과리 포작인(鮑作人) 강계봉의 첫째 딸인 내자시비(內資寺婢) 상아(尙娥)를 부인으로 맞아들이게 되는데, 이로 보아 일과리 내에서의 신분내혼 양상과 함께 천인 신분층 내에서의 폐쇄적인 통혼권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파악해 볼 수 있다. 그는 슬하에 2남 2녀의 자식을 두었는데, 차남인 동시노차귀방군(同寺奴遮歸防軍) 김차업(金次業)은 1795년과 그 이후의 호적에서 찾아볼 수 없음에 따라 15세의 이른 나이로 단명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150) 일과리의 염전(‘소금밭’)은 그 규모에 있어 종달리·구엄리 소금밭과 더불어 손꼽히는 지역 가운데 하나로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달래소금’은 오랜 옛날부터 제주 3읍에 걸쳐 그 명성을 떨쳤다고 한다.(『일과문화사』)

<그림 5> 김부윤(金夫允)의 家系圖(단위 : 년)



3) 강계봉(姜戒奉)의 家系

<그림 6>은 1771년(47세)에서부터 1783년(62세)¹⁵¹⁾까지 약 12년의 기간 동안 포작역을 담당하였던 호주 강계봉(姜戒奉)을 중심으로 작성한 가계도이다. 1771년 이전 기록이 현재 존재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1771년 그의 나이 47세에 포작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도 포작역을 지고 있었음을 짐작케 해준다. 그의 증조(曾祖) 학동(禿同) 및 아버지 문금(文金)은 노직통정대부로서, 이는 조선시대 80세 이상 오래 산 노인에 대해서 양천(良賤)을 가리지 않고 내려 주었던 노인직(老人職)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통정대부(通政大夫)라 함은 노직당상(老職堂上)이라 불리우는 정3품의 벼슬로 이 품계를 받으면 귀천을 떠나 매년가을에 왕이 초청·양노연을 베풀었으며, 지방에서도 왕을 대신 노인에게 향연을 베풀어 주었는데 이는 1702년 『탐라순력도』의 제주·정의·대정양로의 그림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¹⁵²⁾

강계봉은 시노(寺奴)인金玉斤의 딸 일령(日令)과 결혼하여 슬하에 상아(尙我)·항아(姮娥)·선아(仙娥)의 세 딸을 두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첫째 딸 상아는 김부윤의 처(妻)임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이후 강계봉은 1795년 74세의 나이로 사망하고 그의 부인이 호주를 이어 받게 되는데, 3년 후인 1798년의 호적에서는 부인 일령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그녀 또한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어 진다. 그리고 생존시 강계봉은 내자시(內資寺)에 소속되어 있는 공노비였으나 사망한 이후 1795~1807년까지 직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가 1810~1816년에는 서원(書員)으로의 직역이 변동되고 있음을 일과리에 거주하고 있는 그의 세 딸의 호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9세기 신분제 해체되는 과정에서 공노비가 혁파됨에 따라 후대에 후손들이 그의 신분의 서원(書員)으로의 양인화(良人化)를 도모하였으나, 1816년 그녀의 딸들의 사조(四祖)에 기재된 부(父)의 ‘書員’ 직역을 모두 지운 흔적과 함께

151) 강계봉은 일과리 1774년 통적에서 그 나이가 50세로 기재되고 있지만, 다음 식년인 1777년에는 57세로 무려 4년을 올려 기록하고 있으며, 1777년 이후부터는 57세를 기준으로 나이를 더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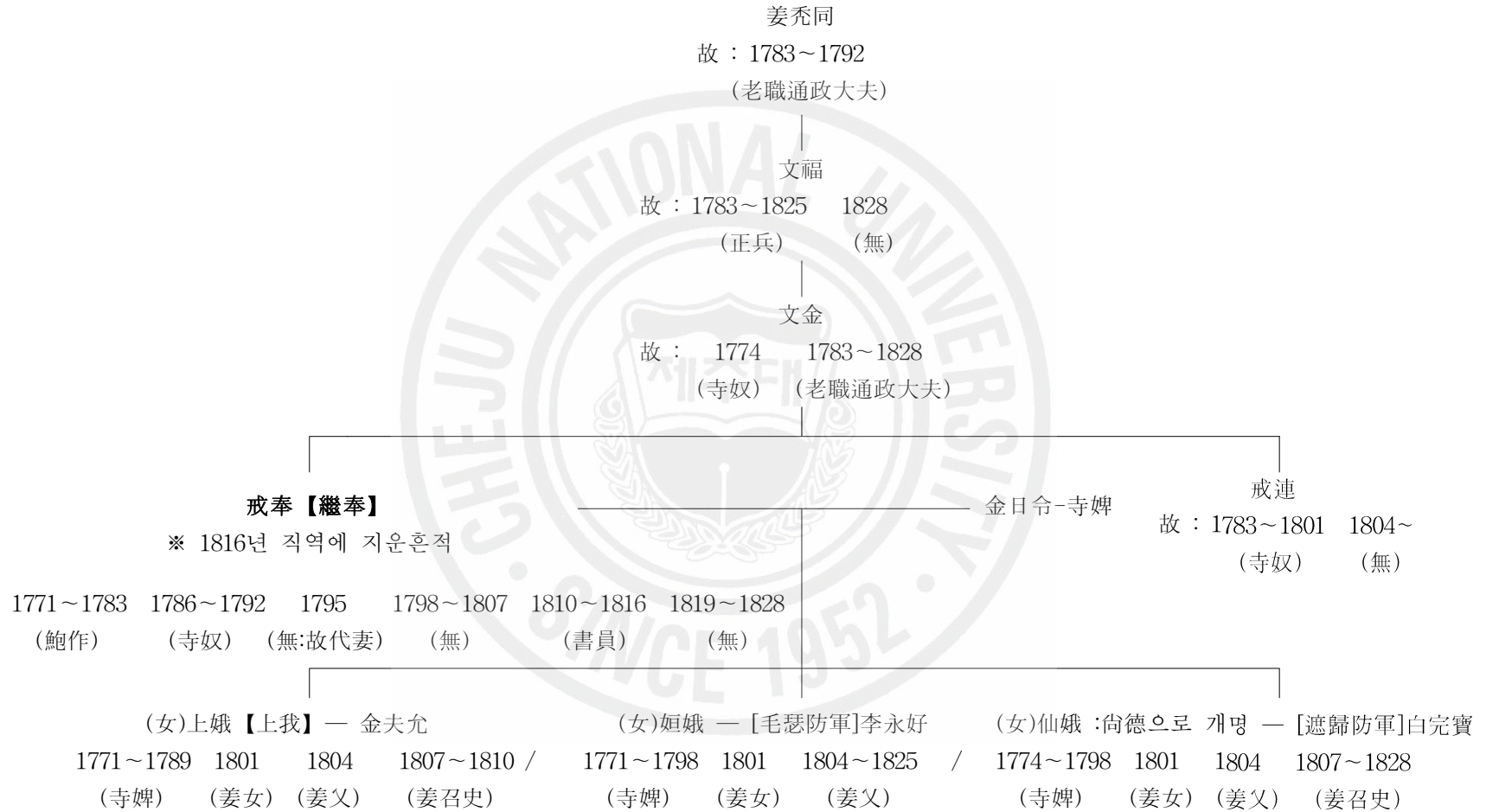
152) 『탐라순력도』 「대정양노(大靜養奴)」: 대정양노는 1702년(숙종 28) 11월 11일 대정현에서의 노인잔치 광경이다. 당시 대정현에서는 80세 이상의 노인 11인, 90세 이상의 노인이 1인 거주하고 있었다. (제주시·제주대학교박물관, 『耽羅巡歷圖』, 제주시, 1994).

이후의 호적에서 직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보았을 때 그의 신분상승의 도모는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더불어 일과리의 호적에서 그의 둘째 딸 향아는 공노비 집안인 모슬방군(毛瑟防軍) 이영호(李永好)와 결혼하였으며, 셋째 딸 상덕 또한 공노비 집안으로 차귀방군(遮歸防軍)→차귀진서기(遮歸鎭書記)의 직역을 담당하는 백완보(白完寶)와 결혼하였음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는 강계봉의 세 딸 모두 일과리의 한정된 범주 안에서 혼인양상을 보여주는 신분내혼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으며, 동시에 공노비 집안 간의 상혼(相婚) 모습을 보임에 따라 이들 집안이 사회적 지위 향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강계봉(姜戒奉)의 家系圖(단위 : 년)



4) 김유창(金有昌)의 家系

<그림 7>은 1777년, 1780년에 포작역을 지고 있던 김유창(金有昌)을 중심으로 그려낸 가계도이다. 이 가계도에서는 김유창이 1783년 중인(中人) 신분층인 강현주(姜顯周)를 사위로 맞아들이고, 이후 그가 나이가 들어 사위를 호주(戶主)로 대신함에 따라 변화되는 그의 직역변동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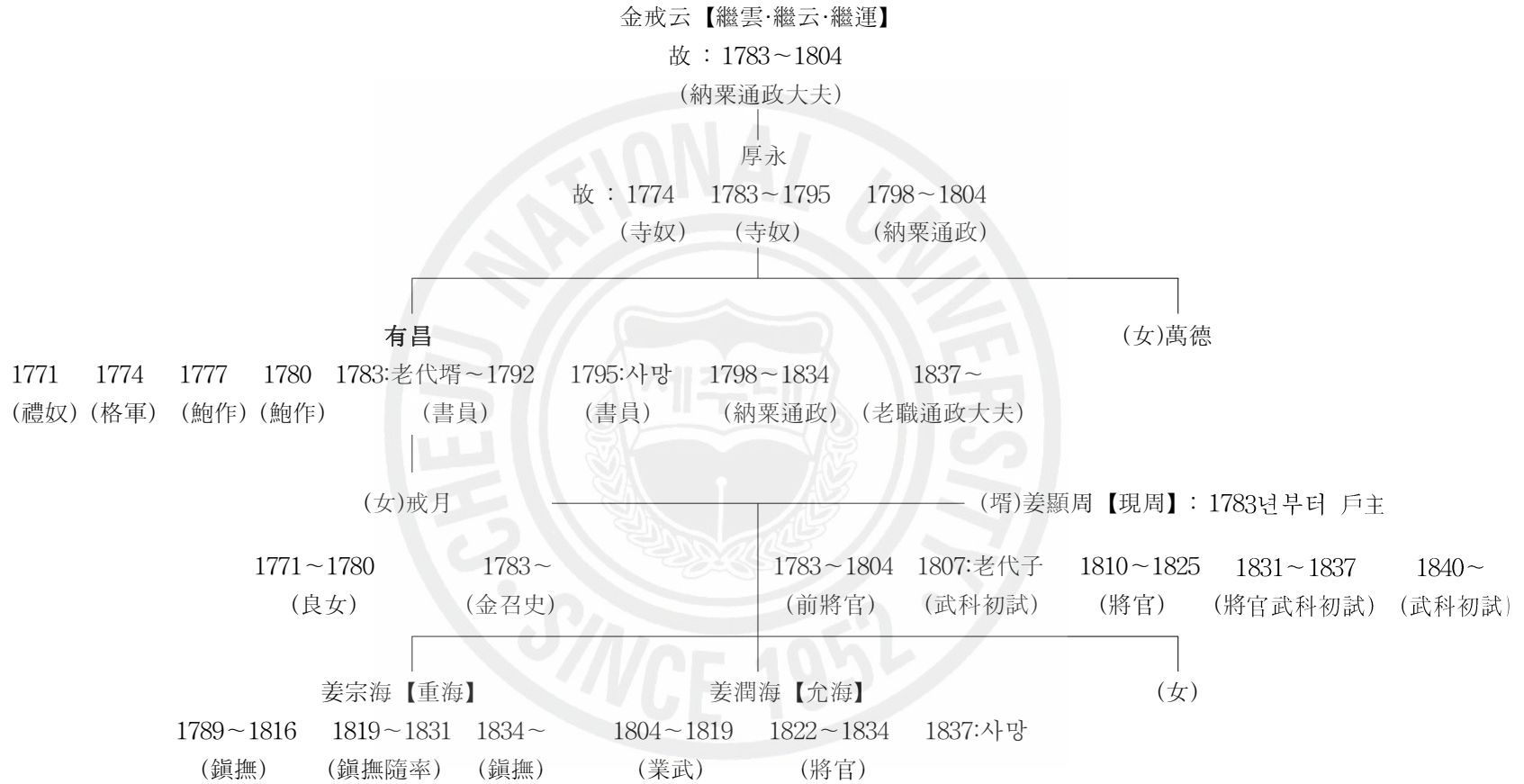
김유창의 직역(職役)은 그의 딸 김계월(金戒月)이 전장관(前將官) 강현주(姜顯周)와 혼인을 하는 1783년을 전후로 해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사위 강현주를 맞아들이기 전에 장인 김유창의 직역은 禮奴→(禮賓寺奴)格軍→(禮賓寺奴)鮑作으로의 천인계층으로의 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결혼 후 서원(書員)→납속통정(納粟通政)으로의 직역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호적상의 그의 할아버지 김계운(金戒云)은 1783~1804년까지 ‘납속통정대부’의 직역을 갖고 있었으며, 동시에 그를 비롯한 아버지 김후영(金厚永) 또한 1798년 이후 ‘납속통정’의 납속직(納贖職)을 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납속직은 일정한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획득되었으며, 아울러 당대에 있어서 면역이 특권이 인정¹⁵³⁾되었음을 주지하였을 때, 이는 사위 강현주(父의 직역 : 기관→업무노직절충장군침지중추부사→업무노직자헌대부) 중인계층과의 가계와 혼인을 함으로써 이를 배경으로 신분상승을 도모하고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겠다.

또한 가경 3년(1798) 5통 1호 사위 강현주의 호적중초를 살펴보았을 때 그의 증조·외조·조의 기존 직역인 ‘정병(正兵)’의 기록 위에 새로운 직역인 ‘업무(業武)’와 ‘기관(記官)’으로 변경되어 기재되어 있었다. 동시에 김유창의 딸 김소사(金召史)의 외조와 조의 ‘시노(寺奴)’라는 기존 직역을 ‘서원(書員)·납속통정’으로, 그녀의 아버지 김유창의 ‘서원(書員)’ 직역을 ‘납속통정’으로 대체하여 기록해 놓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는 19세기 신분제 해체라는 혼란한 상황에서 강현주의 중인계층으로의 기반확립 및 양반계층으로의 신분 상승을 시도하였던 모욕(冒錄)의 결과로 보여진다.

153) 정수환, 「19세기 假率의 성격과 濟州社會」 『제주도연구』 제23집(사단법인 제주학회, 2003), 22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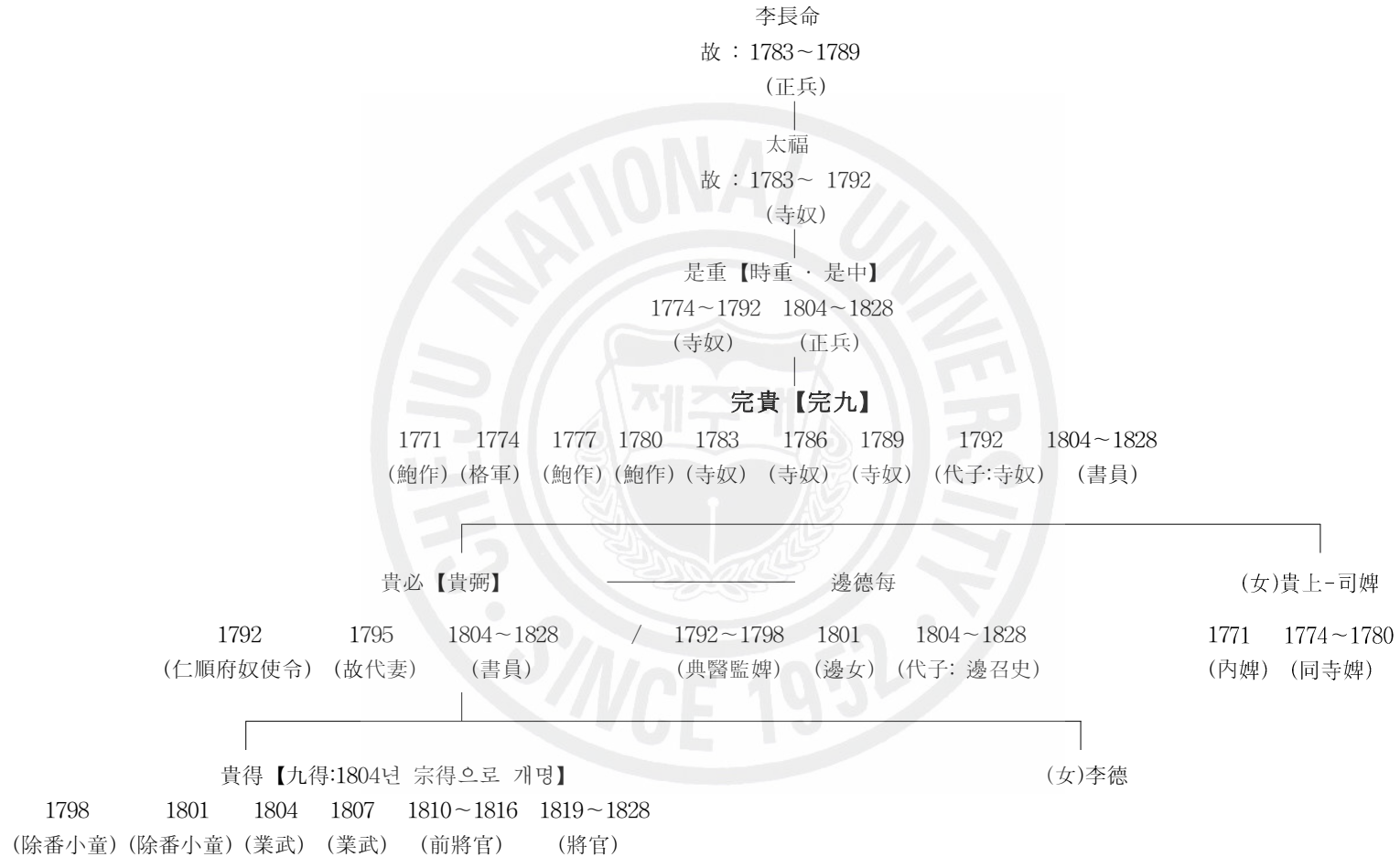
<그림 7> 김유창(金有昌)의 家系圖(단위 : 년)



5) 이완귀(李完貴)의 家系

<그림 8>은 공노비 가운데서 예빈시에 소속되어 있던 포작인 이완귀(李完貴)의 직역변동의 양상을 보여주는 가계도로서, 이완귀의 증조를 제외한 조·부 모두의 직역이 시노(寺奴)를 칭하는 것으로 보아 이 집안도 역시 노비호(奴婢戶)임을 파악해 볼 수 있겠다. 생존시 이완귀는 1771년 43세의 나이로 포작(鮑作) 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후 (禮賓寺奴)格軍→(禮賓寺奴)鮑作→禮賓寺奴로서의 직역변동을 보이고 있는데, 다시 말해 이완귀는 빈객연향과 종묘친향 때의 향관(享官) 제집사(諸執事)에 대한 일향(一餉)·기노소(耆老所) 춘추연(春秋宴) 공궤(供饋)를 담당하는 관청인 예빈시에 소속된 노비로서의 역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완귀는 일과리 1771년의 통적에서 그 나이가 43세로 기재되어 있지만, 그 다음 식년인 1774년에는 무려 13년이 많은 56세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1774년 이후부터는 56세를 기준으로 나이를 더해가고 있었다. 이로부터 1771년의 그의 정확한 나이는 53세로서 기록상의 43세는 잘못 기재된 나이로 사료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당시 제주도의 사회적 상황과 맞물려 생각해 보았을 때 이완귀가 의도적으로 그 나이를 올려 적음으로써 시기상 빨리 그 직역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던 것으로도 추정해 볼 수 있겠다. 74세인 그는 1792년 아들인 귀필(貴必)에게 호주를 넘겨주고 동시에 다음 식년인 1795년의 호적에서 보이지 않는데, 아마도 그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여겨지며 아들 귀필 또한 사망하여 며느리인 변덕매(邊德每)가 그 호를 이어나가게 된다. 이후 1804년 이완귀의 손자인 귀득(貴得)이 그 호를 대신하게 되며, 이 때에 귀득을 비롯한 사조의 직역의 명칭에 큰 변화를 보인다. 손자 귀득은 업무(業武)→전장관(前將官)→장관(將官)이라는 직역의 변화양상을 보이는 등의 중인계층으로의 직역을 담당함에 따라 그의 증조는 시노(寺奴)에서 정병(正兵)으로, 조(祖)인 이완귀와 아버지의 귀필은 서원(書員)으로의 신분을 상승시킨 흔적이 엿보이며, 그의 어머니 덕매 또한 변녀(邊女)에서 변소사(邊召史)로의 명칭이 변화한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공노비의 노비층을 형성하던 이완귀의 집안은 공노비 혁파이후인 1804년 그의 손자인 귀득에 의해서 시노(寺奴)인 공노비의 신분을 탈피하여 양역(良役)으로의 진출이 가능하였다는 점을 추증해 볼 수 있겠다.

<그림 8> 이완귀(李完貴)의 家系圖(단위 : 년)



6) 문성태(文成太)의 家系

<그림 9>에서는 공노비 집안으로서 18세기 후반 포작 직역이 점차 그 자취를 잃어감에 따라 포작의 역이 격군화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문성태(文成太)의 가계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문성태는 내수사노(內需司奴) 문순보(文順寶)의 아들로서, 아버지 형제들 순용(順用)과 순복(順福) 또한 내수사에 소속된 노비임을 일과리 호적중초를 통해 살펴 볼 수 있었다.

그는 1771년에 7살의 나이로 제번군(除番軍)의 역을 담당하였으며, 이후 1774년과 1777년에 어린나이 임에도 불구하고 포작(鮑作)역을 지고 있었다. 이후 격군(格軍)으로의 직역변동을 이루어지나, 고역(苦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가 사망할 때까지인 12년 동안 격군역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가계도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그의 할아버지 문명기(文明起)의 직역이 17세기 중반 이후 상민의 군역보다는 조금 대우받는 반·상의 중간존재로서의¹⁵⁴⁾ ‘충익위(忠翊衛)’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공노비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충익위’라는 문명기의 직역은 이 집안과는 이질적으로 보여지는 직역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문성태는 1783년 아버지로부터 호주를 물려받고, 1789년에 인순부비(仁順府婢)인 강돌덕(姜烈德)과 혼인하게 되는데, 처 돌덕의 집안 또한 공노비의 집안으로서 이후 태어나는 아들 광해(光海)와 딸 문양(文良) 또한 노비로서의 신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세습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성태의 가계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임자 식년(1792) 일과리 통적¹⁵⁵⁾의 기록에서 문성태를 비롯 모, 처, 솔자, 솔녀, 이성삼촌 6식구 모두 몰살되어 이후의 일과리 호적에서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와 함께 1807년 호적중초에 문성태의 작은 아버지 문순용의 집안 또한 순용을 포함한 그의 처, 아들, 며느리가 모두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음에 따라 이 시기 문성태 집안의

154) 김동진, 「18·19세기 畚漢의 신분적 지위와 그 변동-濟州 大靜縣 戶籍中草의 분석」 『역사민속학』제3호(한국역사민속학회, 1992), 8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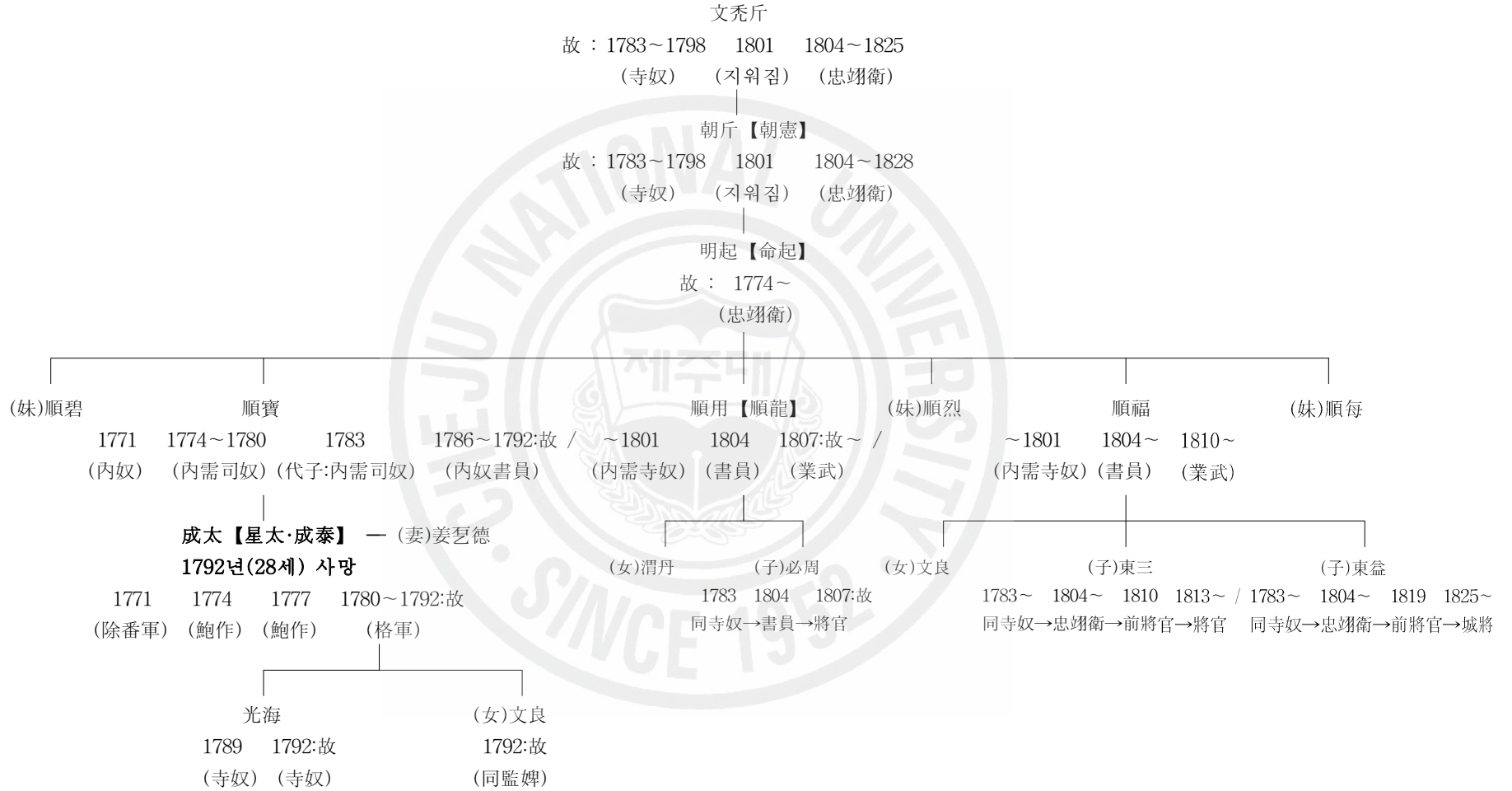
155) 일과리 1792년 통적에서 13통 4호 문성태의 가족구성원 모두, 기재내용 말미에 고(故)라 적어놓고 있다.

가족들이 대거 사망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예상되는 그 주된 요인이 하나로 정조~순조 연간에 제주도에 만연하게 성행하였던 전염병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이성삼촌(異姓三寸)은 1774년 통적에 문성태의 아버지 문순보의 처남(妻男) 동감노(同監奴:55세) 강치대(姜致確)로 처음 등장하며, 말미에 거륙도망(去陸逃亡)이라 기재하고 있다. 이후 이들 집안이 사라지는 1792년까지의 호적에 계속해서 “異姓三寸同監奴姜致確年七十三庚子辛巳年出陸逃亡”이라는 강치대의 기록을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관청에서는 신미년에 출륙 도망한 이성삼촌 강치대(姜致確)에 대해 20여년의 긴 시간동안 호적에 기재함으로써, 이성삼촌인 그가 저야했던 부역을 문성태의 가계에 전가시켜 부가했을 것이라 추정된다.



<그림 9> 문성태(文成太)의 家系圖(단위 : 년)



VI. 맺음말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전복을 채취하는 남자’로 일컬어지며 제주도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개척해 나간 ‘포작인(鮑作人)’의 존재,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직업변동을 살펴봄으로써 당시의 제주도 사회상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제주도는 예로부터 ‘지척민빈 유이수도 경기모생(地瘠民貧 惟以水道 經記謀生)’이라 하여 바다에서의 해양활동은 제주도 사람들의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여기서 채취한 해산물을 육지 물품과의 교환·매매를 통해 생명을 유지하여 왔다.

이렇듯 제주도민의 삶에 있어서 바다는 한시도 떼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불가분적인 관계에 놓여 있었으며,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간에 언제 불어 닥칠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생계를 위해 바다로 향해야만 하였다. 이러한 제주도 사람들의 생 한 가운데, 거친 파도와 함께 그 이름이 사라져간 포작인이 그 중심에 서 있었다. 그들은 조선 건국 이래 더욱 강화되어진 중앙집권체제 속에서 과중하게 부과되어지는 각종 세금과 부역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었으며, 기존의 지방 토호세력과 탐관오리의 부당한 수탈로 말미암아 마침내 새로운 삶의 이행으로의 출륙(出陸)을 감행하기에 이른다.

위와 같이 조선시대 사회적 핍박과 경제적 고통의 기로에 선 제주도 포작인들의 ‘출륙’이라는 행동의 선택은, 도피가 아닌 새로운 삶의 개척으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의 발로라고 생각되어짐에 따라 해양문화사적인 관점에서 제주도 포작인이 지닌 정체성과 그 가치에 대해 논하고자 하였다. 이에 앞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포작인의 명칭 및 존재와 의의에 대해 고찰해 봄으로써 포작인에 대한 성격을 추이해 보았다. 첫 번째로 『조선왕조실록』과 고문헌에 기록되어진 포작인의 명칭을 살펴봄과 동시에, 현재 포작인의 명칭에 대해 연구되어진 바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포작인(鮑作人)·포작간(鮑作干)·포작한(鮑作漢)·복작간(鮑作干)·포작배(鮑作輩) 등 다양하게 명명되어지고 있는 포작인의 명칭에 대해 파

악하였다. 그리고 필자는 본고에서 포작인의 명칭을 포작(鮑作) 역(役)을 담당하는 사람(人)이라는 의미로서의, ‘포작인(鮑作人)’으로 통일하여 이 글을 전개해 나갔다. 그 두 번째로 이처럼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지는 포작인들의 존재와 의미에 대해 접근해 보았다. 이에 제주도 포작인은 바다에서 고기와 해산물 채취를 업으로 삼고, 이를 전라도와 경상도 연안을 돌아다니면서 교환·판매하여 생활해 나가는 남자어부로 설명되어질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여러 고을의 해산의 진품(珍品)을 진상하는 역으로 동원되었던 사람으로 개념·정의 내릴 수 있었다.

또한 조선시대 바다를 공동으로 생활무대로 삼으면서 국가에 해산물의 진상하는 역을 담당하였던 잠녀(潛女)를 포작인과 구분지어 설명하였다. 김상헌(金尙憲)의 『남사록(南槎錄)』과 이건(李健)의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에 기록되어진 바를 보면, 조선시대 포작(鮑作)과 잠녀(潛女)와의 성별적 분업이 이루어졌음을 살필 수 있다. 즉, 남성인 포작인(鮑作人)은 주로 깊은 바다에서 전복을 잡아 이를 진상·조달하는 역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먼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 고기잡이를 하였으며, 여성인 잠녀(潛女)는 주로 미역·청각·우뭇가사리 등의 해조류 채취를 주로 담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포작인과 잠녀의 구분은 명확히 정의 내려질 수 없으며, 시기의 변천에 따른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거하여 그들의 관계 및 의미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 조선 전기의 포작인은 남자 어부를 지칭하여 오다가 조선후기에 이르러 포작인에 대한 과중한 진상과 부역으로 인해 점차 포작인의 존재는 사라져 갔으며, 결국 그들이 담당하던 전복 및 해산물 진상의 역의 잠녀(潛女)들의 몫으로 전가됨에 따라 포작인과 잠녀와의 용어 및 관계적 의미의 구분이 모호해 졌다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어 포작인과 출륙 제주도민, 즉 두모악과의 관계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살펴보면, 두모악은 제주도 포작인만이 아닌 양인·선군·공천·사천 등 다양한 계층이 역을 피해 전라도 연변으로 옮겨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포작인은 두모악과 동일선상에서 이야기 할 수 없으며, 포작인은 그들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서로 구분되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Ⅲ장에서는 포작인들의 출륙과 존재양태에 대해 접근해 보았다. 먼저 이들 포작인들이 무슨 이유에서 고향인 제주를 등지고, 육지로의 출륙을 감행하여야 하

였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주도의 열악한 지형적 조건으로 말미암은 생계적 고난과 더불어 조선정부의 과중한 공부(貢賦) 증대와 탐라오리 및 향권(鄉權)의 부당한 착취·수탈은 결국 포작인들을 육지로 내몰게 되는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지리적인 조건으로 인해 파생되어진 잦은 왜구의 침입과 그로 인한 극심한 피해는 제주 방어체제의 강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관방·방어시설의 구축 및 군사로써 징발되는 등의 군역의 증대도 그들의 출륙을 도운 배경으로써 작용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두 번째로 출륙한 그들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출륙 포작인들은 주로 전라도나 경상도 해안 지역에 산거하면서 포작의 역을 지고 정주하고 있었다. 또한 그들이 몸소 체험에 의해 습득되어진 해양사적 정보로 말미암은 선박 건조술과 항해술, 수전술은 왜구들의 침입에 시달리는 조선정부에게는 응당 절실히 필요한 것임에 따라 조선정부는 이러한 제주도 포작인(鮑作人)들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고자 격군(格軍) 등의 수군(水軍)으로 편입시켜 군사적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그들에게 취한 정책에 의거하지 못했거나 이를 기피하였던 또 다른 출륙 포작인들은 한반도 연해안을 유랑하면서 수적(水賊)이나 왜구(倭寇)에 유착되어 갖가지 사회문제를 야기 시켜 나가기도 하였다.

세 번째로 출륙 포작인들의 집단적인 유망도산의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정부가 마련한 여러 가지 대책에 관해 주목 하였다. 조선정부는 유망하여 수적이거나 왜구에 편승하는 포작인들의 증가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방지대책 및 쇠퇴정책 등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중앙정부의 조치는 포작인들이 출륙하게 되는 근본적인 요인을 인식하지 못한 임시방편적인 조치에 불과하였음에 따라 유망하는 포작인의 숫자를 줄이지 못하였다. 이에 정부는 인조 7년(1629) 그들의 출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출륙금지령’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이르게 된다. 그리고 남아 있는 포작인들에 대해서는 해산물 진상공물의 수량 경감과 함께 평역고 및 보민고를 설치하여 그들의 어복 진상의 고역을 경감시키고자 하였다. 하지만 포작인들은 이와 성격을 달리하는 6고역 가운데 하나인 선격(船格)으로서의 역을 지게 됨에 또 다른 병폐를 낳게 되었다.

조선후기로 들어오면서 포작인들의 수는 점차 감소되어 갔으며, 결국 그들의 모습과 명칭은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4번째로 그들이 소멸되어 가

는 시기와 그 원인에 대해 추측·논의해 보았다. 포작인들은 조선왕조 초기 이래 강력한 중앙집권화에 정책에 맞물려 과중하게 부과되었던 공물·진상과 갖가지 부역, 그리고 이들이 출륙을 막기 위해 시행되었던 정책들로 인하여 더 이상 포작인으로서의 역을 감당할 수 없어 육지로의 출륙을 감행하게 되었으며, 포작인들이 점차 소멸되어 감에 따라 기존에 그들에게 주어졌던 역의 부담은 결국 그들과의 같은 환경적·사회적 처지에 놓여 있던 잠녀(潛女)들의 몫으로 전가되어 갔다. 또한 포작(鮑作)이라는 역이 지녔던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처참을 거느리지 못하였으며, 이에 포작인의 재생산이 불가능하여 그들의 모습이 점차 사라져 갔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조선후기에의 성리학에 따른 사상적 이데올로기로 인해 수반되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사라져간 이유에 대해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었다. 하지만 이는 가정적인 추측에 불과하며 포작인의 명칭과 그들 존재가 문헌상에 사라져간 이유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한 해답을 구할 수가 없었다.

IV장에서는 호적중초에 나타난 6고역(六苦役) 계층 가운데 하나인 제주도 포작(鮑作) 직역자들의 가계를 추적해 봄으로써 이를 토대로 조선시대 포작인의 신분적 지위와 그 직역변동의 구체적인 양상을 고찰해 보았다. 이를 재구성하는 일차적인 자료로서 1783년 대정현 일과리 호적자료를 중심으로 포작인 고석보, 김부윤, 강계봉, 김유창, 이완귀, 문성태의 총 6가계를 분석·추적하였다.

호적상의 나타난 포작인의 가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공노비(公奴婢)집안으로, 이들 포작인들은 보편적으로 일과리 내에서의 신분내혼 양상과 천천상혼(賤賤相婚)의 혼인양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포작역은 점차 소멸되어 가고 있었으며, 이들 6명의 포작인 가운데 4명이 격군으로의 직역변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이는 조선후기로 들어오면서 급격히 증가되는 출륙 포작인들을 위한 국가대책의 결과로 여겨지며, 또한 1801년 공노비혁과 이후 그들 대부분의 직역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 당시 신분질서의 붕괴과정에서 천인층에 속하였던 포작인들은 그들의 직역을 변화시켜 양인층으로의 신분상승을 꾀하고 있었으며, 사후에 그 자손들에 의해서도 포작인을 비롯한 사조의 직역을 모칭(冒稱)·모록(冒錄)·직역을 기재 않는 등의 방법을 통해 신분적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음을 살필 수가 있었다.

이상과 같이 필자는 조선시대 제주지역 포작인에 대한 존재의의를 밝히고, 이들의 사회적 지위 및 직역변동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과거 ‘수탈과 통제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어왔던 그들을 새롭게 재조명 해보고자 하였다.

현재 제주도의 세계적 해양성을 대표하고 있는 잠녀(潛女)라 일컫는 해녀들에게 부여된 상징성과 서로 비교해 보았을 때, 포작인이 역사적·사회적·문화적으로 차지하는 위치와 비중은 미흡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오랜 옛날 그들의 해상활동은 실로 다방면에서 왕성하게 행해지고 있었으며, 조선시대의 지배체제의 모순 속에서 외지로의 삶의 공간을 확장시켜 나감에 따라 유동적으로 한계점을 타개해나가고자 하였다. 이러한 포작인들의 해상활동의 모습은 해양사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상기시켜 주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 포작인들의 모습이 자칫 지배체제의 모순 속에서의 착취대상으로서, 또는 단순히 이를 모면하고자 육지로 출륙하여 그 곳에서 천인시 되었던 존재로서 비취지지 않을까 염려되는 바이다. 아울러 더 이상 제주도 포작인이 단지 ‘전복을 채취하는 남자’, ‘국가의 각급 제사에 쓰는 어포(魚鮑)를 진상하는 어부들’로만 정의되어서는 안 되겠다.

본 논고는 이들에 대한 문헌상의 사료적 근거가 불충분함에 따라 다각적으로 포작인을 재조명하고자 하는데 한계가 많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한계점은 포작인의 제주도라는 한정적인 범위에서의 벗어나 대내외적인 해양문화사적인 접근과 대외적 교류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존재의미를 새롭게 해석해 나가야 할 것을 시사해 준다. 이에 조선시대 한반도 남부 바다, 더 나아가 동아시아 해역을 휩쓸고 다녔던 제주도 포작인들의 기개와 해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향후에 자료를 보강하여 연구를 계속해 나가 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1. 문헌자료

- 『고려사(高麗史)』
『경국대전(經國大典)』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신해대정현리정절목(辛亥大靜縣釐正節目)』
『제주대정정의읍지(濟州大靜旌義邑誌)』
『제주읍지(濟州邑誌)』
『탐라방영총람(耽羅防營摠覽)』
『탐라사례(耽羅事例)』
『탐영사례(耽營事例)』
『제주대정현사계리호적중초(濟州大靜縣沙溪里戶籍中草)』
『제주대정현일과리호적중초(濟州大靜縣日果里戶籍中草)』
『제주대정현하모슬리호적중초(濟州大靜縣下摹瑟里戶籍中草)』
『제주대정현일과리통적(濟州大靜縣日果里統籍)』
1609년 『경상도울산부호적대장(慶尙道蔚山府戶籍大帳)』, 서울대 규장각, 奎14986.
1639년 『전라도해남현호적대장(全羅道海南縣戶籍大帳)』, 서울대 규장각, 奎27491.
김상헌, 『남사록(南槎錄)』
김성구, 『남천록(南遷錄)』
김정,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
남만리, 『탐라지(耽羅誌)』
이건,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
이원조, 『탐라록(耽羅錄)』
_____,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
_____, 『탐영관보록(耽營關報錄)』

이원진, 『탐라지(耽羅志)』
 이익태, 『지영록(知瀛錄)』
 이증, 『남사일록(南槎日錄)』
 이형상, 『남환박물(南宦博物)』
 _____,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임제, 『남명소승(南溟小乘)』

2. 연구논저

1) 단행본

고찬화·김천형 공편, 『濟州의 近世史-朝鮮王朝實錄』, 성민출판사, 2002.
 고창석 외, 『19세기 濟州社會 研究』, 일지사, 1997.
 국사편찬위원회, 『各司謄錄』 54, 전라도보유편2, 1991.
 김봉옥 편역, 『續耽羅錄』, 제주문화방송, 1994.
 김봉옥, 『증보제주통사』, 세림, 2000.
 김봉현, 『濟州島歷史誌』, 경인문화사, 2005.
 김석희, 『조선후기 지방사회사 연구』, 혜안, 2004.
 김익수 역, 『知瀛錄』, 제주문화원, 1997.
 _____, 『남사일록』, 제주문화원, 2001.
 김인호, 『韓國 濟州 歷史·文化 뿌리學』, 우용출판사, 1997.
 김태능, 『濟州島史論攷』, 세기문화사, 1982.
 박용후 역, 『南溟小乘』, 제주문화, 1989.
 서귀포문화원, 『법환 즈너마을 역사·문화 고증 및 기본계획』, 2004.
 서귀포시 편, 『濟州啓錄』(영인본), 서귀포시, 1995.
 송성대, 『濟州人의 海民精神』,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6.
 _____,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파피루스, 1998.
 송수환, 『朝鮮前期 王室財政 研究』, 집문당, 2000.
 아키히치 토모야 지음/이선애 옮김, 『해양 인류학』, 민속원, 2005.
 오문복 편저, 『영주풍아(瀛州風雅)』, 도서출판 제주문화, 1988.
 이원조, 『耽羅誌草本』(영인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9.

이원진 씬·김찬흡의 옮김, 『(역주)탐라지』, 푸른역사, 2002.

이형상, 『耽羅巡歷圖·南宦博物』(영인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_____, 『耽羅巡歷圖』(영인본), 제주시, 1994.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일과일리, 『日果一里誌-傳統과 協同의 마을』, 1992.

제주도교육연구원, 『耽羅文獻集』,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_____, 『郷土史教育資料』, 제주도교육연구원, 1996.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편, 『濟州의 옛 地圖』,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1996.

제주도지편집위원회, 『濟州道誌』제2권, 제주도, 2006.

제주문화원 편, 『(譯註)增補耽羅誌』, 제주문화원, 2005.

제주문화편집부, 『高麗史濟州錄』, 제주문화, 2000.

제주도·제주사정립사업추진위원회, 『備邊司謄錄中 濟州記錄』, 1999.

제주시·제주대학교 박물관, 『耽羅巡歷圖』, 제주시, 1994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 『해녀항일운동의 역사와 기념』, 2007.

좌혜경 외,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200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國譯 瓶窩集』(III), 1990.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한국지리지총서『邑誌』 6 제주도, 서울아세아문화사, 1983.

한복진, 『조선시대 궁중의 식생활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2) 논문 및 기타

강영봉, 「固有語彙 研究-〈耽羅營事例〉와 〈濟州事例〉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제20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9.

고창석, 「『자료소개』 濟州巡撫御使 朴天衡의 書啓」 『제주도사연구』제8집, 제주도사연구회, 1999.

_____, 「조선시대 후기」 『제주도지』제2권, 제주도지편찬위원회, 2006.

권인혁, 「19世紀 前半 濟州地方의 社會經濟構造와 그 變動-哲宗朝 濟州民亂과 관련하여」 『이원순교수화갑기념사학논총』, 교학사, 1986.

_____, 「19세기 초 梁濟海의 謀變 實狀과 그 性格」 『탐라문화』제7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8.

_____, 「朝鮮後期 地方官衙 財政의 運營實態-濟州의 《事例》를 중심으로」 『탐라

- 문화』제16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
- 권인혁·김동전,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수취체제와 주민의 경제생활」 『탐라문화』 제1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8.
- 김동전, 「濟州島 貢物進獻에 대한 考察-朝鮮王朝를 中心으로」 『제주사학』창간호,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1985.
- _____, 「18·19세기 畚漢의 신분적 지위와 그 변동」, 『역사민속학』제3호, 한국민속역사학회, 1993.
- _____, 『18·19世紀 濟州島의 身分構造 研究 : 「大靜縣戶籍中草」를 中心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 _____, 「19세기 濟州 지역의 신분구조와 職役의 사회적 의미」 『19세기 제주사회 연구』, 일지사, 1997.
- _____, 「『호적중초』를 통해 본 朝鮮後期 大靜縣의 戶口와 그 變動」 『동서사학』 제6·7합집, 2000.
- _____, 「朝鮮後期 濟州地域 戶籍中草의 實態와 그 性格」 『역사민속학』제20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5.
- _____, 「18세기 후반 濟州地域 公奴婢의 存在樣態」 『역사민속학』제24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7.
- 김상환, 「朝鮮後期 公奴婢의 身分變動-17·8세기 丹城縣 戶籍大帳을 中心으로」 『경북사학』제12집, 경북사학회, 1989.
- 김성준, 「알프레드 마한(A. T. Mahan)의 해양력과 해양사에 관한 인식 : 그 의의와 한계를 중심으로」 『한국해운학회지』권26호, 1998.
- 나가모리 미쓰노부(長森美信), 「조선후기 제주 進上物 조달과 수송」 『탐라문화』 제2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3.
- 다카하시 기미야끼(高橋公明), 「中世東亞世亞海域에서의 海民과 交流」 『탐라문화』 제8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9.
- 로쿠탄다 유타카(六反田豊)/정광중 譯, 「濟州道民의 海上活動-19世紀의 사례로부터」 『제주도사연구』제8집, 제주도사연구회, 1999.
- 문금숙, 「제주속담에 나타난 제주인들의 생활상」 『돌과 바람의 역사』, 제주역사연구회, 1993.

- 박찬식, 「19세기 濟州 지역 進上의 실태」 『탐라문화』제16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
- _____, 「『耽羅巡歷圖』에 보이는 제주 진상의 실태」 『耽羅巡歷圖研究論叢』, 탐라순력도연구회, 2000.
- _____, 「제주해녀의 역사적 고찰」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2006.
- 양진석, 「18, 19세기 제주의 收取制度和 特徵」 『탐라문화』제24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 유승원, 「양인」 『한국사』 25권, 국사편찬위원회, 1994.
- 이창기, 「19세기말 제주도의 가족 구성-덕수리 호적중초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사학회』제46집, 1995.
- 장혜련, 『조선중기 제주유민의 발생과 대책』,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전형택, 「조선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6.천인」 『한국사』 25권, 국사편찬위원회, 2003.
- _____, 「조선후기의 사회-5.노비신분층의 동향과 변화」 『한국사』 34권, 국사편찬위원회, 2003.
- 정수환, 「19세기 假率의 성격과 濟州社會」 『제주도연구』제23집, 사단법인 제주학회, 2003.
- 진영일, 「古代耽羅의 交易과 ‘國’ 形成考」 『濟州島史研究』제3집, 제주도사연구회, 1994.
- _____, 「『三國志』·『三國史記』의 「州胡」·「耽羅國」 研究」 『인문학연구』제6집,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
- 하우봉, 「조선시대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교류」 『해양사관으로 본 한국사의 재조명』,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4.
- 한림화, 「해양문명사 속의 제주해녀」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2006.
- 한영국, 「‘豆毛岳’考」 『한우근박사정년기념사학논총』, 지식산업사, 1981.